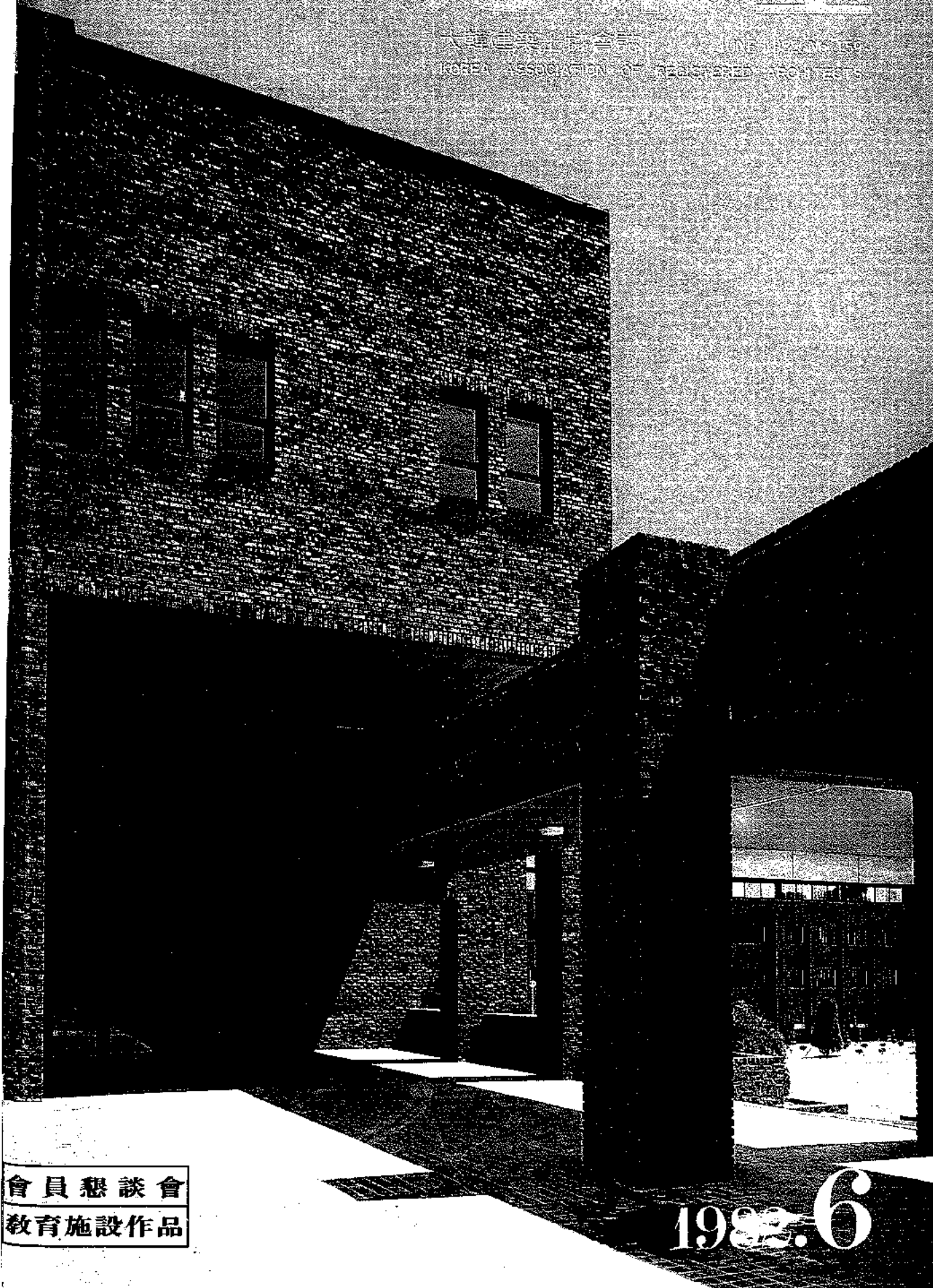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JUNE 1982 NO. 150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신기계들을
화함으로써
의 발판을

요한
속
적인
야 합니다.
라인의
세련되고
위기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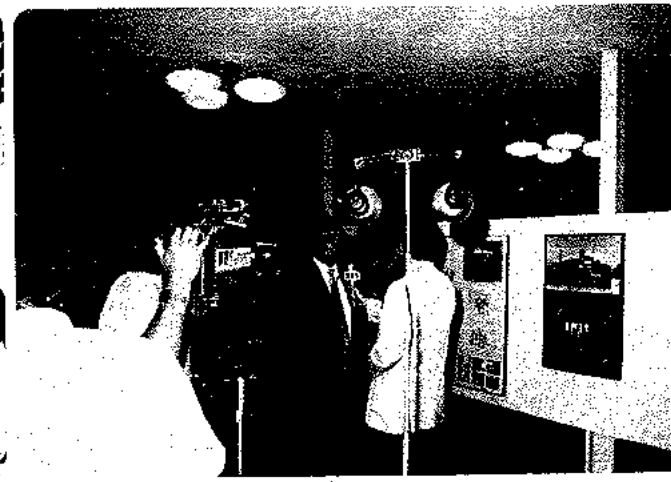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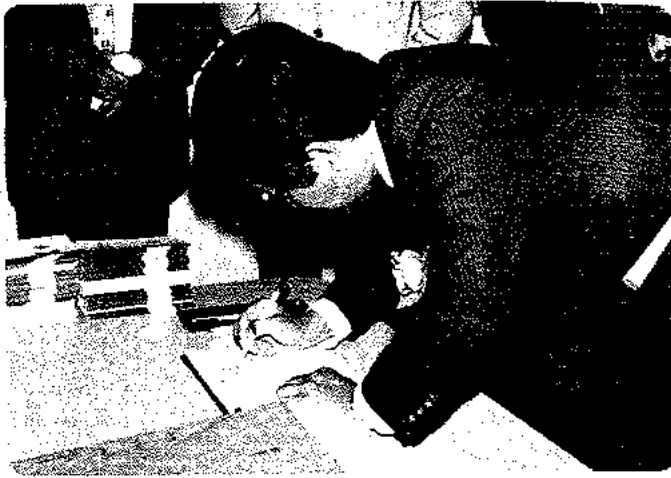
아

會員懇談會
教育施設作品

1982.6

PHOTO NEWS

'82회원건축설계 작품 순회전시회 개막일 스케치



1 '82회원작품순회전시회 개막 테이블을 끊는 (좌로부터) 김斗婁 前 본회회장, 具琬會회장, 徐相喆건설부차관, 金根德건축학회장, 張起仁 前본회회장, 李丞雨 건축가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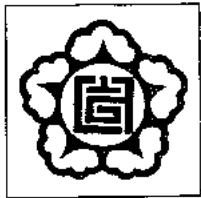
2 방명록에 싸인을 하는 徐相喆차관

3 具琬會회장으로부터 전시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는 徐次官

4 대상수상자인 金正濤씨가 徐次官에게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5 전시장을 둘러본 후 회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6 TV인터뷰를 하는 具琬會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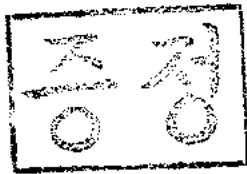
月刊 建築士

June 1982. No. 159

U. D. C. 69/72(054-2) : 0612(519)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89 / 郵便番号：110
光化門郵遞局 弘報班 第795番 / 電話 723-9491 ~ 2, 723-4287, 724-1945
發行人 姜 禹韓 / 具 現 容 / 登録番号：第1251 / 登録：1967.3.23
発行：1982.6.15 / 非売品 / 印刷人：金 允 坤 (福社文化社 / 265-7323)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目次

1982.6



論 壇 “平凡한 努力과 忍耐로 生活하자” 朴商浩 4

持 輯 회원간담회—“協會運營의 오늘과 來日” 10

분류번호	建 築 士 誌
도서번호	통권 제 159 호
구입년월일	1982.6.15
대한건축사협회 (주) 도서지부	



編 纂 委 員 會

委員長 朴商浩
委員 李明浩
“ 姜健熙
“ 朴勇煥
“ 李榮一
“ 金漢根
“ 金基哲
“ 姜哲求
“ 趙東榮

大學과 캠퍼스計劃 朴胤成 18
콘크리트構造物의 龜裂發生原因과 対策에 關한 研究 吳滋教 23
農村의 集村化計劃에 關한 研究 柳應教 42

作品特輯 會員設計作品—教育施設 27

● 成均館大學校水原캠퍼스學生會館(원도시건축연구소) 尹承重 · 卞 鎔 28
● 祥明女師大 圖書館 (아름건축연구소) 金琪碩 30
● 성보중 高等學校 (협동건축설계사무소) 金 桓 32
● 송전대학교 대전캠퍼스 (건축설계사무소하나그룹) 朴性圭 · 金武彦 34
제4 교사
●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本館 (대우건축연구소) 洪淳寅 36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關한 考察(Ⅲ) : 連載 朴彦坤 · 金東旭 39

✓시멘트 벽돌 組積壁體의 構造耐力 姜一東 50

現代建築物과 撥水劑의 應用 洪思天 55

海外作品 라이스대학 건축학부—미국휴스턴 58

海外建設事例 THE PROPOSED CONDOMINIUM HOUSING PROJECT—Singapore 62

☐ 협회소식 5
☐ 건축계뉴스 66
☐ 건축행정 / 질의응답 69
☐ 법개정 내용 74
☐ 건축자재해설 84
☐ 신입회원 89
☐ 회원동정 90



표지설명
중북대학교농과대학본관
設計：洪淳寅

“平凡한 노력과 忍耐로 生活하자”

朴商浩(本會理事・石林建築研究所 代表)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 시작해 보자.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에 선 것처럼 信號가 머리 속을 스친다. 경쟁자가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러나 나의 길은 분명 경계선이 그인 라인의 안이다.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職分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다. 社會를 구성하고 있는人間이 千差萬別의 직업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자기일에 최선의 노력과 創意力을 다함으로써 사회전반적인 물레는 갈 굴러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 바퀴를 누가 돌리는 것이 아니고 各自의 힘, 힘의 協力과 저력으로 굴러가야만 올바른 물레가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시작을 해야하고 시작을 해보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옳은 일 바른 길이라 생각하면 경성을 다하자. 비록 挫折과 曲折이 있더라도 잘 정리하고 정돈하여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白紙에 줄을 치는 것이며 나아가 空間에 선을 긋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線이 가늘고 굵고, 線의 마무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곧 人間事이며 社會事이며 나아가 藝術事가 되는 것이다. 맑은 하늘 푸른창공에 비행기가 뿜은 한줄기 하얀 線을 볼 때가 있다. 가락에 맞추어 흰 진 천을 가지고 춤을 추는 僧舞에도 삶의 無常함과 고뇌와 流轉을 느끼게 한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線의 律動을 따라 발전하고 소멸하는 것이 人生인가.

최근에 나는 卍甲을 맞이한 한 元老 建築家가 一生을 한 학교에서 건축일에 종사해온 그간의 일들을 총정리 마무리한 建築關係 出版 記念宴에 초대되어 가 보았다. “梨花의 曄안길”이란 冊子 속에 숨겨진 어려웠던 저나온 이야기들이 주옥처럼 엮어진 참으로 값진 한 글자 한 줄의 글꼴이었으며, 또한 그간의 건축作品도 별도로 책자로 수록하여 기증본으로 배포되는 장소에

초대된 영광을 잊을 수가 없었다.

人生이란 결국 時間의 흐름따라 남는 것은 바로 한권의 책이 아닌가, 한줄의 글귀가 아닌가 생각되며 참 멋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되며 眞實한 生活의 마음이 담긴 한권의 책 한줄의 글귀가 좋은 정신적 유산이 되는 것이리라.

人生은 반드시 명예와 금전만을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며 平凡한 노력과 忍耐 속에서 계속 이어온 긴 삶의 줄기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되며 원로 건축가에게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한가지 맡겨진 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 중에 “供其天爵”이란 말이 있다. 하늘이 맡겨준 職分을 가지고 한平生을 天職으로 삼아 最善을 다한다는 것이 상으로 偉大한 平凡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平凡한 사람, 一般人, 事理에 맞는 행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美國사람들의 말 중에 CIVIL WORD란 말이 있다. 이 말은 곧 평범한 가정 안부를 오래만에 만난 친구에게 자네 부모와 아이들의 건강과 무사를 묻는 말들을 말한다. 한가정이 무사하고 安定하다는 것은 곧 社會의 安定이요 국가의 安定인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묻는 것이 가족의 안부이고 이것이 가장 平凡하면서 중요한 안부인 것이다.

길가에 버려진 흙물은 불하나도 잘 켜고 담아보면 그런대로 불뎀이 있고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暗示를 해놓은 것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人間이란 萬사람 다 각기 다른 모양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두뇌 세포는 150억개나 된다고 하며 著名한 天才物理學者였던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 13% 정도 밖에 못써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작자가 가진 그 귀한 두뇌로서 올바른 판단과 努力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 나간다면 未來가 트일 것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우리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 아닌 책을 대학을 졸업하고 1년에 몇권이나 읽었을까? 몇장의 원고를 써 보았을까? 世上을 살아가다 보면 기행문처럼 남이 안보았거나 못느낀 것을 나만 보았거나 느꼈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써보고 또 시작을 해 보면 계속 이어지고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分野나 方法이 전개되고 暗示되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어떤 테마에 대한 창조적인 생각이나 思念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순간에 머리를 스쳐 암시해줄 때가 있다. 나는 전혀 관련없는 분야의 책을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볼 때가 있다. 그러한 책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생각하던 회답의 암시를 얻으면 주석에서 그 책 페이지에 기록해 두며 다시 그 기록을 재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市中에 흔히 볼 수 있는 썸터라는 자그마한 책자 속에 平凡한 사람들의 幸福을 안겨주는 교양적인 이야기로 담은 잡지가 생각난다.

人生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생각할 때 平凡하게 지나가는 하루 하루를 意識있게 뜻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간다.

하루에 원고지 한장을 쓰는 마음으로 나의 平凡한 하루를 넘겨보자. 150억개나 되는 나의 몸 위에 모시고 다니는 이 귀중한 두뇌를 십분의 일이라도 활용해 보자.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길이 트이지 않는 법이니 平凡한 하루 속에, 平常의 일 속에 한번 더 생각하고 한줄을 더 나아가서 들여다 보고 한장 더 자고 움직여 보고 한字 더 써서 글을 만들고 眞實한 나의 마음의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노력하고 습관화 해 보자.

그것이 平凡한 사람에게 자그마한 幸福을 안겨줄 수만 있다면, 마음의 위로라도 된다면 하고 바랄뿐이다. (※)

定期理事会



제 6 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琬會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회 회의록승인의 건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에는 부회장취임승인 신청건을 비롯해서 체육행사 실시, 자격사제도의 합리성 검토 조사서 제출, 건축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의 건서제출, 식수헌급기탁, 공사감리에 대한 간담회 개최, 회원간담회, 4월말 현재 자금현황등이 차례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부의안전토의에서는 협회홍보안내문신문게재의 건을 비롯해서 설계경기 운용위원 추천 및 회비징수의 건, 건축사윤리 현장제정, 순회작품전시회 심사위원 선임의 건, 제규정개정(안)승인의 건등이 논의된데 이어 기타사항이 다루어졌다.

會員 간담회 개최

工事監理에 대한 의견 교환

공사감리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한 회원간담회가 지난달 15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具琬會회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공사감리에 대한 현행법규의 모순점과 시행상의 난제들을 지적하고 이의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金基壽副會長 취임

新任 金基壽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지난 5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부 및 서울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10시 부터 시작된 이날 취임식을 경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具琬會회장은 인사소개를 통해 “협회 창립 17년 이래 처음으로 상근부회장이 취임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건설행정예 능통한 金副會長의 취임으로 협회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보다 장족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具회장은 “신임 부회장을 구심점으로 협회업무의 능동화 내지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은 물론, 회원여러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金副會長은 취임사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2천여 회원의 권익옹호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 육성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임직원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新任 金副會長은 본부 임원 및 서울지부 임원등과 인사를 나눈데 이어 간부직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金副會長은 지난 4월 28일 제5회 정기이사회에서 선임과 관계당국의 인준을 거쳐 이날 취임식을 갖게 되었다.



□ 具琬會회장으로 부터 任命狀을 받는 新任 金基壽부회장 (右)



◇ 主要經歷 ◇

- 1930년 9월 3일 충북 충주생
- 서울大 法大 (54년 3월)
- 서울大 行政大學院 (65년 2월)
- 건설부 사무관 (61년 10월)
- 건설부 관리국 건설행정과장 (68년 11월)
-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77년 1월)
- 건설부 관리국장 (78년 3월)
- 제 2무임소 장관실 관리관 정책관리실장 (79년 1월)
- 정무장관실 보좌관 직무대리 (81년 5월)

이자리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설계자가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방안을 비롯해서 종합사무소 제도의 폐지, 감리청구의 일원화, 주택 사업자들이 방계 계열의 종합사무실설치운영으로 인한 감리비 하락 방지책 강구,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 감리비의 예치제도등이 있

다.

그밖에 감리자에 대한 권익옹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감리의 대형화를 통한 질적향상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실제와 감리의 분리안도 대두되었으며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방안도 제기되었다.

協會消息

기본적인 것으로는, 감리업무의 한계를 정립하고 감리비 적정금액 받기가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李康植(본회감사·주·완중합설계) △安仁模(삼미중합건축사무소) △宋寬植(삼미중합건축사무소) △金寬豐(삼미중합건축사무소) △姜英一(아진중합건축) △許宗五(주·우일중합건축공사) △劉丰成(범양중합건축연구소) △盧秉龍(한웅중합건축) △朴淳澤(한성중합건축)



□ 공사감리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會員作品巡迴展 幕올라

5대 도시 순회...장장 33일간

大賞—金正湜씨 “MBC여의도 스튜디오”

’82會員建築設計作品 巡迴展示會가 지난 14일 막을 올리고 장장 33일간의 퍼레이드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식에는 徐相誥건설부차관을 비롯 李洪培国会議員, 金報根건설부주택국장과 具坑會회장 및 역대 회장들 내의 인사 1백여명이 참석, 5색 테이프를 끊으므로써 뜻깊은 전시회의 첫날을 장식했다.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도시에서 차례로 개최될 이번 전시회는 건설부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예년의 작품전에 비해 규모 면에서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6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58개 작품에 판넬수 총 81개가 선을 보이고 있어 회원 건축작품전으로는 최초의 메어드 전시회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출품방법 및 시상방법도 예년과 크게 달라졌는데 출품방법은 지금까지 회지에 게재된 작품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들이 설계한 작품으로 폭을 넓혔으며 시상도 건설부장관상을 추가해서 폭을 넓혔다.

전시된 작품 및 논문부문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순회작품전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 작품부문

□ 대상=金正湜(주·정림건축) MB C여의도 스튜디오 □ 최우수상=張錫雄(아도무건축) 충무공기념관 □ 우수상=俞元在(건축연구소장) 조선 인터내셔널 사옥 □ 장려상=愼國範(주·한양엔지니어링) 제네랄 호스퍼탈, 鄭時春(정주건축) 제명대도서관 · 金忠鎭(정주건축) 제명대도서관, 吳澤吉(건축연구소장) 용인 C씨대, 金仁鎬(대아건축)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 논문부문

□ 우수상=李鍾寬(한국은성건축) 건축물의 단열시공법 □ 장려상=鄭求殷(삼미중합건축) 도시연립주택 외부공간 구성의 문제점

지역	기간	장소
서울	6. 14~6. 19	회관전시장
부산	6. 21~6. 26	부산메파트
대구	6. 28~7. 3	시민회관
광주	7. 5~7. 10	지부회관
대전	7. 12~7. 16	시민회관

委員會

6회 편찬위원회

제 6회 편찬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5월호 발간에 따른 합평과 새로 발간 될 6월호 회지 편집계획을 확정수립키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회지발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도 있었다.

6월호 편집계획은 학교작품 및 관련논문 등을 특집으로 꾸미기로 하는 한편 그밖에 회원간담회, 해외작품 등을 밀도있게 게재키로 했다.

設備研究分科

설비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가 지난달 18일 오후 본회회의실에서 열렸다.

두번째로 회의를 개최한 이날의 모임에서는 오는 7월부서는 구체적인 연구내용들을 회지를 통해 소개 할것과 특히 7월호 회지에는 송 영위원이 전기분야에 대한 원고를 게재키로 의결했다.

또 8월 이후에는 박용한위원의 기재분야 원고를 실기로 했으며 현재 회지에 게재되는 회원작품중 1개작품에 대해서는 설비도면도 소개토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7월 3회 회의에서는 연구활동범위, 제목설정, 연구방향등을 결정키로 했다.

構造研究分科

첫번째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俞景哲)가 5월20일 회의실에서 7명의 소속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위원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이 설정된데 이어 건축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각 위원들의 사전 연구검토를 의결했다.

한편 전반적인 당면 연구과제로는 건축구조제산 법령 연구와 건축구조의 표준화 연구, 건축구조관계 특강,

건축구조 안전도검사 및 자문의회 활동, 건축구조제산의 방법 연구등이다.

都市環境研究分科

제 1회 도시환경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金眞一)가 5월21일 본회에서 열렸다.

위촉패 전달식에 이어 진행된 첫번째 회의에서는 장기적인 연구로서는 정책적인 안을 주제로 정해놓고, 단기 연구로서는 우선 협회 회원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하기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또 차기회의에서는 위원 각자가 나름대로 사업과제를 생각해서 통괄적으로 다룰수 있도록 과제선정 및 연구를 진행시킨 것을 논의했다.

한편 28일 열린 두번째 회의에서는 각국의 도시환경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 연구키 위해 관련 자료등을 수집,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設計圖書研究分科

設計圖書研究分科委員會(위원장 李丞雨)가 지난달 7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7일의 회의에서는 연구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반문제등이 논의된데 이어 설계도서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李委員長은 설계도서 작성방안으로 전기, 기계등은 모두 제외하고 도면만을 작성하는 방법을 의견으로 내놓았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위해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끝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具統會회장은 각 위원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21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일본배성건설사내의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해서 참작토록 할것과 김대식위원과 김창일위원을 연구책임위원으로 위임키로 했다.

또 차기 회의부터는 연구작업에 의한 심의회의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 편찬위원회



□ 설비연구분과



□ 구조연구분과



□ 도시환경연구분과



□ 설계도서연구분과

거리질서 캠페인 벌여 本部 全職員 참가

의식개혁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본회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을 벌였다.

본회 임직원 전원은 지난달 28일 러시아워에 맞춰 혼잡한 비스경류장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일이 지도해서 밝은 거리조성에 힘썼다.

이날 이른 새벽에 전원 출근해서 준비한 피켓과 띠를 두르고 오가는 시민들에게 질서의식을 심어줬다. 본회의 이같은 캠페인은 지난달에도 있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記念館 건립 誠金 기탁 인천支部 50만원 市에 전달

인천지부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념사업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찬조금을 기탁했다.

동 지부는 인천항 개항 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기념관 건립에 쓰도록 50만원의 가금을 마련 인천시에 전달했다.

이 기념관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하면 당시의 작전 상황 및 관계자료 등을 총망라 전시해서 史料館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意識改革 교육 실시 인천支部 3차례 가져

인천지부(지부장 金鼎洙)는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소속 회원을 비롯한 회원사무소 총무와 보조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및 해당 관청에서 각각 교육을 실시했다.

3회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달 4일 오후 4시, 지부회의실에서 첫번째 교육이 열렸다.

43명의 회원사무소 총무 및 건축사보들은 의식개혁운동과 3대 부정심리 추방에 관한 슬라이드를 관람한데 이어 동 지부 李東武간사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



□ 본부 거리질서 캠페인



□ 경기지부 결의대회



□ 전북지부 새마을교육

두번째 교육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인천시 남구청 회의실에서 金鼎洙지부장을 비롯한 3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배격운동 및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에는 김용성인천직할시기획관리실장과 송영진건축과장이 각각 담당했다.

한편 5월8일의 세번째 교육은 양성환 인천직할시 건설국장과 송영진 건축과장이 회원사무소에 근무하는 총무 및 건축사보를 대상으로 의식개혁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決意大會 및 教育 실시 경기支部 회원 등 99명 참석

경기지부는 의식개혁실천 결의대회 및 의례준칙교육 등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회



□ 인천지부교육



□ 충북지부 간담회



□ 전남지부의 모내기

원 및 임직원 등 99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가지 행사를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첫번째 결의대회에서는 의식개혁을 실생활에서부터 실천한 것과 나아가 활성화와 계몽홍보활동을 적극 벌일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생활의 점소화와 절도를 지켜 모범적인 가정생활 내지 품위보전에 힘쓰기 위해 경조사에 따른 의례준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교육 등을 실시했다.

意識改革 간담회 열여 충북支部, 슬라이드 상영도

충북지부는 지난달 7일 의식개혁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부회의실에서 있었던 이날 모임에서는 의식개혁운동에 따른 세부 실천 지침 시달과 의식개혁을 보다 활성화

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지도계몽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의 세부지침을 담은 슬라이드를 30분간 상영해서 동 운동의 확산 내지 생활화 사례를 직접 부문별로 볼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이어 간담회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建築相談 확대 실시

전북支部 각 市郡에서도

전북지부(지부장 文尚植)가 금년초부터 전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상담실을 보다 확산해서 운영키로 했다.

동 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청구내에서만 설치운영하던 건축상담실을 각 시군 민원실에도 확산해서 운영키로 하고 해당지구 회원으로 하소금 윤번제로 상주 근무토록 해서 민원인들의 건축상담에 응하도록 했다.

동 지부가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건축상담실운영은 대민봉사를 통한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쉼위 및 업무홍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건축민원서류의 반려는 물론 보안요구 전수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으며 회원의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 이를 확대 실시해서 밝고 명랑한 건축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직접적인 회원참여를 도모한 것이다.

새마을 정신교육 참가

전북支部 회원 33명

전북지부 회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새마을 교육을 받았다.

전북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한 이번 새마을 정신 교육에는 모두 33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다.

이번교육은 거국적으로 전개되고 있

는 국민정신 개혁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도덕과 윤리관을 확립하여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및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실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촉구를 위한 내용이었다.

意識改革교육 실시 전남支部 슬라이드 상영

의식개혁운동의 심층화와 폭넓은 홍보계몽을 위한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전남지부도 의식개혁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지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슬라이드를 통한 시청각교육과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63명의 동 지부소속회원이 참가한 교육에서는 광주시 동구청의 협조로 의식개혁의 필요성과 전개과정을 담은 슬라이드를 상영, 동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보고 이어서 金映傾지부장의 강연교육을 받았다.

농촌 모내기 지원도

전남支部 53명 회원참가

한편 동 지부에서는 모내기철을 맞아 바쁜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을 광주시 교외 논에서 보냈다.

소속회원 53명이 참가한 이날 모내기 행사는 근교 노대부락 1천여평의 논에 모를 엮었다.

“농번기 일손을 도움시다”라는 프랜카드를 꽂아 놓고 비지땀을 흘리며 열

심히 모내기를 한 전남지부 회원들은 서툰 솜씨일 망정 바쁜 일손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이날 하루를 뜻깊게 보냈다.

道庁서 간담회 가져

경남支部 体典誠金도 전달

경남지부는 경남도청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5월22일 동지부 임직원 10명과 도청관계관 4명은 도청전선국장실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의식개혁 및 사업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국체전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특히 이자리에서 曹台和지부장은 체전(体典)성금으로 84명의 회원들로부터 모은 2백52만원을 전달했다.

어린이날 誠品 전달

제주支部 회원 성금으로

제주지부(지부장 金守賢)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소속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학용품을 관계처에 전달했다.

동 지부 회원들은 지난 5월5일 제 60회 어린이 날을 앞두고 학용품 10만원 상당을 마련해서 시설아동 위로잔치에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부관서인 제주시에 기탁했다.

♣ 도서 / 자료기증

“감사합니다”

◆ 景觀變遷史

제프리·스잔 제리코의 「THE LANDSCAPE OF MAN」을 羅相紀교수가 번역소개한 것이다.

先史時代부터 現代까지의 환경조성을 사진과 함께 풀어낸 이 책에서 환경이 「人間의 景觀」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그 時代에 熟慮한 뒤에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서술하고 그러나 그 形式은 그것을 낳는 文明이 規定할 것이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 철학, 종교를 연구해야 한다

고 밝히고 그러므로 저자는 「文化」에 대해서 말하고자 우선 사회, 지적배경을 포착해서 기술했다.

◆ 建築用語集

대한건축학회가 펴낸 건축용어집이 발간되었다.

지난 79년부터 동 학회가 국립건설연구소의 지원으로 보완작업이 추진되었고 그 후 조사연구를 거듭해서 6천 200여개의 건축용어와 1천200여개의 삽화를 정리 수록하여 용어집을 만들었다.

이 용어집은 건축계 종사자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종합건축용어집이다.
/야정문화사 / 5,000원

協會運營의 오늘과 來日

다음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회원간담회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협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모든 회원들이 원하는 회원을 위한 협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具琬會 회장이 이끌어 나간 이날 간담회에는 15명의 회원과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

☞ 일 시 : 1982년 5월 12일 오후 2시

☞ 장 소 : 본협회 회장실

☞ 참석자 :

具琬 會 (본협회 회장)
金一 榮 (본회이사·동신건설공사)
姜泰 星 (고려건축합동설계사무소)
金仁 錫 (중합환경연구소 일진)
金希 洙 (현신건축기술공사)
卞 鎔 (원도시건축연구소)
徐千 植 (합동사무소 삼일건축)
申吉 雄 (홍일건축기술공사)
安永 濤 (주·현신건축)
安將 元 (신아건축연구소)
李珪 杓 (주·영&이건축연구소)
李榮 一 (삼송·상지건축연구소)
李鍾 寬 (한국은성건축기술공사)
李興 秀 (신일건축연구소)
韓鑣 雲 (한진건축설계사무소)
洪光 杓 (상합합동건축연구소)
任仁 勳 (본부 사무처장)

記錄/崔京鎬

□ 회장 그동안 회원 간담회를 여러차례에 걸쳐 가졌었습니다. 금년에도 회원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면서 협회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는 요즘 어려운 실정들이고, 또 제각기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오신 회원들만이 참석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회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와 아울러 진로에 대한 문제가 대담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 문제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경기의 불황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사무실 운영난에 부딪쳐 그야말로 급급하기 짝이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협회는 과연 무엇때문에 존재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라는 문제도 결들여서 대화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동안 협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여념없이 세월을 보냈습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든가 또는 회원의 업무 중에는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다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한가지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사들이, 그리고 우리 협회가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건축사협회가 생긴 이래 최악의 상태라고까지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회원들의 텅텅빈위, 그것을 근절시키는 일입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채 예치금의 반액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서도 공공연하게 수탁업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주로 서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각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원의 자질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 지부장이 심의때문에 서울시에 나가 있는데, 이 양반 얘기가 얼굴이 뜨거워서 심의장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이 작성한 도서가 심의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데, 수준 이하의 것,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이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정도의 도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건축사를 필로 보겠어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회원들을 보니까 대작(大作)만



□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회원 간담회가 열렸다.

을 하시는 분들이고 큰 프로젝트만을 다루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내 말에 아마 수궁이 잘 안잘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건축사 대부분이 큰 것만을 다루는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작은 주택에서부터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하는 회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택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지구 일부에서는 집장사들이 집장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축사가 최고랑 차기에 안정맞춤이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온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탈법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반지하실같은 것은 완전히 캄플라지해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소화시켜 주지 못하면 무능력 건축사가 되고, 도저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을 잘 다루어 취급해 주는 건축사는 유능한 건축사가 되는데, 이렇듯 불법적인 유능한 건축사들이 이 불황속에서도 하루에 몇십건씩 수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우리 건축사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선도역할을 해줘야 할텐데 이모양이니, 그래서 부실회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 협회의 機能을 強化해서 비위회원들을 가려내는 일련의 作業 先行 필요

□ 스스로 權利 포기하는 덤핑행위 하루속히 없어야

□ 안영준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이 회원업무 수행에 따른 부조리 제거 및 의식개혁 방안인데, 사실 지금의 건축경기로 보아 회원님들이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분투하고 계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덤핑 때문에 저희 건축사 사회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회원들이 덤핑의 피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보조사나 보조원의 판리가 그동안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사나 보조원들이 소속해 있던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소위 건축사와 고객이 접촉하는 문제에 보조사들이 접촉, 건축설계를 수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의사회 구현이다 의식개혁운동이다 하는 구호가 한창인데, 여기 오신 소장님들 중에 구청에 들어가 보신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 경우에는 정말 창피해서 구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구청 건축담당직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새로 배치된 분들은, 아닌 말로 보조원들 상대하다 건축사를 상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대하는게 정말 형편없어요. 회장님께서서는 자업자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겪어 본 경험으로 봐선 어떤 획기적인 방안과 대책이 서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까 몇가지 전의하고 싶은데, 우선 정의사회구현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회와 지부의 공문을 통해 정화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모든 건축사들의 선도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건축사 리더로 선택되신 분들이 정화운동에 앞장 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전체 분소장(分所長)에 대한 임명도 있었고 하니 일단은 그분들로 하여금 정화에 앞장 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명의대여 고발판계인데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저는 명의대여를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완전히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조사나 기타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찍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은 도장 찍어가는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보수요율 지키고 덤핑 안하기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협회나 지부에서 규정을 세우고 규제를 해서 강경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되지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 설계·감리업무 성실수행에 대한 문제도 협회에서 보수요율에 대한 문제를 각 지부에 충분히 지시하고 하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감리의 경우, 어떤 분들은 연립주택 감리에서 평당 1,800원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에 대한 규제, 말하자면 감리에 대한 예치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수를 얼마 이상 받아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회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계·감리업무 성실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일에 관한 한 도사가 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오면 적당히 얼버무리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이 전혀 없다가 그야말로 가슴에 콩나듯이 한 건 한 사람들만 걸려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과거엔 공무원에게 밀기만 보여도 행정처분을 받은 것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점들을 전부 감안한 당국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건축사는 부실한 요인을 갖고서 스스로 감리에 응하고 임했으니까 누구에게도 원망을 못할 겁니다. 그러한 시기가 머지 않은 날에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監理에 따른 제반문제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 해야……

□ 강태성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연립주택이 허가난 다음 착공 때 감리를 해서 구청에다 제출하는데 협회를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세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2,000 원을 받던 1,800 원을 받던 단돈 1,000 원을 받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회에서 마련하여 제동을 걸어 줘야지 감리하는 사람은 종합감리를 해서 도장만 찍어주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설계에는 예치가 있고 세금도 있지만……

□ 회장 문제가 여러가지 있어요. 세금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설계도서는 일정한 설계비용을 받고 있으면서 감리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그 당시, 아마 전체회원들의 반대이론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이론이란 뭐냐 하면 감리에 대한 업무한계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감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40여개의 사무소에서 종합설계사무소라 하여 감리영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실공사가 나오는 이유가 감리의 부실에서 온다 해가지고 각계각층을 망라해 다니면서 KBS가 심층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엇그저께 우리 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사무처장하고도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또 한 별도로 감리공단이 생길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자가 건축사 이외의 건축기사나 건축기술사들로 감리공단을 구성할지도 모른다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길웅 감리문제는 대책을 세운 다음에 거론되어야 한

다는 좋은 말씀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법규정에 나와 있는 특수건물 150평 이상, 일반건물 200평 이상은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많은 설계사무소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회사에서조차 기술자를 상주시키지 않는 예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공을 건설회사에서만 하게 되면 감리도 하기 쉽고 또 기술자가 나가 있어도 감리하기가 좋은데 집짓는 방향까지 전부 감리기사가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연립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50세대에서부터 백몇십 세대까지 지면서도 건설회사하고 어물어물해서 도장만 찍어주는 예가 있어 작년에도 서울에서 무척 큰 형사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회에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협회운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물론 사무처에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해도 소속 회원이 너무 대가적입니다. 서울시 지부가 4개 분소를 운영하던 때만 해도 회원 상호간의 얼굴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연락소장인지도 모를뿐 아니라 어떤 모임조차 갖지 않으니까 연락소장이 백번 있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을 하는 사무실들이 너무 영세성을 띄고 사무실 개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번두리에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책상 두개 정도 놓고 종업원 한명, 설계사 한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성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덩핑을 하게 되고 또 회원 상호간의 얼굴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면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소별로 친목회를 조성해서 잘 이끌어 나가야 연락소의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친목회를 통해서 얼굴을 익히다 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짚으면서까지 남의 일을 배아아가는 그런 일은 적어도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 건축사 스스로의 主体意識을 가지고 어떤 決意를 해서 각성해야 할 때

□ 김희수 저는 우리 건축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다섯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축사 스스로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어떤 결의(決意)를 해서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회장님이 어떤 강력한 책임 아래에서 무엇인가 단안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사무처를 강화해서 모든 부조리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번째로는 부실한 건축사가 나올 경우, 회지에 이름과 사진을 실어서 공개하여 이런 건축사가 있어 협회에서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식의 경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 봄, 제가 아는 몇분이 이런 말을 하데요. 소장님은 이번에 걸려들

지 않았느냐구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신문에
 몇십명의 건축사들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고령자가 직접 디자인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보조사나 기타 제리인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리나 지키고 앉아 있고, 그래
 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 협회 사무
 처에서 보조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
 독을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회장 고령자에 대한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건축사들이 전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
 향으로다 생각하고 있고, 내 입가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
 만 이왕 욕먹은 것, 더 먹고 보자는 그러한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 한용섭 오늘 이렇듯 좋은 모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
 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담의 줄거리가 협회운영
 에 대한 방안이라 해서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도 나
 오는데,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과 집행부에서 일하는 사람
 들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협회 사무처에서 제시한 유인물에 대한 설
 명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이렇게 해보
 았는데 앞으로는 저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식
 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합예산제도에서 지부 자율예산제도로 운영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으면 합
 니다.

□ 강태성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豫算制度는 현실적으로 협회운영에 유리한 방
 향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야

□ 회장 내가 볼 때도 설명보다는 당면된 문제부터 얘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묶어보는 것이 바
 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여
 기 나오신 분들 중 통합예산제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통합예산제도에서 지부 자율예산제도로 운영방안을 강
 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나 하면, 현재 우리 전
 축사협회는 본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소위 중앙체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자율
 적으로 한다 그겁니다.

□ 이홍수 유인물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찬성은 이미 선행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그 해의 예
 산상의 운영방법을 예를 들어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
 로 할 것이냐, 기타 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부의 운영자금과 본부 부담금을

비율로 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막상 그러한 방법으로 운
 영을 할 경우, 예산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말
 씬을 들었으면 해요.

□ 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부는 자율예산으로 하되 실
 적회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한 본부는 전
 체 정회원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
 니면 비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에 대해 여러가지
 안이 나오면 종합해서 검토할 방침인 거죠.

□ 서천식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성질의 문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제시된 후
 에 거론해야 할 것 같아요.

□ 처장 그러니까 회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과 여러가지
 안을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이사회나 각 위원회에 통보
 하여 검토한 다음에 총회로 올라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
 이 오늘 간담회 목적이기도 한거죠.

□ 강태성 내용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실적회비만
 받아가지고 지부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맞는지 안맞는
 지도 모르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 김일영 이걸 그래요. 작년도 정기총회 때 대의원 전체
 적인 의사로서 83년도부터는 독립예산으로 운영하게끔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내
 용을 작성해서 지난번 건설부로 올린적이 있구요. 그런데
 건설부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이 왔었습니다.

때문에 유인물에 나온 내용은, 대의원 총회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위임한 사항이므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
 들에게 독립예산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장단점 등을 집
 행부에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물론 집중적으로 거론
 되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 김희수 자율예산으로 하게 되면 지부의 활동이 활발해
 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고 상호보조나 어
 떤 행사같은 것도 바랄 수가 있는데 통합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결여되어 회원간에 얼굴보는 일이 드
 물다든지 해서 시정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유인물이 요구하는 핵심같은데……, 그런 문제입니까 아
 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회장 통합예산이나 자율예산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전축사협회 조직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전축사협회 자
 체의 조직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
 시 지부는 현재 900명 가까운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서울시 지부가 가장 추악지부가 된 원안도 시지부라는
 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부장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상근도 아닌 명예직인 지부장이 아침부
 터 저녁까지 지부사무실에 나와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에다가 모든 업무를 맡게 되는데
 현재의 사무국 체제가 900명 가까운 회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00명 가
 까운 회원을 가진 서울시 지부가 현 사무국 인원을 가지

고 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입니다.

해서 서울시 지부의 조직을 바꿀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대책은 서울시 지부를 서울 건축사회, 즉 하나의 연합회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건축사 연합회로 해서 본부는 중앙회가 되고 각 구청별로 연합회, 즉 지부를 두어 조직을 확산시키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건축사의 권익과 회원의 권익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요. 그래서 통합예산이니 하는 문제보다 그러한 조직이 먼저 이루어져서 제도적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애 겁니다.

□ 이홍수 통합예산제도에서 지부 자율예산제도로 운영을 강구한다는 항목과 협회 사무처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감리업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하면 감리란 감독 위에 앉아 있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감리자들이 감독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업무규정에도 명확하게 나와있질 않아요. 이점에 대해서도 제도를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업무의 규정을 분명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설계용역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식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매번하면서 느낀 건데 말투는 고쳐져 있지만 양식은 옛날과 똑 같아요. 그리고 설계와 감리가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계 및 감리보수 계약서로 되어 있지요? 이것도 분리하든가 아니면 하나로 만들든가 해서 고쳤으면 해요.

□ 회장 그 용지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원가로 공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 이홍수 공급보다는 감리계약과 설계계약이 분리된 것도 있고 합쳐진 것도 있어요. 어느 것을 사용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죠.

□ 회장 그래서 업무한계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은 주택 다루는 회원들에 대한 문제, 이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회원들을 계층 두는 것 같아 반대했었는데, 문제가 자꾸 어렵게 얹혀지니까 이제는 작은 주택 업무와 여러가지 건축의 경우에 따라 구분해 가지고 뭔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공포되고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업무에 대한 것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 처장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 조사서와 검사서로 해서 건축허가 또는 준공검사까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건축사에게 업무를 이양했을 때 범상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해주는 뇌물수수 또는 금품수수 등에

해당되는 자는 형법이나 공무원법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에게 업무를 이양했을 때, 일단 공무원의 자격에 준해서 협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許可내기 전에 도서 사전심의 기능을 협회에
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 회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협회 차원에서 볼 때에도 허가를 내기 위해 작성한 도서를 일단 협회에 검토 의뢰한 다음 제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축사가 그것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도서에 자신을 갖지 못하거든요. 자신을 갖지 못한다기 보다는 한번쯤 제3자의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일차적으로 각 지부의 도서창구에서 도서심의나 검토를 하는 관계자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대안이 서야 되겠지요.

그리고 건축사가 책임을 다해 업무를 해결해 나간다면 건축사의 자질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물론 개정된 법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로서도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유리하도록 법 개정을 시키기 위해 스터디하고 노력했지만, 역시 문제점은 관계자들이 하는 애기에도 일리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건축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부실한 것이 많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맞는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안장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전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법(士法)이 개정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자질과 책임한계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수규정이란 돈가 감리규정같은 것이 사실은 전설공사협회에서 71년도에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된 것이 거의 없어요. 보수를 규정을 보게 되면 전문화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학교다 하게 되면 2종과 3종이 있는데 그것이 국민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대학교인지 하나도 구분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협회로 문의한 적도 있지만, 아마 건축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우리 자체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당하지만 말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자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문화시켜 보수기준도 고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회장 보수요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사장(死藏)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수요율을 올려 달라고 하기 이전에 규정된 보수요율의 20%도 안되는 요율을 받고서 일을 하고있단 말입니다.

□ 안장원 우선 어휘성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

면 우리말 자체에 상당한 보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도 종류가 수십개가 있다구요. 예를 들어 그러한 조항부터 우리가 조직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스터디해보자 이겁니다.

□ **이각표** 저희가 건축사협회를 외부에서 보았을 경우, 과연 무엇을 하는 단체냐, 정말 우리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요즘 엔지니어링같은 데에서 우리 사협회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업무를 수탁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사협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건축사의 설계사무소라는 곳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들은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상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관청 관계에서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부나 이런 데에서 왜 건축사를 형편없이 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 協會조직 변화 강구 — 副會長, 任員중원으로 대외 이미지 색인

□ **회장**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무척 애를 쓰시고 뭔가 하기 위해 노력들을 하시니까 뭔가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 취해진 일이 뭔가 하면, 오는 10월 총회에서 임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본부 이사도 현재 5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번에 상근 부회장이 본부에 오십니다.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청에서 우리를 우대접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천여 회원,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난 그걸 회지를 내면서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뼈아프게 회지를 만들어 내봐야 도대체가 들춰보질 않아요. 특히 지도층에 속하는 2~3백명의 회원이 회지를 더 외면하고 있단 발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참여 없이는 회지가 제구실을 못하고, 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협회 일에 참여를 해줘야 하는 데도 말이죠.

엔지니어링 문제는, 지금 단계로서는 어설픈게 상대할 수는 없습시다만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가 현재 손을 다 들고 있어요. 사실 뒷모르고들 엔지니어링을 우후죽순격으로 해놓고서는 분담는 곳이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협회의 체제와 조직에 변화를 가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앞으로는 절대 과거로 되돌아 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 **변 응** 요즘 건축사들이 일할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실내장식·환경·조경·구조·설비 등 각각 분야가 세분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건

축사는 건축 외장만을 디자인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량이 피상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건축사협회에 여러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찾을 권리의 영역을 확대시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회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건축사와 건축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건축사가 건축가이고 건축가가 바로 건축산맥,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건축사와 건축가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건축사가 요구하는 설계도서와 건축가가 요구하는 설계도서 애기에는 차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원천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 협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풀지에 풀어나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요율과 관련된 문제는 다시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분 말씀하십시오.

□ **홍광표** 지금 협회의 전문기구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애기들이 계속해서 연구·검토가 되어 가지고 회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해서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결코 잃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도시설계라 해서 현재 중요한 도심지의 도시설계가 전부 도시설계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구나 설비·조경 등, 분리가 되어 가니까 건축사들의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 **서천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렵사리 마련한 건축사협회 회관이 중심지에 있어 좋긴 하지만 좀더 멀리 나가드라도 싸고 넓은 땅에 큰 회관을 지어서 큼직한 회의실도 갖추고 상설 전시장도 마련하여 자재샘플을 전시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에게 소방·설비·전기 등에 대한 교육을 연중무휴로 자주 교육시켜 주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좁은 곳에서 많은 회원이 모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기술에 대한 테크닉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사협회에서 해줘야 할거구요.

□ 會館移轉으로 보다 많은 會員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契機 있도록 —

□ **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관을 이전하기 위한 회관전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회관을 팔려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이전을 하긴 해야할 것입니다.

□ **이종관** 저는 강동지역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강동지역이 취약지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동지역의 집장사 윤

운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3년 전만 하더라도 강동지역에 설계사무소가 한 두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개가 넘고 있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회원들이 늘어 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일부 부당건축사나 보조사들이 덩핑행위를 하여 많은 건축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달만 하더라도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고 지난달에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활용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쯤 회원끼리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강동지구만이라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더욱 더 경주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오늘과 같은 간담회를, 협회 참여가 빈약하거나 안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가져 협회실정이라든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지방 출장이다 해서 설계나 감리 등, 그 외 일에 스터디를 못할 경우가 참 많습시다. 그럴 경우 협회의 부장이나 직원들이 건축사를 대신해서 일을 취급해 주거나 스터디를 해줌으로써 건축사가 마음놓고 일에 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희가 하루 속히 정당한 보수요율을 받는 방법, 또는 후생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석 우리 건축사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무역협회·건설협회 등이 있는데 유독 우리 건축사협회만이 대외적으로 취약한 것 같아요. 무역협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상근 상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상공부같은 데서 임의로 일을 처리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협회가 대판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시키고 있는데 우리 건축사협회만이 관청이나 국민들에게 좋지않은 단체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반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건축감리란 무엇이며 감독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나 관청에 완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심층취재를 의뢰해 올 경우, 사무처에서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건축사협회의 애로라든가 건축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교육도 필요해요. 회원을 10명이나 20명 모아놓고 정말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문제를 물어 볼 수 있는 건축법규에 능통한 분을 초빙한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상근

부회장을 무어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관청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망신 당한다는 생각을 하게끔 차원 높은 제도와 여건조성을 협회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권리다, 자질문제다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 폭넓은 弘報활동으로 協會·會員에 대한 일반의 認識度 높여야

□ 회장 그래서 금년 초에 TV 인터뷰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충분한 홍보자료를 가지고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되고 말았어요. 원인은 예산상에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홍보비라고 갖고 있는 것이 100만원인데 TV에 한번 나가려면 4~5십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상황 아래에서 한두번 홍보활동 해봐야 무슨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긴 합니다.

□ 서천식 그렇죠. 만약 예산이 보강되어 홍보활동이 활발해지면 관에서도 우릴 무시 못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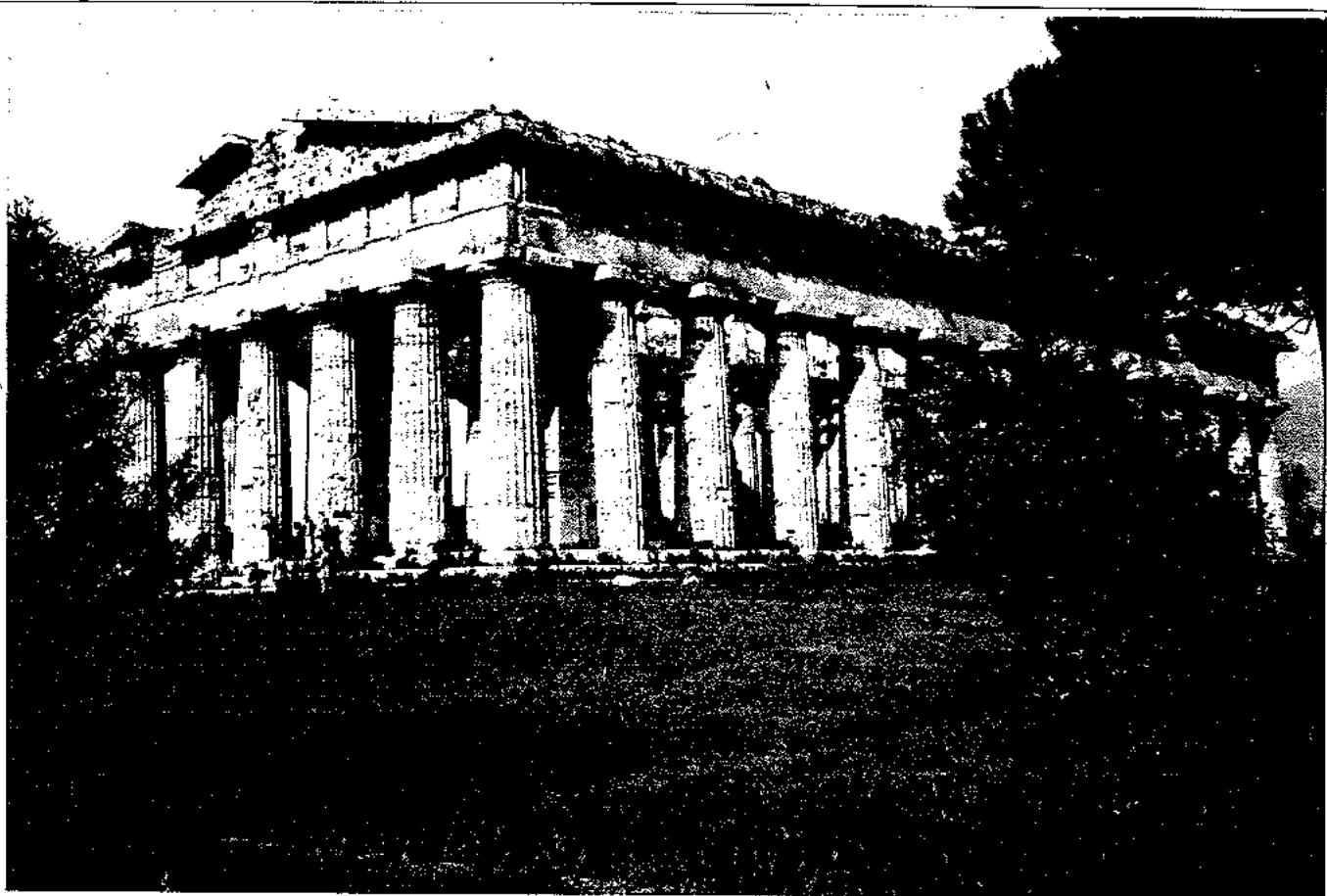
□ 회장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현재 예산은 달리고 하니까 회지를 잘 만들어서 건축사 회지를 우리들의 하나의 무기로 삼자는 겁니다. 정부시책에 대해 불만스러운 것은 정당한 입장에서 비판도 해야 하고 말입니다.

□ 한용섭 그러니까 홍보비를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들어오는 것이 있지 투자없는 이익이란 있을 수 없잖겠어요?

□ 이영일 오늘도 관청에 불일이 있어 들어 왔었습니다. 건축법을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앉아서 위법적인 면에서 맞는 법을 자꾸 고쳐야 한다고 그래요. 해서 안되겠기에 과장이랑 직원들을 다 앉혀 놓고서 열변을 토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잘못 생각했었다고 사과를 하기에 그냥 돌아 왔는데, 아뭇튼 관계 직원이 이런 식이니까 건축사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법을 고치는데 덮어놓고 고치단 말예요.

감리문제도 그렇고 건설업법도 그래요. 전부 보강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지 건축주나 건설회사는 처벌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위법자는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맨날 우리 건축사만 처벌을 받는다구요.

□ 회장 수고를 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모여서 뜻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제시된 얘기를 집약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협회라는 단체를 구심점으로 하여 2천여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랜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



連載 [1]

잃어버린 古代都市

I. 都市란 무엇인가

古代都市란 말할 것도 없이 현대에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都市를 말한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스탄불·바그다드와 같은 과거의 都市 위에 새로운 都市가 몇 겹으로 쌓여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古代都市에 대한 규모와 역사는 聖書나 호메로스의 전설 중, 혹은 이집트의 象形文學이나 바벨론의 楔形文學에 의해 찾아볼 수가 있다. 거기에서는 여러가지 도시의 정치형태와 경제조직을 읽을 수가 있으며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식으로서 알 수도 있다. 이 작업은 근래들어 考古學과 歷史學의 진보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따라서 都市란 단순히 數字로 표시될만한 그러한 것만이 아니며,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都市生活을 생각해 보더라도 도면이나 그래프에 하나

하나 표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에는 편리라든가 쾌적성 등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생활의 충실감이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都市生活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초고층 빌딩 위에서 한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이나 동경·뉴욕을 볼 때, 그 속에 뻗어 있는 고속도로의 아름다운 曲線의 眺望, 그리고 밤이 되면 지상의 성과와도 같은 배운의 바다 속을 천천히 빛의 航路를 그리며 달리는 자동차 불빛의 帶狀線 등에서,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都市는 단순히 우리들의 생활도구나 장소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都市 그 자체는 하나의 육체와 신경조직, 또는 뚜렷한 성격을 가진 살아 있는 生物과 같다.

古代都市 역시 살아 있었던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거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古代都市도 육체·혈액·성격을 가지고 살아 왔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육체란 數字와 文字로서는 감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한 조각의 기왓장이나 벽돌, 부러진 돌기둥 등이 살아 있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物件 그 자체는 數字를 초월한 어떤 확실한 손의 촉각적 자국으로서 그 분위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都市란 이미 말한 것처럼 인간의 단순한 공상도 아니고 또한 도구도 아니며 인간이 그들의 생활과 꿈을 남긴 자국의 세계, 바로 그 자체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뜻으로서 都市란 都市 이상의 것이며 또한 단순한 歷史 이상의 것으로서 그것은 인류의 예술, 그 자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

大學과 캠퍼스計劃

朴 胤 成 — 高麗大學校 教授

CAMPUS PLANNING FOR UNIVERSITY

Park, yoon Sung — Prof. Korea University

1. 大學의 存在와 그 理念

과거의 人間들은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過程에서 20세만 되면 成人이 되어 스스로 가정을 갖고 독립된 생활을 개척해 나가야만 했었다. 그러나 現在에 와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20세만 되면 독립시켜 自立生活를 하게 하는 예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20대에도 大學이라는 고등교육을 받게끔 각 가정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또 사회적으로도 人材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教育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상식으로 되었다. 그것은 각 가정의 教育水準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어 가고 있고, 또한 家族은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면서 핵가족화하여 家族構成이 단순화되어 가고 있으며 자녀의 수도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연히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投資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教育期間도 연장되어 자녀들의, 소위 胎兒期는 점점

길어져 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大學의 存在는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학출신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人材로서 클로즈 업되어 왔고 學問的인 성과는 經濟社會發展에 큰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대학출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하나의 國力으로까지 영향을 끼쳐 왔다. 그리고 激化하여 가는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大學教育을 중시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세계 각국이 모두 공통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各國이 大學教育의 보급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教育水準을 올리는 데에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을 國策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명한 대학의 졸업생들이 官公署를 위시하여 有力한 社會에서 學力尊重의 禮遇를 받고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경향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은 大學人學에 대한 過熱理念을 야기시켜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모까지 확대되어 진통을 겪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자신들의 자녀의 장래를 위해 경제적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大學進學을 계획하고 대학을 졸업시키는, 상당히 높은 向學熱을 우리 주위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그동안의 大學을 보면 구라과의 Paris 大學이나 옥스퍼드大學 등은 700~8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의 역사가 근 100년에 가까운 연륜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理念 또한, 대학의 설립 당초에 가졌던 이념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많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처음의 이념이 변질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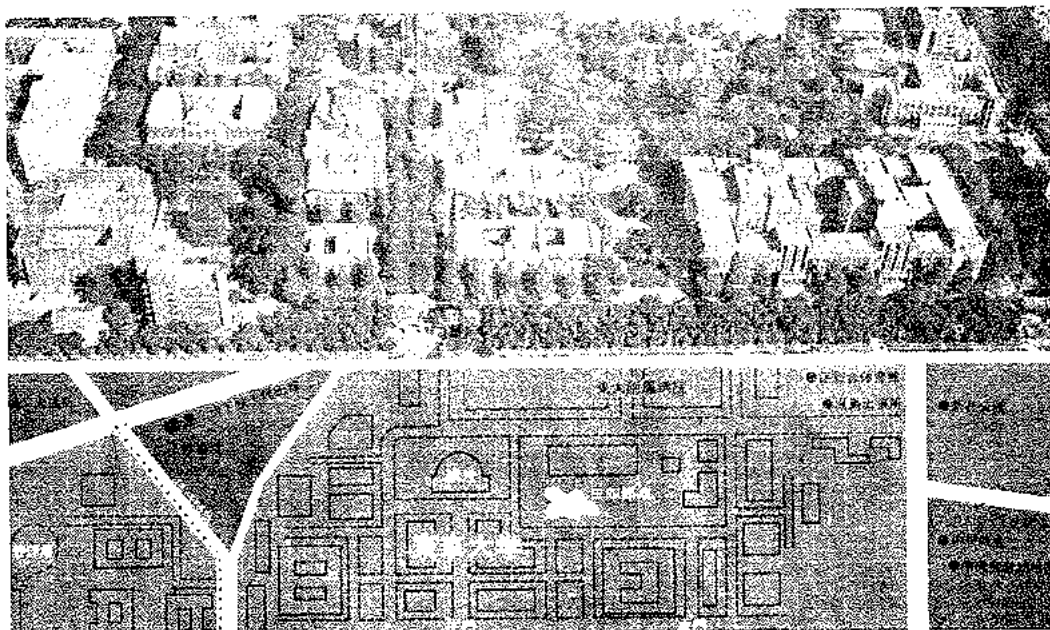


사진 1: 東京大學 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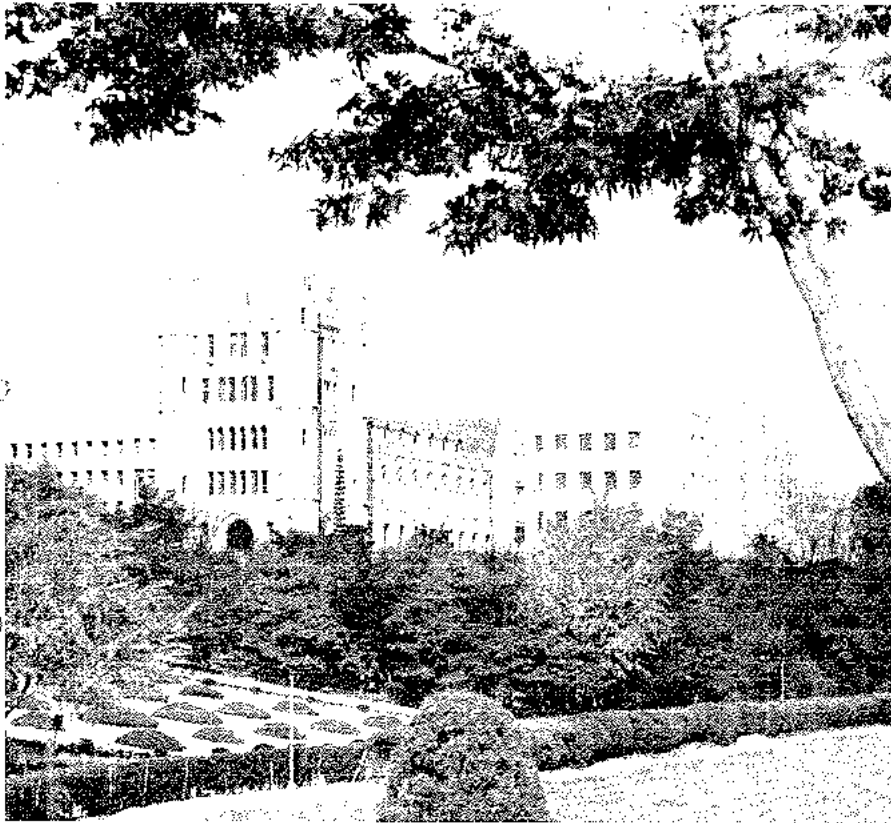


사진 2 : 高麗大學校 (石造樣式을 象徵體로 한 建築)

(표 1) (1980년도 기준)

大學名	國·公立大學		私立大學	
	학생 수	(대학 수)	학생 수	(대학 수)
綜合大學	109,320명	10개 대학	170,540명	20개 대학
單科大學	23,320명	11개 대학	101,460명	45개 대학
計	132,640명		272,000명	

(표 2) 全國大學設立別 施設의 綜合 確保率 (單位: %)

區分	設立別	校地	體育別	校舍	附屬建物	附屬土地	綜合確保率
國·公立	綜合大	71 (77)	73 (75)	61 (66)	72 (72)	100 (100)	65.8 (70.3)
	單科大	68 (80)	57 (65)	49 (64)	52 (52)	100 (100)	55.4 (68.0)
	小計	70 (77)	68 (72)	59 (66)	70 (70)	100 (100)	63.9 (70.1)
私立	綜合大	61 (69)	71 (77)	53 (67)	65 (65)	94 (99)	57.9 (69.3)
	單科大	66 (73)	73 (79)	53 (67)	31 (31)	98 (97)	57.3 (68.3)
	小計	62 (70)	72 (78)	53 (67)	58 (58)	95 (99)	57.8 (69.2)
總計		65 (72)	71 (77)	55 (67)	61 (61)	98 (100)	59.9 (69.7)

註: 綜合確保率을 算出하기 위하여 各 施設種類別로 加重値를 주었는데, 그 結果는 校地 20%, 體育場 5%, 校舍 70%, 圖書 5%로 하여 100%로 가정하였고, 그외의 附屬土地 및 附屬建物을 각각 100%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加重値의 結果에 기초하여 綜合確保率은 校地, 體育場, 校舍 및 圖書가 90%, 附屬土地 및 附屬建物이 各各 5%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한 例로 校舍의 確保率은 綜合確保率 中에서 63%의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다.

※ (표 2.3) (그림 1.2)는 金永哲·孔銀培의 <大學施設基準研究·1981, 12>에 의거함.

지기 쉬운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時代的인 요청에 따르는 機能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敎授를 해야 하고 學問的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하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3대 機能이 오늘의 대학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이 3개의 機能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施設 또한 대학 캠퍼스 안에 설립이 되어 원만한 大學像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大學은 外的인 시설뿐만 아니라 캠퍼스 안에 넘쳐 흐르는, 精神的인 이면서도 思索的인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근래 들어 급속하게 발달되어 가는 科學技術이 學問的으로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더욱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大學의 임무이기도 하다.

2. 大學 캠퍼스計劃의 必要性

우리나라의 대학을 살펴보면 私立大學이 國·公立大學에 비하여 2배 이상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1)

그리고 일반적으로 私立大學은 학생들이 납입하는 수업료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 학생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문교부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國·公立大學에 비하면 私立大學이 시설내용에 있어서 많은 학생수를 포용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표 2)

물론 우리나라도 大學設置基準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55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1063호로 공포하였던 것을 다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감안, 1970년 1월 27일 대통령령 제4543호로 개정 공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設置基準과 실제적인 확보와는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림 1)은 학생 1人당 校地의 확보 현황에 대한 비교이며, (그림 2)는 학생 1人당 校舍의 확보현황이다.

그리고 <표 3>은 학생 1人當의 校地의 各機能別 比較를 표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캠퍼스가 얼마나 빈약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지난 1981년 도부터는 대학의 定員이 배로 증가됨에 따라, 수용력의 증가에 따른 각 대학의 시설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校地의 面積으로 여유가 충분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면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 대학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2의 分校, 제3의 分校를 물색하여 새로운 校地에 새로운 캠퍼스의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많은 大學들은 그동안 既存施設과

함께 새로운 건물들을 캠퍼스 내에 필요에 따라 건축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鉄筋콘크리트로 된 영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추가적으로 건설하여감에 따라 建物量으로 보아 더이상 캠퍼스 내에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도달한 대학의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

사진 3 : 早稻田大學 理工學部 (유사한 機能別 Grouping)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施設의 增強이 필요없이 停止상태로 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나가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學問의 내용은 날 이 갈수록 진전되어 가고, 더우기 自然科學部門에서는 새로운 연구에 대 한 施設의 要求度가 끊임없이 증가해 가고 있으며 人文關係의 부문에서도

圖書의 증가량은 대단한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학생수나 강의시간에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연구에 대한 대비와 圖書의 수용을 위한 새로운 요구는 매 년 증가의 필요성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만이 가지 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도, 특히 역사가 깊은 대학에서 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文化와 科學・技術의 발전에 따라 시대적 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의 증가와 學科의 증설을 진행시켜 몇배 의 확장을 해온 사례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확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발족한 많은 大學들이 실제로 부닥치는 것은 堡地, 즉 校地의 부족 에서 처음의 大學 캠퍼스계획의 기본 적인 구상을 대폭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한 계획의 실천 은 혼란을 초래하게 하며 自立的으로 부득이 하게 分校設置를 추진하게 하 는 예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大學의 캠퍼스計劃에서는 이 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장시간에 걸친 장래의 확장 계획(Long Range Development Plan)을 합리적으로 세 워 무리없는 캠퍼스計劃을 실시해 나 가야 한다. 이러한 장기건설 계획의 실예는 歐美諸國의 大學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大學의 장기적인 건설계 획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장기계획 적인 시야를 大學自体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실행이 상당히 어 렵운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3. 大學의 캠퍼스計劃과 그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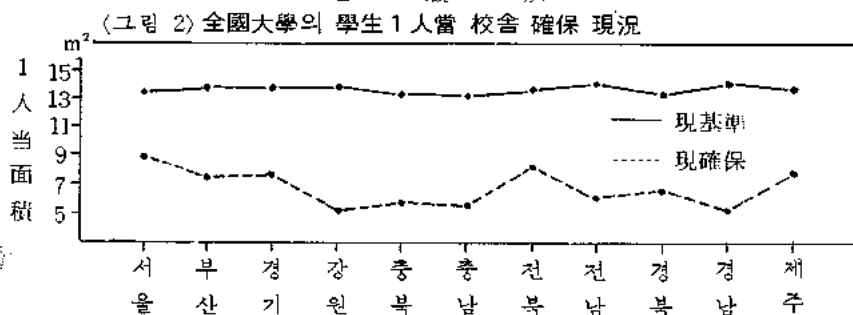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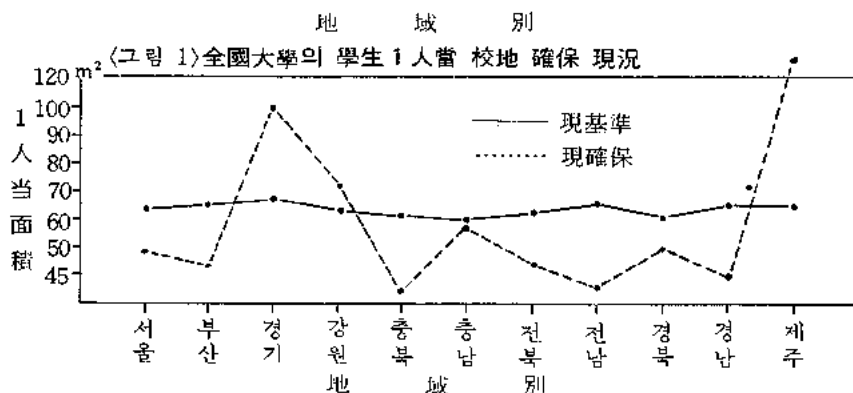
大學의 캠퍼스計劃이라고 하는 것은 市街地의 주택이나 사무소 건축 등과 같이 住居라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다든가 일을 위한 편리성만을 추구하 는 사무소 건축 등의 기능위주의 것만 을 목적으로 해서는 불충분한 것이다. 대학의 캠퍼스 안에는 뭔가 精神的인 요소가 깃들여 있어야 한다. 理想으로 넘치는 젊은이들의 전당으로서, 그리 고 낭만과 사색과 독서, 또한 浩然之 氣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많은 대학에서는 大學을 상 장하는 Memorial Tower를 아름답게 꾸며 精神的인 표상으로 삼았던 예가 많았다. 물론 大學의 캠퍼스에 表徵 的인 塔을 세우는 것만이 대학의 象 徵體는 아니다. 아름다운 湖水와 넓 은 잔디밭, 울창한 숲을 지니는 것도 상징적인 요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 는 것이다. (사진 1)

여유있는 大學生活, 사색하고 독서



사진 4: 延世大學校(中央道路型)



(표 3) 主要國의 學生 1人當 校地基準面積 比較 (單位: m²)

國 名	學 生 數	基準面積	學生 1人當 面積
韓 國	10,287	732,665	71.2
美 國	10,000	2,530,000	253.0
西 獨	8,000	1,500,000	188.0
소 련	10,000	1,600,000	160.0
캐 나 다	10,000	1,710,000	171.0

資料: 1) 한국은 현행 시설기준령에 의하여 추출된 1개 대학교의 예임.

2) UNESCO, planning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Facilities: Examples from National Practice (Paris: UNESCO, 1979), pp. 22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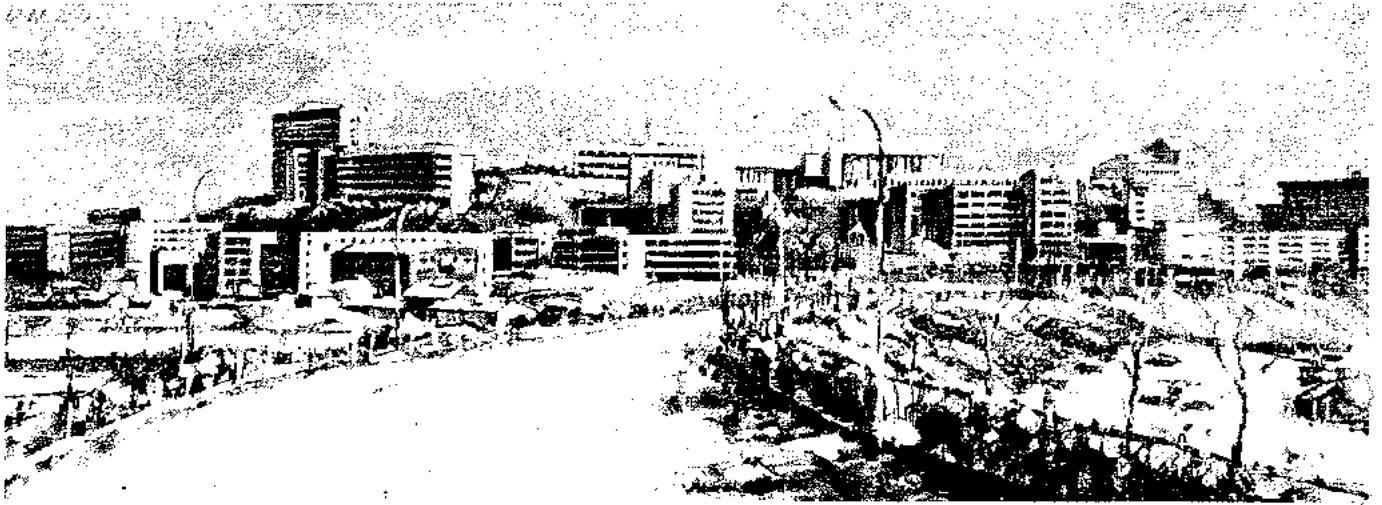


사진 5 : 漢陽大學校 (環狀道路型)

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아름다운 주위환경 속에서 추위를 간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듬뿍 담은, 소위 큰人材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의 啓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건지에서 볼 때 校地의 크기는, 충분하면서도 여유있는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 좋으며 상식적으로 보아 너무 넓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校地의 주위가 한산하던 것이 住宅地라도 들어서게 되면 校地를 확장하고 싶어도 그 이상의 교지확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처음 校地를 확보할 때에 가능하면 넓은 땅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을 상징(사진 2) 할 수 있

는 캠퍼스計劃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이것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구상이 필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세력의 흐름과 더불어 계획의 변경도 초래될 것이며 확장의 폭도 달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없는 캠퍼스計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러한 경우 매우 위험한 것이다.

대학의 캠퍼스는 각 대학에 따라 규모나 立地條件, 그리고 대학의 기능 등, 실로 그 내용이 千差萬別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캠퍼스計劃의 방법에 대한 수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캠퍼스 내의 각종 건물을 각기 유사한 機能別로 Grouping (사진 3) 하면서

배치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원시적인 것이며 기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 캠퍼스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게 하고, 대학을 구성하는 教授·職員들이나 학생들이 愛校心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 圖書館을 중심으로 배치한다든가, 중심적인 위치에다 광장을 마련한다든가, 中央道路型 (사진 4) 으로 구상을 한다든가, 캠퍼스 내외에 環狀道路 (사진 5) 등을 마련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배치나 양식을 통일화시켜 整然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더우기 대학 캠퍼스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여 경관의 아름다움이 젊은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영양소가 되어 勉學의 의욕을 돋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造景적인 면의 部分的인 세련미의 조성도 필요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가로수의 連續體라든가 庭形中庭의 조성, 대학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塔, 아케이드의 형성, 건물의 鰭보티 (사진 6), 連續棟의 構內橋梁, 駐車場, 보행자 전용 구역의 설정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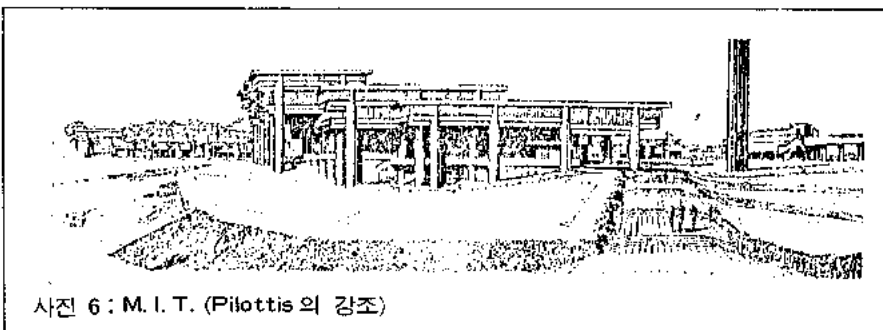


사진 6 : M. I. T. (Pilotis의 강조)

콘크리트構造物의 龜裂發生原因과 対策에 関한 研究〔I〕

吳 璇 敎—오선교건축설계사무소

A STUDY ON THE CAUSE AND PREVENTION OF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Oh, Sun Kyo—Oh Sun Kyo Architects & Engineers

I. 序 論

現代文明의 急速한 發展에 따라 建築材料는 無수히 多樣化되고 있다.

그러나 大部分의 構造物에서는 耐久, 耐火, 耐震 및 設計形態의 自由, 工事 및 有持管理費의 低廉 等の 理由에서 콘크리트를 使用하고 있다.

從前까지 콘크리트 構造物은 半永久的으로 생각해 왔으나 豫測하였는 豫測못하였는 間에 여러가지 原因에 依해 龜裂이 發生함으로써 建築物의 美觀損傷, 心的不安 뿐만 아니라 漏水 및 耐久性 低下에 따른 崩壞의 危險 등으로 龜裂은 크게 問題視 되고 있다.

이와 같은 龜裂은 콘크리트 構造物에 大小를 莫論하고 不可避한 現象이다.

그러므로, 本 論文은 이와같은 龜裂에 對하여 그 樣相을 分類하고 그 原因을 分析糾明하여, 또한 原則的으로 完全히 除去할 수는 없으나 可能한 範圍內에서 規模를 縮小하는 方法을 提示하고 일단 發生한 龜裂에 對하여는 許容範圍 以內이건 以上이건 間에 補修하고 補強하는 方法을 提示함으로써 콘크리트 構造物의 龜裂을 綜合하고 龜裂問題를 体系的으로 整理하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다.

II. 龜裂發生 樣相

建物에 發生하는 龜裂을 糾明하기는 대단히 복잡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龜裂을 크게 分類하면 Microcracking의 龜裂樣相(内部的인 龜裂)과 外形의으로 發生된 龜裂樣相으로 된다. 이와 같은 龜裂樣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Microcracking의인 樣相

콘크리트란 骨材粒子인 Particle을 接着材인 시멘트 풀(Cement paste) 卽, Matrix로 結合시킨 二相物質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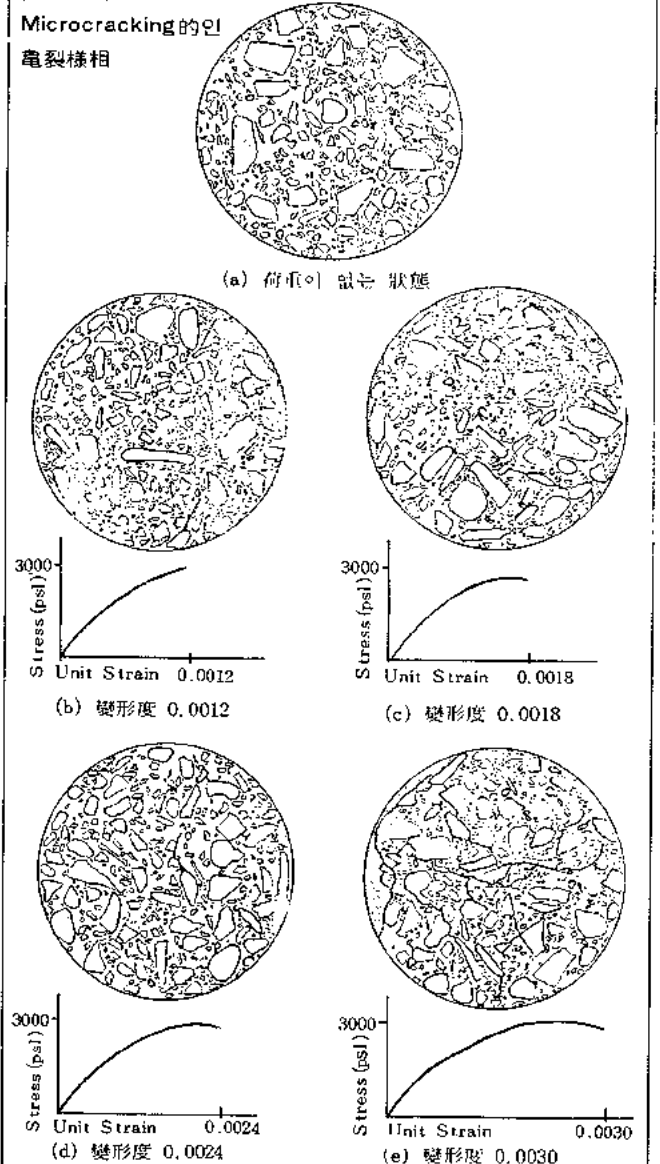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와 같은 콘크리트는 接着部에 應力이 作用하기 以前부터 微少하게나마 最少 응집력 및 公극으로 龜裂이 存在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龜裂은 構造物이 荷重을 받음에 따라 점차 進展되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公極이 Particle과 Matrix의 接着部에서부터 점차 심화되어 인접 龜裂과 연결 Matrix가 破壞되어 線狀을 이루다가 점차 인접 龜裂과 복잡한 망상을 이루다가

部分的 龜裂이 심화되어 결국 파괴되고 만다.

이와 같은 龜裂은 應力변형율곡선(Strain-stress curve)을 低下시키는 要因이 된다. <그림 1>은 $\phi 10\text{cm} \times 20\text{cm}$ 의 供試체를 壓縮強度 試驗하여 要求하는 變形値로 한 뒤 荷重을 除去하고 各各 조그마한 斷面으로 나누어 染色잉크로 染色한 후 현미경 및 X-Ray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다. (註 1)

<그림 1>

Microcracking의인
龜裂樣相



註 1) Hus. Thomas T. C, FLloyd O, Slate, Gerald M. Sturman and George Winter ; Microcracking of Plain Concrete and the shape of the Stress-Strain Curve, Journal of the A. C. I., Vol. 60, No. 14, 1965, pp. 209-224.

2. 外形의인 樣相

外形으로 感知할 수 있는 龜裂은 外部로부터 노출됨으로써 비로소 육안으로 感知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外部로 노출된 龜裂은 대단히 복잡한 형상을 나타내나 이를 分析하면 各 部位마다 一定한 特徵을 갖고, 全般的으로는 一定한 Pattern을 가진다.

이와 같은 龜裂의 特性 및 樣相은 다음과 같다.

(1) 一般의인 龜裂樣相

一般的으로 龜裂은 龜裂方向에 따라, 龜裂性狀에 따라 다음 <그림 2>, <그림 3>과 같이 分類된다. (註2, 3)

(2) 壁面의 龜裂樣相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직으로 存在하는 것으로 上部에 荷重이 수직으로 作用할 때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樣相을 나타낸다. (註4)

① 逆八字形 龜裂

이것은 건물의 外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龜裂로서 <그림 4>와 같이 개구부의 모퉁이에서 發生하고, 建物全体로 볼 때는 逆八字形을 이루고 있다.

이들 龜裂은 建物の 아래層일수록 또한 양단 부근일수록 龜裂幅이 커진다. 원인으로는 여름철에 施工한 경우에 많고 보통 施工後 약 6개월 後 쯤이면 보이기 始作한다.

이것은 建物の 상층과 하층의 콘크리트 전조수축의 차로 인해 생기는데 建物の 하층은 地반의 結속으로 인하여 전조수축이 적게 생기고, 상층은 자유상태이므로 큰 전조수축이 생겨서 <그림 4>와 같이 建物の 상층이 相對的으로 짧아지기 때문이다.

② 八字形 및 逆八字形 龜裂

<그림 5>에서와 같이 建物の 층수가 비교적 높을 경우에는 상층부분에는 地반면의 직사일광으로 因한 溫度膨脹으로 八字形 龜裂이 생기고 하층은 전조수축으로 인하여, 逆八字形 龜裂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四季節 溫度變化에 同伴하여 溫度가 상승할 때 일어난다. 逆八字形과 八字形의 原因이 중복되는 개구부에서 X字形 龜裂이 發生한다.

③ 縱方向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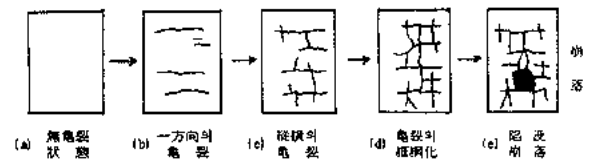
보와 같이 拘束이 큰 벽체에서는 주로 전조수축에 의한 <그림 6>과 같은 縱方向의 龜裂이 벽체의 中央 또는 기둥에 따라 發生하게 된다.

④ 不規則한 斜方向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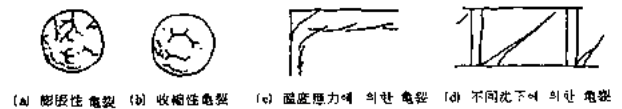
斜方向 龜裂은 얼핏 보면 전단력에 의한 균열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것은 콘크리트 타설시 일시적인 공사 중지에 일어나는 이음 부분이다. (<그림 7> 참조)

⑤ 部分的 八字形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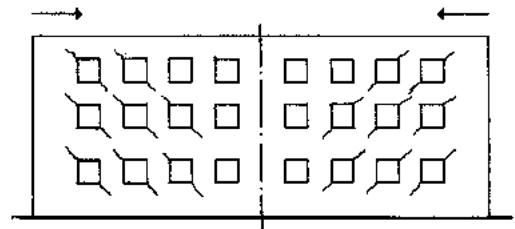
이것은 不同沈下의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一般的으로 압밀하고 均등한 地반에서의 地중응력 분포는 建物の 中央部가 沈下하여 八字形 龜裂을 形成하고 이를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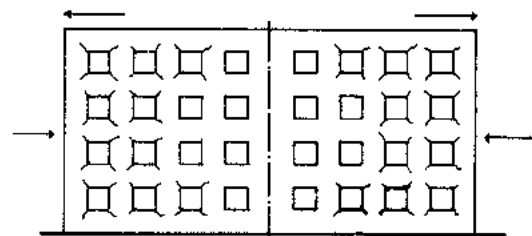
<그림 2> 龜裂方向에 따른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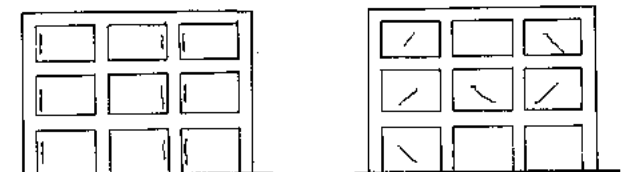
<그림 3> 龜裂性狀 따른 分類



<그림 4> 逆八字形 龜裂



<그림 5> 八字 및 逆八字形 龜裂



<그림 6> 縱方向 龜裂

<그림 7> 不規則한 斜方向 龜裂

註2) 文濟吉; 콘크리트橋의 補修補强工法(Ⅱ), 建築技術, 1974, 5, p. 58.

註3) 鄭日榮; 建築構造 設計에 關한 小考(3), 建築士, 1978, 1, p. 34.

註4) 鄭日榮; 龜裂發生으로 因한 構造物의 耐力低下에 關한 檢査(1), 建築士, 1981, 4, pp. 15~16.

分의 八字形 龜裂이라 한다. (〈그림 8〉 참조)

⑤ 部分的 斜方向 龜裂

建物 단부의 地반이 沈下하는 경우에는 〈그림 9〉와 같이 沈下한 方向에 斜方向 龜裂이 일어나고 逆으로 한 部分에서 地반이 치솟은 部分과 反對 方向으로 경사 龜裂이 생긴다.

⑦ 全面斜方向 龜裂(X線形 龜裂)

지진과 같이 水平力으로 困한 벽체의 龜裂은 建物벽체의 全体에 걸쳐서 斜方向 龜裂이 생기고 X字形 龜裂이 많다.

(3) Slab의 龜裂樣相

콘크리트 構造物의 수평으로 存在하며, 上部에서 荷重이 수직으로 作用할 때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樣相을 나타낸다.^(註5)

① 沈下龜裂

콘크리트 打設後에 생기는 콘크리트 沈降에 의한 것으로 〈그림 10〉과 같이 철근이 配置된 表面에 龜裂이 發生하게 됨으로 마치 바닥판 철근 配筋과 같은 樣相을 나타낸다.

② 縱 또는 橫方向 龜裂

콘크리트 乾燥收縮에 의한 龜裂로서 〈그림 10〉에서와 같이 Slab 장변 方向과 直角인 方向(단변 方向)으로 龜裂이 發生한다.

③ 隅角部 斜方向 龜裂

Slab 周邊 보에 의한 拘束이 클 때에는 〈그림 12〉와 같이 바닥, 모퉁이에 斜方向으로 收縮龜裂이 發生한다.

④ Slab 周邊 龜裂

Slab 의 처침으로 困하여 생기는 龜裂은 〈그림 13〉과 같이 Slab 上面에는 周邊에 沿하여 發生하고, Slab 下面은 中央部에 휜龜裂을 同伴하는 것이 普通이다.

(4) 보의 龜裂樣相

콘크리트 構造物이 수평으로 存在하며 上部에서 작은 보, 기둥, 벽 등 集中荷重이 作用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樣相을 나타낸다.^(註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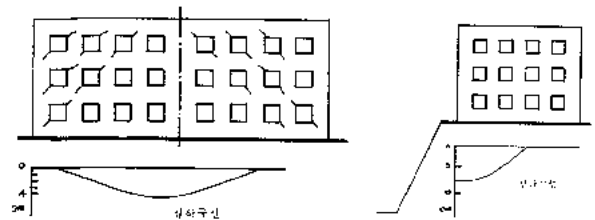
① 縱方向 龜裂(휜龜裂)

〈그림 14〉(a)와 같이 單純보에 單 - 集中荷重이 作用할 경우나, 혹은 그림 (b)와 같이 剪斷 Span比 a/d 의 값이 6以上인 두 개의 集中荷重이 作用할 경우는 보의 下部의 순수휨에 依하여 縱方向 龜裂이 發生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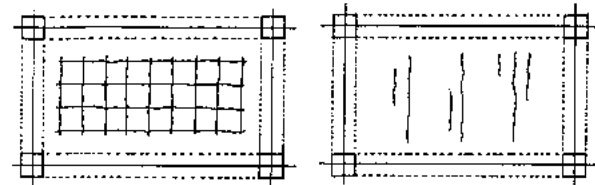
그러나 양단이 고정인 不靜定보의 경우는 〈그림 15〉와 같이 보의 下部뿐만 아니라 上部에도 縱方向 龜裂이 發生한다.

② 斜方向 龜裂(剪斷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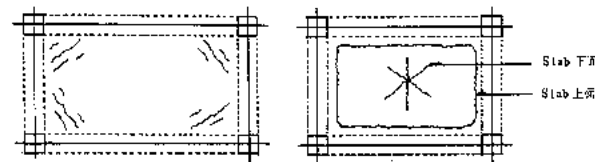
〈그림 16〉은 휜龜裂이 發生하기 前에 部材의 腹部에 獨立하여 發生하는 斜方向 龜裂로서 Web가 얇은 Prestressed Concrete의 I形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剪斷龜裂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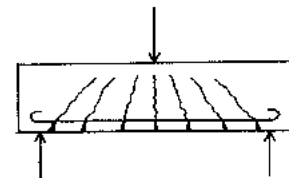
〈그림 8〉部分的 八字形 龜裂 〈그림 9〉部分的 斜方向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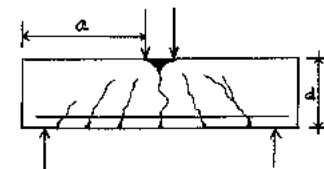
〈그림 10〉沈下龜裂 〈그림 11〉縱方向 또는 橫方向 龜裂



〈그림 12〉隅角部 斜方向 龜裂 〈그림 13〉Slab 周邊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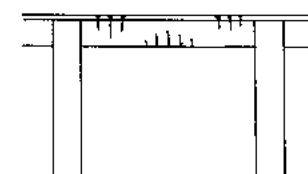


(a) 單純보에 中央集中荷重이 作用할 때



(b) 單純보 2 점에 集中하중이 作用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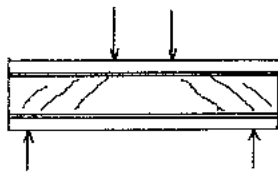
〈그림 14〉縱方向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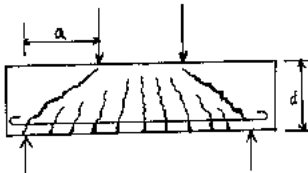
〈그림 15〉不靜定 보의 縱方向 龜裂

註5) 鄭日榮; 龜裂發生으로 困한 構造物의 耐力低下에 關한 檢討(1), 建築士, 1981, 4,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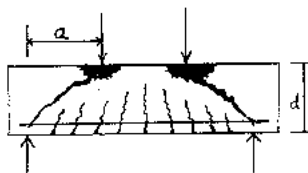
註6) 鄭日榮; 建築構造設計에 關한 小考(4), 建築士, 1978, 2, pp. 4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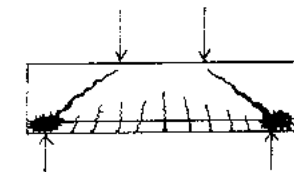
〈그림 16〉斜方向 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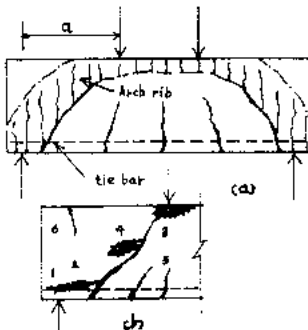
〈그림 17〉縱 및 斜方向 龜裂(斜引張 龜裂)



〈그림 18〉縱 및 斜方向 龜裂(剪斷壓縮龜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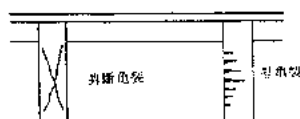


〈그림 19〉縱 및 斜方向 龜裂(剪斷引張龜裂)



- ① 引張鐵筋의 縱斷破壞
- ② 支點附近 콘크리트의 支壓破壞
- ③ Arch 頂點의 콘크리트 壓壞
- ④ Arch rib 部分콘크리트 壓壞
- ⑤ 引張鐵筋의 降伏에 의한 휨破壞
- ⑥ 2次의 引張 龜裂

〈그림 20〉縱 및 斜方向 龜裂(Deep Beam의 龜裂)



〈그림 21〉기둥의 龜裂

③ 縱 및 斜方向 龜裂(剪-剪斷龜裂 및 複合龜裂)

〈그림 17〉과 같이 a/d 의 값이 적어져서 $1 < a/d < 2.5$ 가 되면 剪斷龜裂이 發生하는 同時에 剪龜裂이 發生한다.

이와 같은 龜裂을 剪-剪斷龜裂 또는 斜張力龜裂(Diagonal tension crack)이라 한다.

斜張力龜裂의 延長上에 剪壓縮, 혹은 콘크리트의 壓壞에 의하여 部材가 耐力를 消失할 때에는 〈그림 18〉과 같이 剪斷壓縮龜裂(Shear-compression crack)이 發生한다. 또한 〈그림 19〉와 같이 Dowel action으로 인장철근의 附屬破壞가 發生한다. 이와같은 인장철근 부근의 隱微한 龜裂을 剪斷引張龜裂(Shear tension Crack)이라 한다.

a/d 의 값이 거의 1以下의 모를 Deep beam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은 普通보와는 조금씩 다른 龜裂構造를 나타내고 있다. Deep beam의 龜裂形態를 表示하면 〈그림 20〉(a)와 같이 載荷點과 支點을 連結하는 線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斜方向 龜裂이 發生하고 Arch 모양의 콘크리트를 引張鐵筋으로 맺은 Tied arch가 形成된다. 그리고 最終적으로 〈그림 20〉(b)의 가운데 番號로 表示된 바와 같이 ① 引張鐵筋의 縱斷破壞 ② 支點附近 콘크리트의 支壓破壞 ③ Arch頂點의 콘크리트의 壓壞 ④ Arch rib 部分 콘크리트의 壓壞 ⑤ 引張鐵筋의 降伏에 의한 휨破壞 등이 일어나서 部材가 破壞된다. 또한 支點上部 Arch rib部 콘크리트에 ⑥과 같은 2次的 引張龜裂이 發生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建築物의 一般的인 콘크리트 보는 4靜定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특히 柱면의 기둥, Slab 등과 영향으로 복잡한 樣相을 가진다. 이런 경우는 항상 柱위 상황과 연관하여 면밀한 調査가 必要하다.

그러나, 기본 Pattern은 단순보의 경우와 대동소이함으로 생각한다.

(5) 기둥의 龜裂樣相

콘크리트 構造物이 수직으로 存在하며, 正方形 혹은 長方形의 形態를 갖는 것으로 上部에서 모 혹은 지붕틀 등의 수직하중을 받는다. 기둥에 一般的으로 發生하는 龜裂樣相은 다음과 같다.(17)

① 橫方向龜裂(剪龜裂)

〈그림 21〉의 우측 기둥과 같이 發生하는 것으로 기둥에 剪應力이 크게 作用할 때 生기는 龜裂이다.

② 斜方向 龜裂(剪斷龜裂)

〈그림 21〉의 左側 기둥과 같이 發生하는 것으로 기둥에 地震으로 因하여 큰 剪斷力이 加해졌을 때 生기는 龜裂 Pattern이다.

③ 橫 및 斜方向龜裂(剪 및 剪斷龜裂)

〈그림 21〉의 左側과 右側이 複合하여 發生하는 樣相으로 (1), (2)의 複合된 原因에 因하여 發生한다.

會員設計作品

教育施設

成均館大學校 水原캠퍼스 學生會館

尹承量・卞 鎔—원도시건축연구소

祥明女師大圖書館

金琪碩—아름건축연구소

성보중고등학교

金 植—협동건축설계사무소

송전대학교 대전캠퍼스 제 4 교사

朴性圭・金武彦—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룹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本館

洪淳寅—대우건축연구소

SUNG KYUN KWAN UNIVERSITY SUWON CAMPUS STUDENT UNION

Yoon, Seung Joong・Byun, Yong—Archiban Architects Group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LIBRARY

Kim, Ki Sok—Aram Architect's Atelier

SUNG BO MIDDLE & HIGH SCHOOL

Kim, Whan—Hyub Dong Architects & Engineers

**LIBERAL ART AND HUMANITIES BUILDING DAE JEON CAMPUS
SOONG JUN UNIVERSITY**

Park, Sung Kyu・Kim, Moo En—Hana Group Architects & Engineers

**MAIN BUILDING FOR THE AGRICULTURAL COLLEGE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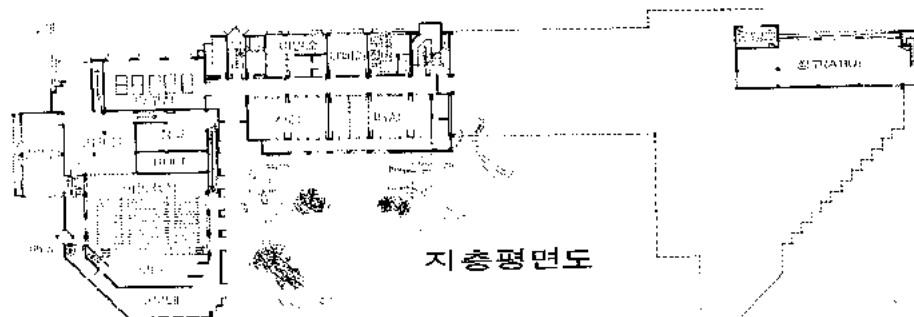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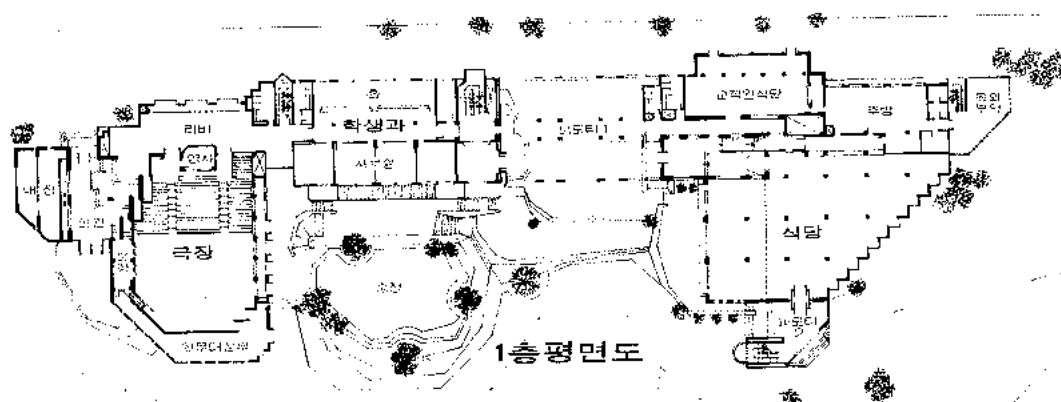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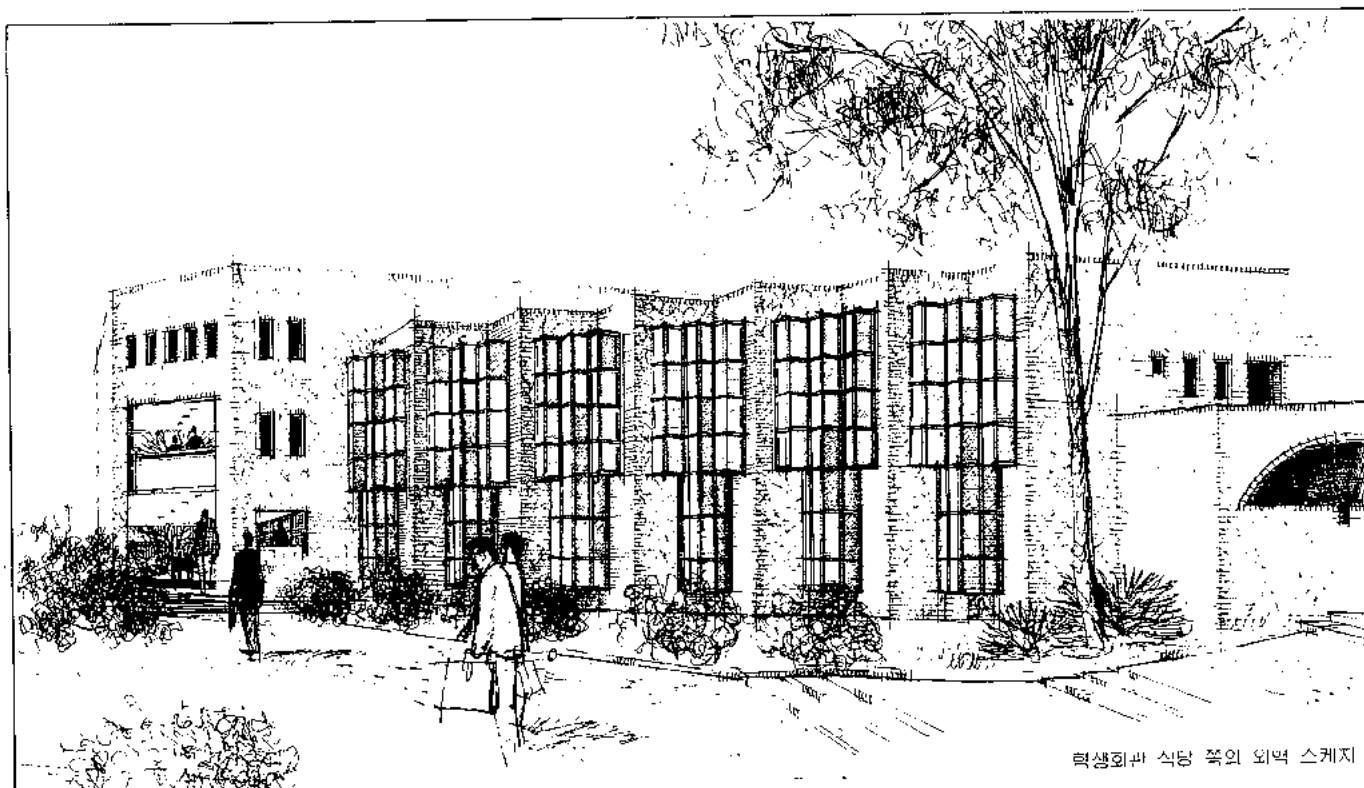
Hong, Soon In—Dae Woo Architect & Engineers

成均館大學校 水原캠퍼스 學生會館

尹 承 重 · 卞 鎔 — 원도시건축연구소 / 건축사

SUNG KYUN KWAN UNIVERSITY SUWON CAMPUS
STUDENT UNION

Yoon, Seung Joong · Byun, Yong — Archiban Architects Group / Architect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 280

캠퍼스총면적 : 88,568㎡

건 축 면 적 : 지하층 - 1,147㎡

1 층 - 2,957㎡

2 층 - 1,897㎡

3 층 - 1,65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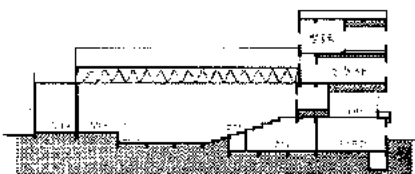
◆ 設計概要

성균관대학교 수원 자연과학 캠퍼스 사업시행 계획에 의하여 수원시 천천동에 2차 사업의 일환으로 농·이·약학과 함께 학생회관을 신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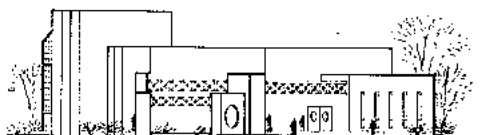
학생회관·3개대학·도서관과 함께 중앙광장을 형성토록 하였으며 본 건물에 필로티를 두어 시각적인 Opening을 만들과 동시에 Sunken Garden과 後庭을 연결하여 중앙광장에서 서측 녹지로 통하는 통로로 이용되도록 하였다.

본 건물은 극장·학생휴게시설(식당·오락실·다방)·학생판매시설(서클실·전시실·의무실·학생과)로 구성되었으며 지하층은 Sunken Garden으로 연결되고 학생휴게시설(매점·이발소·우체국)을 두었다.

극장부분은 500석 수용의 다목적 공연장으로서 캠퍼스 내의 각종 대·중집회, 공연을 위한 시설이며 여러 종류의 집회나 공연에 적합하도록 가변적인 설계로 하였다. 특히 객석 측면 출구를 통하여 일시에 Sunken Garden으로 나갈 수 있어 공연의 실외 연장이 되도록 하였다.



극장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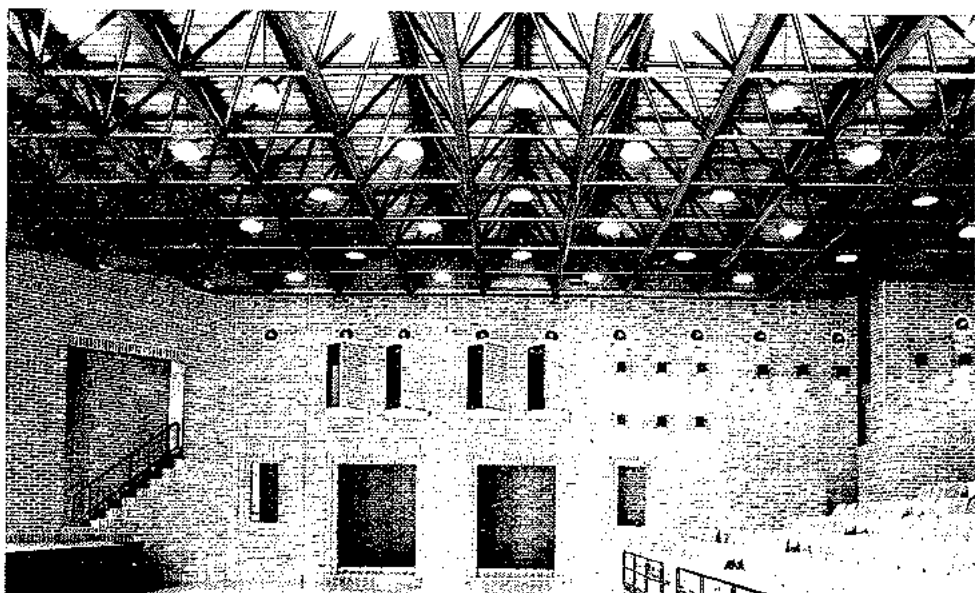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남측입면도



학생회관 Main Hall 실내
학생회관 식당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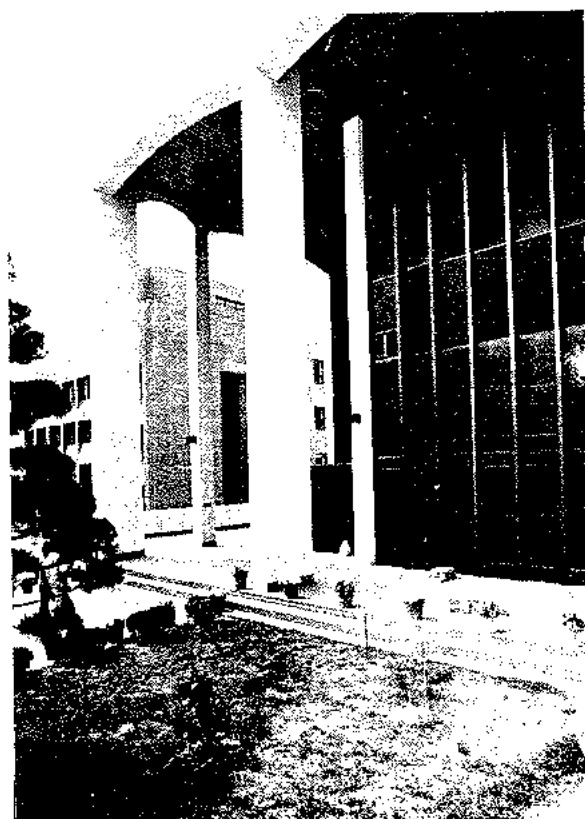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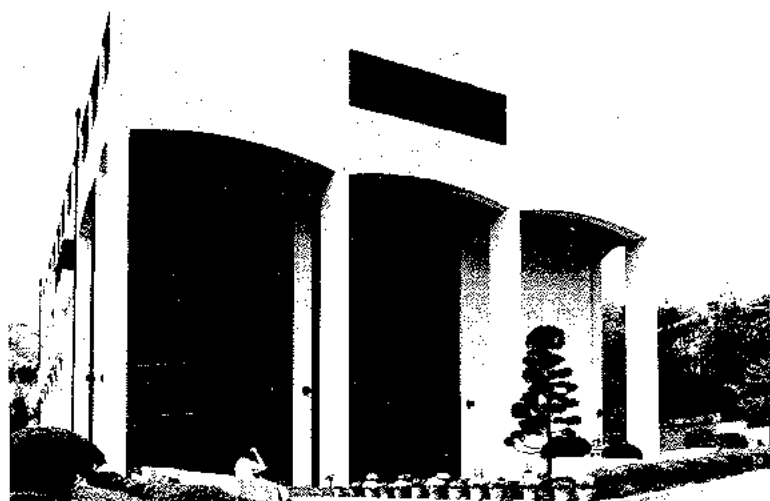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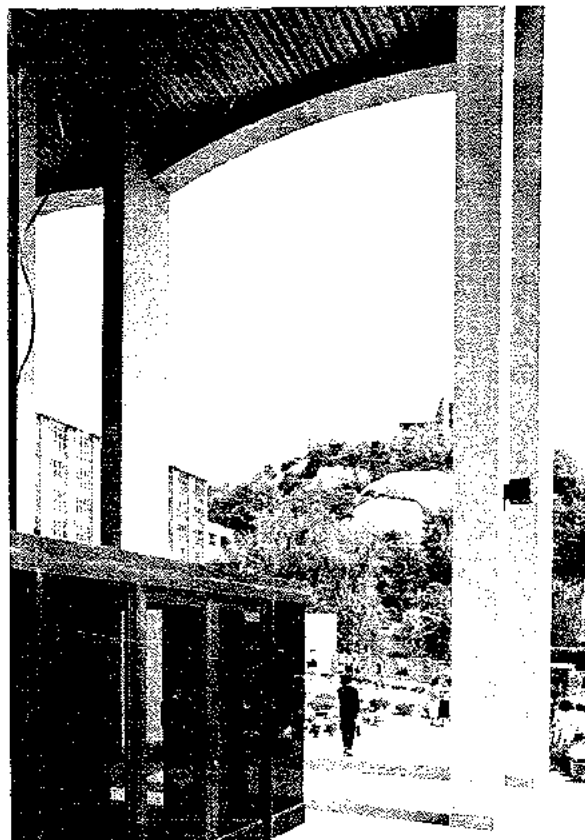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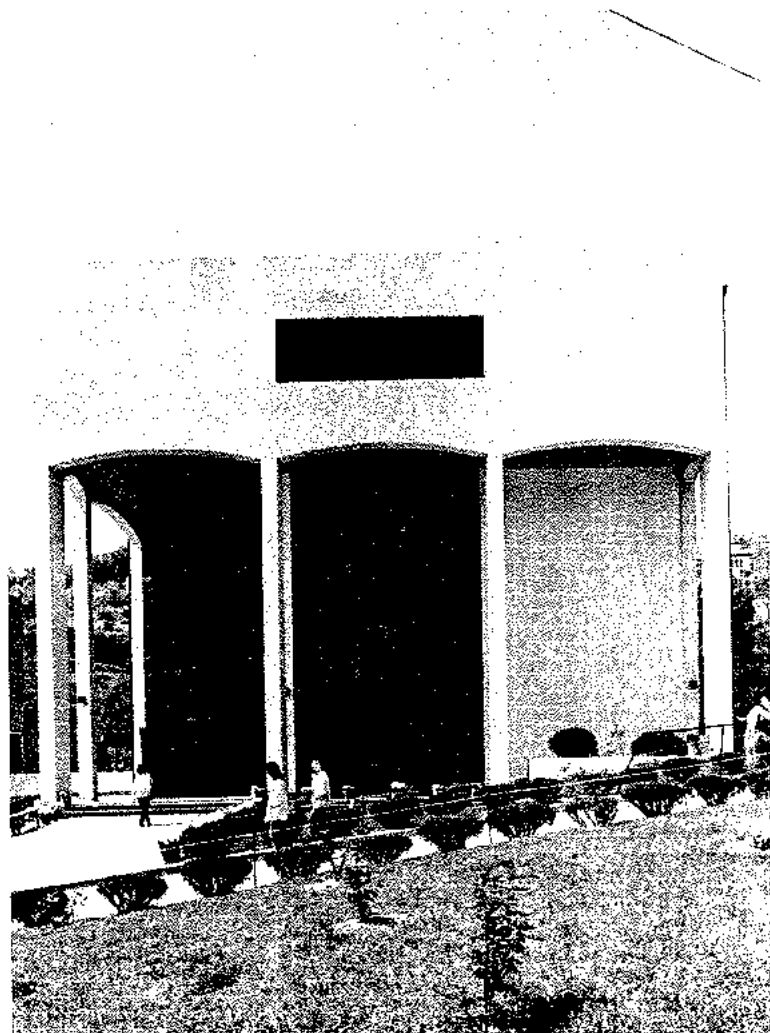


祥明女師大 圖書館

金 琪 碩 — 아람건축연구소 / 건축사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LIBRARY

Kim, Ki Sok — Aram Architect's Atelier /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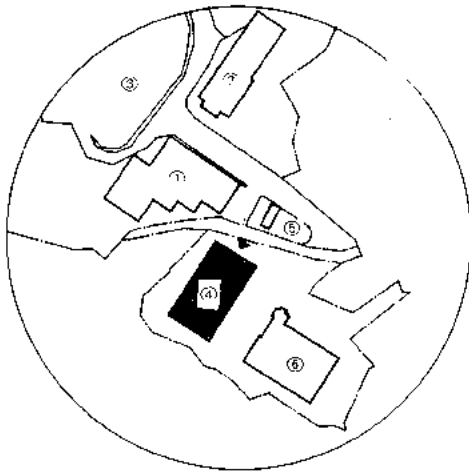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홍지동

건축면적 : 672.84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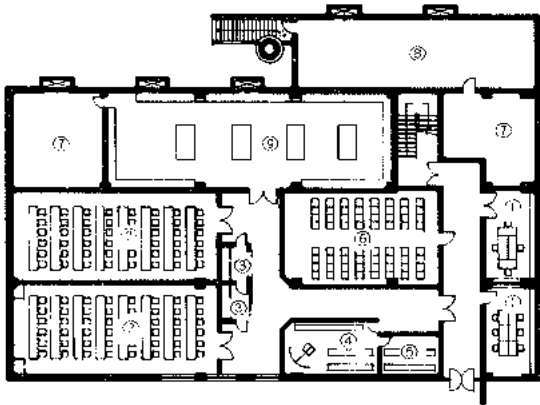
연면적 : 3,209.06 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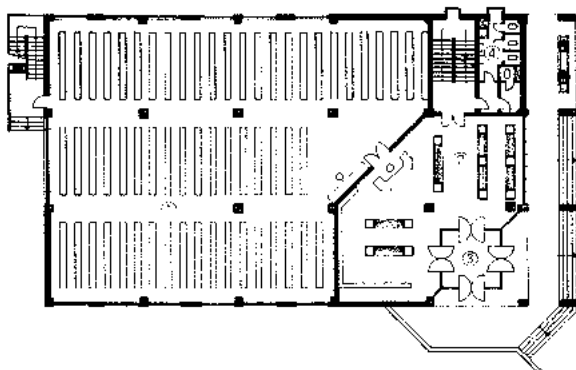
외벽 마감 : 백색 본타일



배치도



지하층평면도



1층평면도

● 배치도

- ① - 학술회관
- ② - 본관
- ③ - 운동장
- ④ - 도서관
- ⑤ - 수위실
- ⑥ - 교사동

● 지하층 평면도

- ① - 사무실
- ② - 어학실습실
- ③ - 조장실
- ④ - 기재실
- ⑤ - 기술실
- ⑥ - 시청각교육실
- ⑦ - 장고
- ⑧ - 보일러실

⑨ - 실습실

● 1층 평면도

- ① - 서고
- ② - 휴게실
- ③ - 전실
- ④ - 화장실

● 3층 평면도

- ① - 열람실
- ② - 서고
- ③ - 휴게실
- ④ - 화장실

● 4층 평면도

- ① - 민속박물관
- ② - 교수실
- ③ - 세미나실
- ④ -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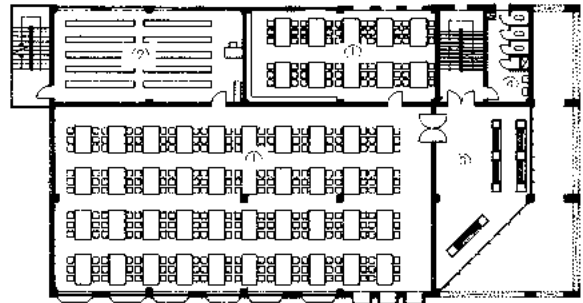
⑤ - 대학원사무실

⑥ - 대학원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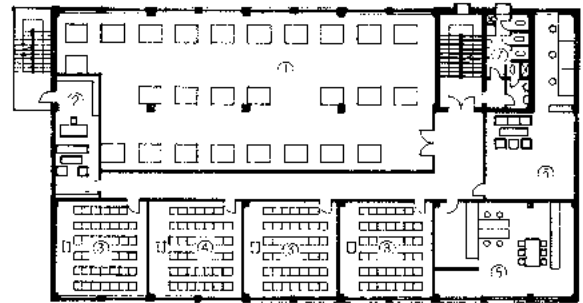
⑦ - 화장실

● 일반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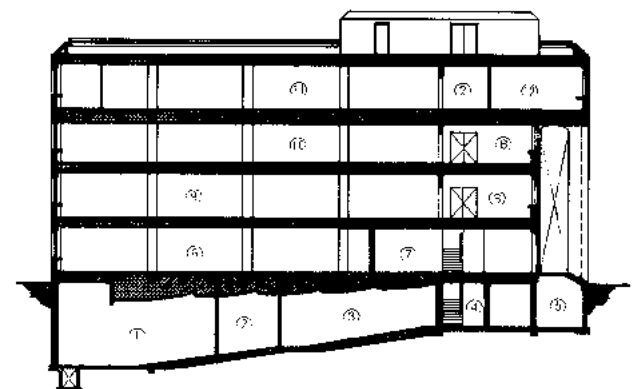
- ① - 어학실습실
- ② - 복도
- ③ - 시청각교육실
- ④ - 계단실
- ⑤ - 전기실
- ⑥ - 서고
- ⑦ - 대기실로비
- ⑧ - 휴게실
- ⑨ - 참고열람실
- ⑩ - 일반열람실
- ⑪ - 민속전시실
- ⑫ - 대학원사무실



3층평면도



4층평면도



일반단면도

성보중고등학교

金 桓 — 협동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



SUNG BO MIDDLE & HIGH SCHOOL

Kim, Whan — Hyub Dong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 設計概要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면적 : 54,704㎡

면적 및 규모 :

중 학 교 — 6,600㎡ (지하 1 층 · 지상 4 층)

고등학교 — 7,054㎡ (지하 2 층 · 지상 4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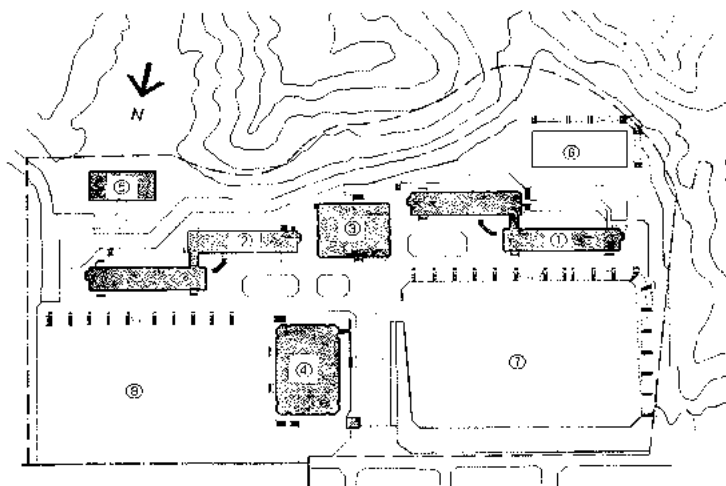
도 서 관 — 5,983㎡ (지하 1 층 · 지상 5 층)

구 조 : RC조

기본배치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상호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주진입로와 도서관 · 강당 (체육관) 을 중심축으로 하여 교사와 운동시설의 학교 기본단위를 분리 배치하였다.

정문으로부터 생활관까지 19m의 고저차가 있는 지형때문에 건물과 운동시설의 레벨에 변화를 주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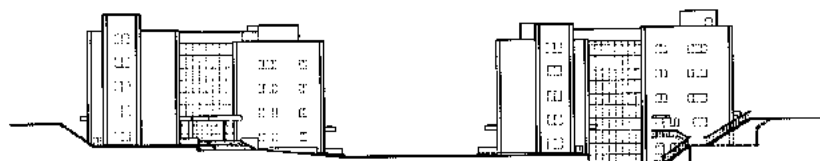
교사는 이상적인 교실배치인 남향 · 편복도 형식을 취하면서 단일 매스에 의한 외형상의 단조로움과 중압감을 피하여 남북 2개의 매스로 분동 배치하였다. 또한 두 건물을 램프로 연결하여 건물 상호간에 고저차이를 둠으로써 지형의 변화에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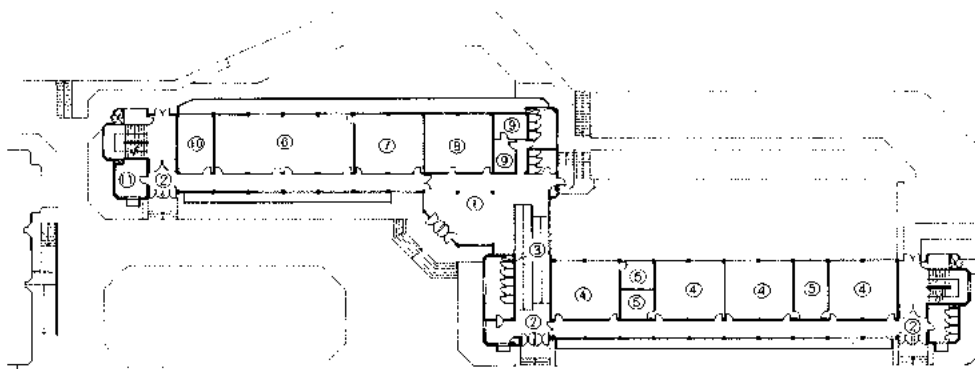
● 배치도

- ① - 고등학교
- ② - 중학교
- ③ - 도서관
- ④ - 체육관, 강당
- ⑤ - 생활관
- ⑥ - 수영장
- ⑦ - 고등학교운동장
- ⑧ - 생활관운동장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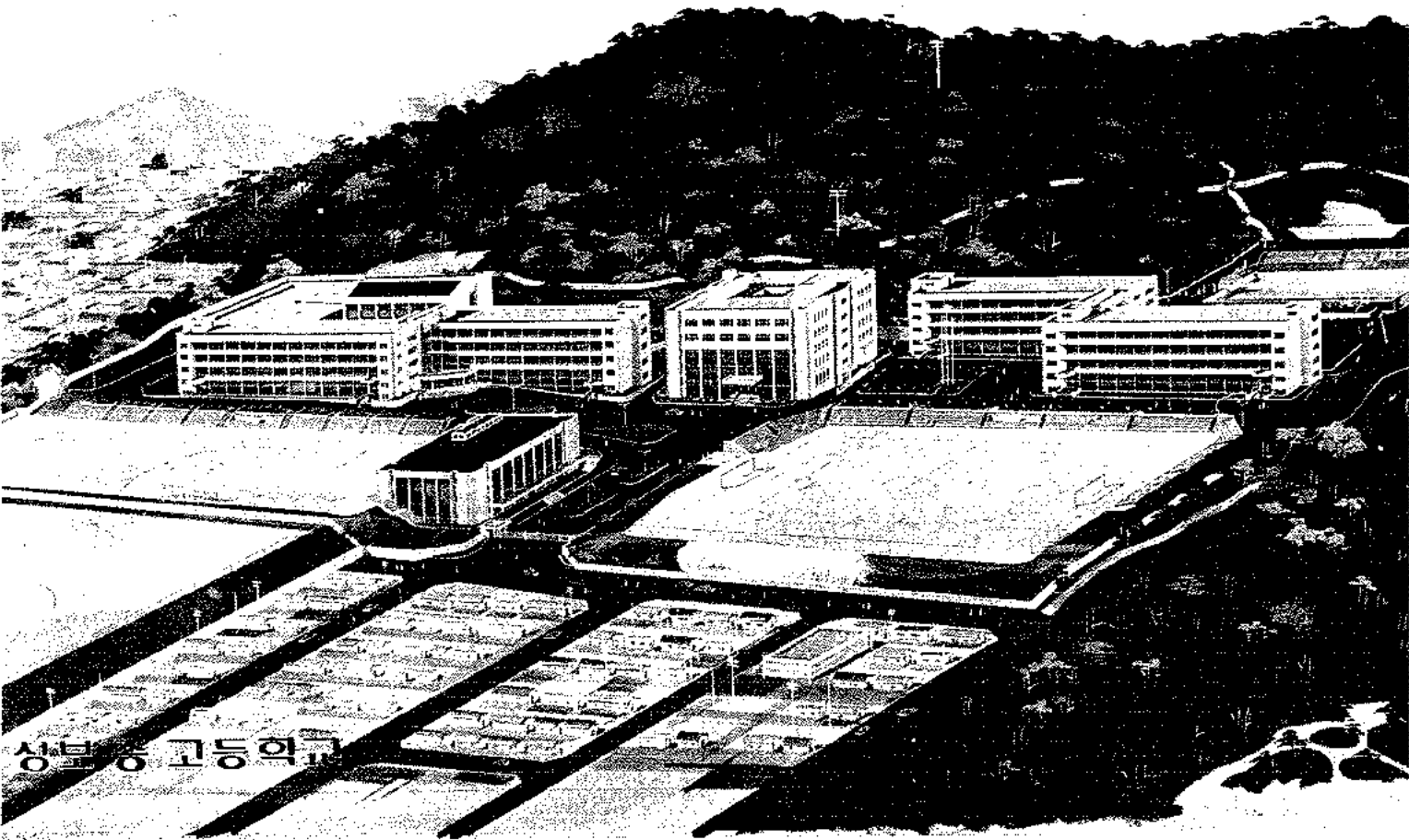
서측면도



1층평면도

● 1층평면도

- ① - 중앙현관
- ② - 물반현관
- ③ - 램프
- ④ - 특별교실
- ⑤ - 준비실
- ⑥ - 교무실
- ⑦ - 교장실
- ⑧ - 서무실
- ⑨ - 숙직실
- ⑩ - 양호실
- ⑪ -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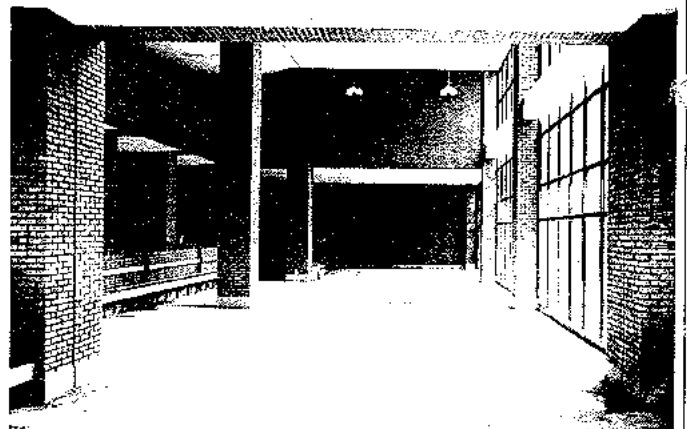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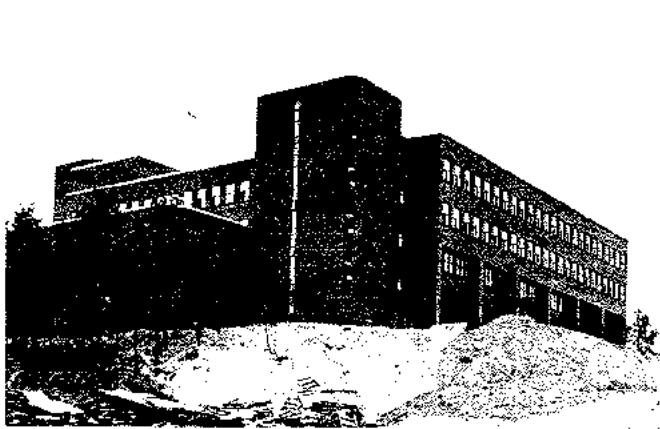
송전대학교 대전캠퍼스 제4교사

朴性圭·金武彦—건축설계사무소 하나그룹/건축사



LIBERAL ART AND HUMANITIES BUILDING
DAE JEON CAMPUS SOONG JUN UNIVERSITY

Park, Sung Kyu · Kim, Moo En—Hana Group Architects & Engineers / Architect



소재지: 대전시 중구 오정동 133번지
대지면적: 5,237㎡
건축면적: 1,952㎡
연면적: 7,48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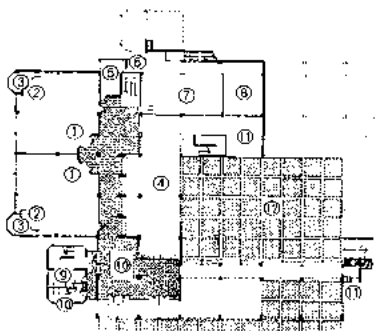
◆設計概要

본 건물을 계획함에 있어 대학의 성
장에 따른 대학 교육시설의 융통성을
설계의 기본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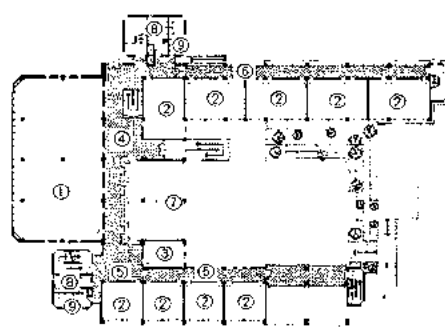
경사진 남향에 위치한 본 건물은 교
문에서 대지를 편향하였을 때 정면성
을 요구함으로 볼륨의 적절한 배치
를 유도하였으며, 고저차가 주는 대지의
리듬감을 최대한으로 살린 개방된 광
장을 마련, 사상과 정서가 서로 상통
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개성을 신
장시키고 다양한 행동성을 부각시키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3.6m 모듈을

을 근간으로, 강의실 및 교수연구실 등
을 미래지향적인 신축성을 갖도록 하
였으며 대학시설의 보편적 기능인 교
육이라는 차원을 넘어 대학의 내부광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비실
효면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휴게시설 및 홀·복도 등의 면적비중
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레벨차를 두어
다양한 변화성을 추구하기에 노력하였
다.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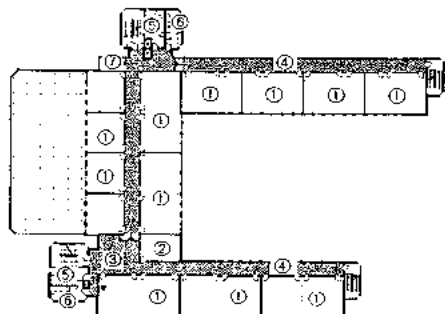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 ①-계단교실
 - ②-교 단
 - ③-준비실
 - ④-휴게실
 - ⑤-숙적실
 - ⑥-세면장
 - ⑦-보일러실
 - ⑧-전기실
 - ⑨-남자화장실
 - ⑩-여자화장실
 - ⑪-청 고
 - ⑫-옥외광장
- 2층평면도
 - ①-자유열람실
 - ②-교 실
 - ③-여학생휴게실
 - ④-현관 HALL
 - ⑤-HALL
 - ⑥-복 도
 - ⑦-휴게실상부
 - ⑧-남자화장실
 - ⑨-여자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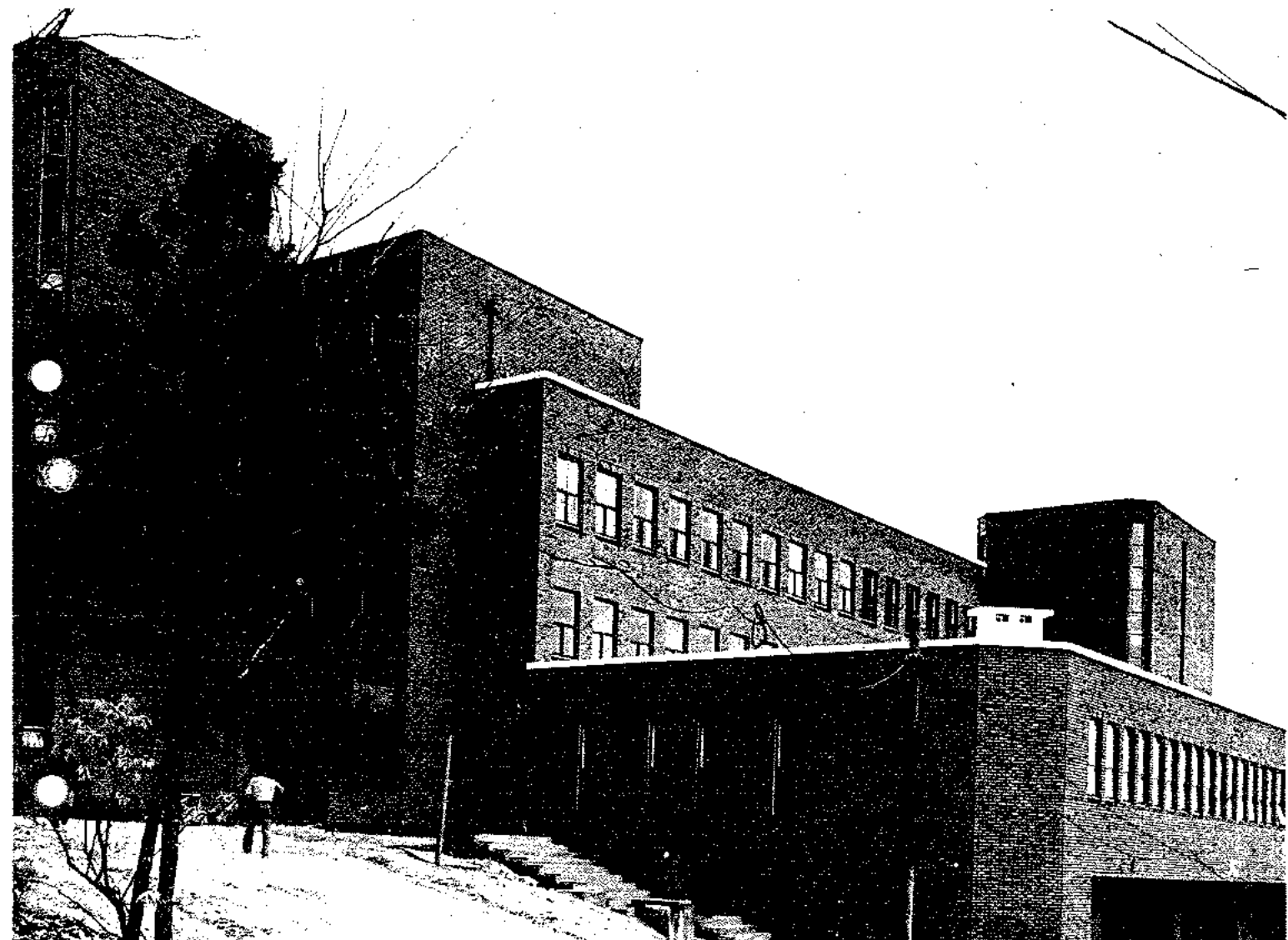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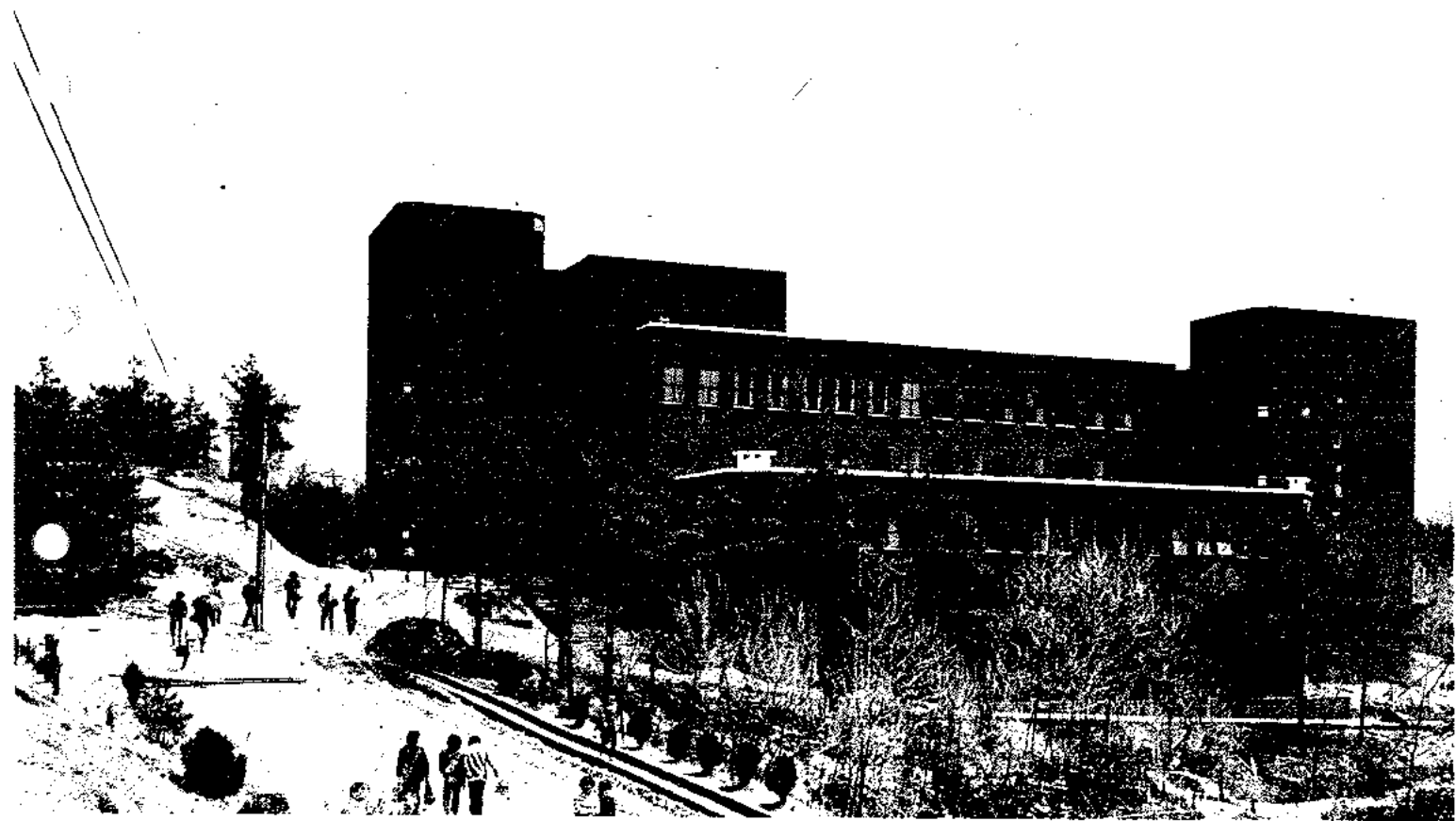


단면도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①-피로티부품
 - ②-강의실
 - ③-교수연구실
 - ④-교 실
 - ⑤-기계실
- 기준층 평면도
 - ①-교 실
 - ②-휴게실
 - ③-HALL
 - ④-복 도
 - ⑤-남자화장실
 - ⑥-여자화장실
 - ⑦-교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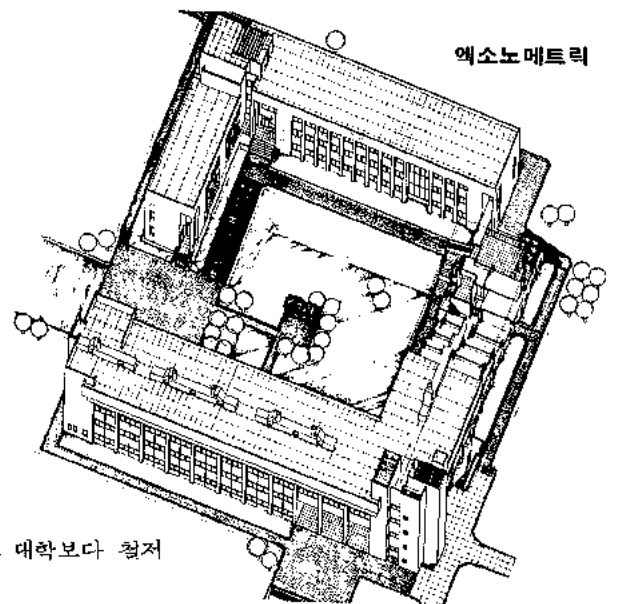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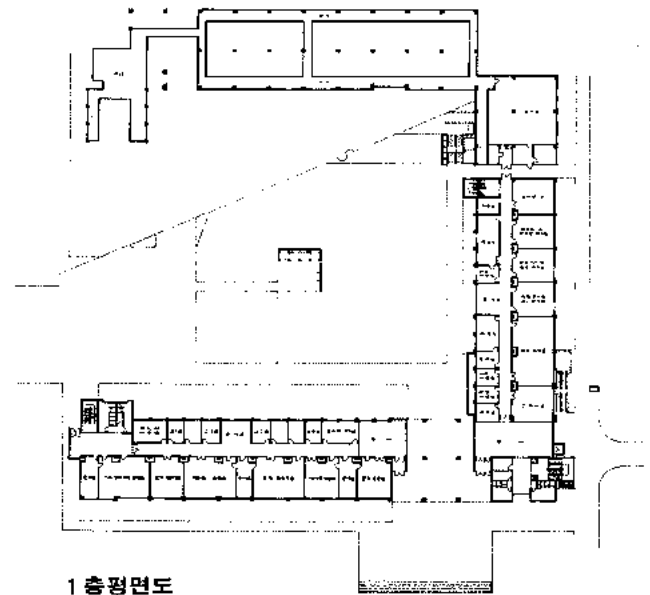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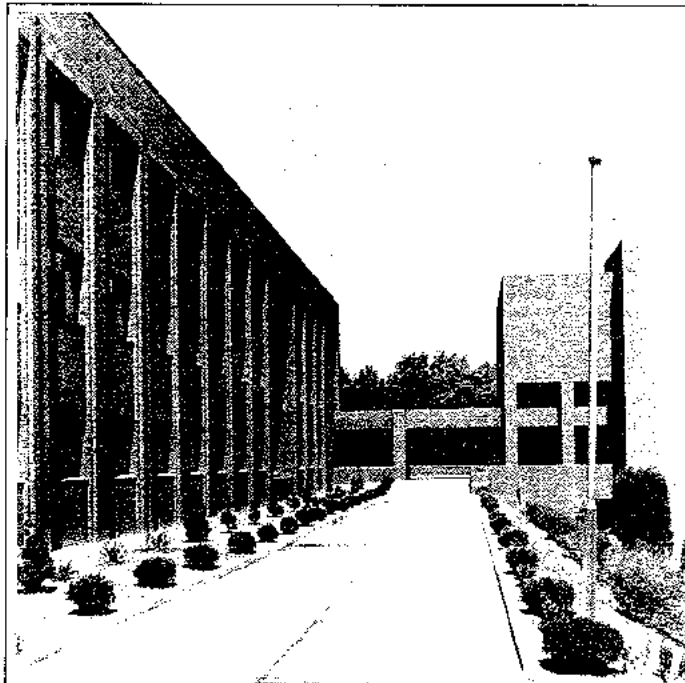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本館

洪 淳 寅—대우건축연구소 / 건축사

MAIN BUILDING FOR THE AGRICULTURAL COLLEGE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Hong, Soon In—Dae Woo Architect & Engineers / Architect



◆ 設計概要

충북대학교 종합 캠퍼스 마스터 플랜의 기본방향에 따라 배치되고 디자인 된 본 농과대학 본관은 2차에 걸쳐 공사 집행되었다.

처음의 설계의도는 가운데의 커다란 중정이 인공적인 조원 분위기 위주గా 아닌, 농과대학의 옥외 교육장으로서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어 자연스러운 언덕의 흐름으로 처리코자 하였다. 전후 2동 모두 변색벽돌 외장으로 하였으며 발색 알루미늄 창과 16mm 패어 글라스 사용, 또한 외벽의 철저한 단

열재 사용은 다른 어느 대학보다 철저하게 처리되었다.

중정의 공간처리에서 간혹 소홀히 되기 쉬운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면 절반을 완전 개방하였고 다른 2면은 오버 브릿지 또는 필로티 등으로 시퀀스의 흐름을 의식한 디자인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각층의 로비가 성격없이 반복되는 지루함을 덜어보고자 전시 벽면의 제공과 더불어 컬러의 변화, 홀통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보았다.

소재지: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48번지
연면적: 16,756.09㎡

규모: 지하 1층 ·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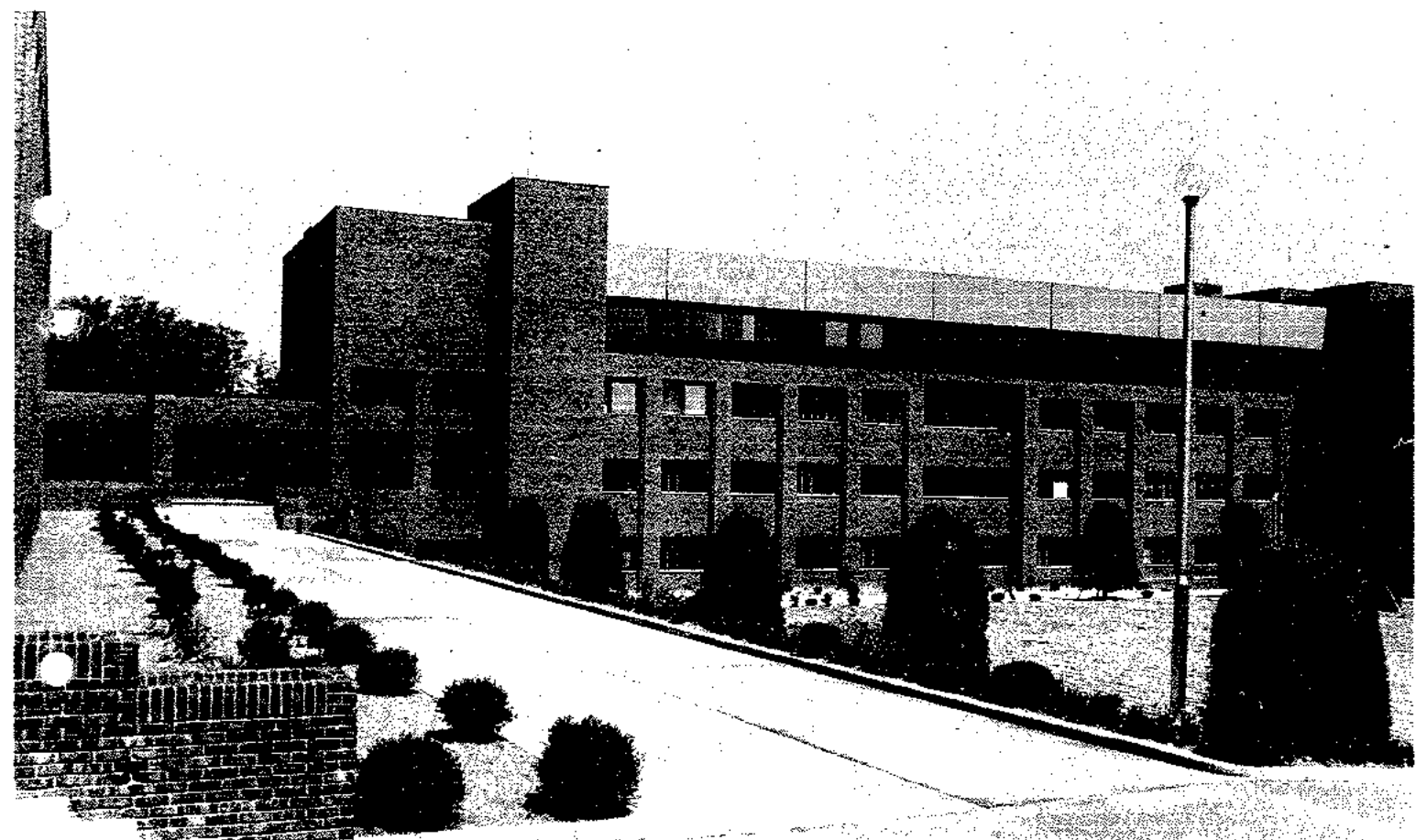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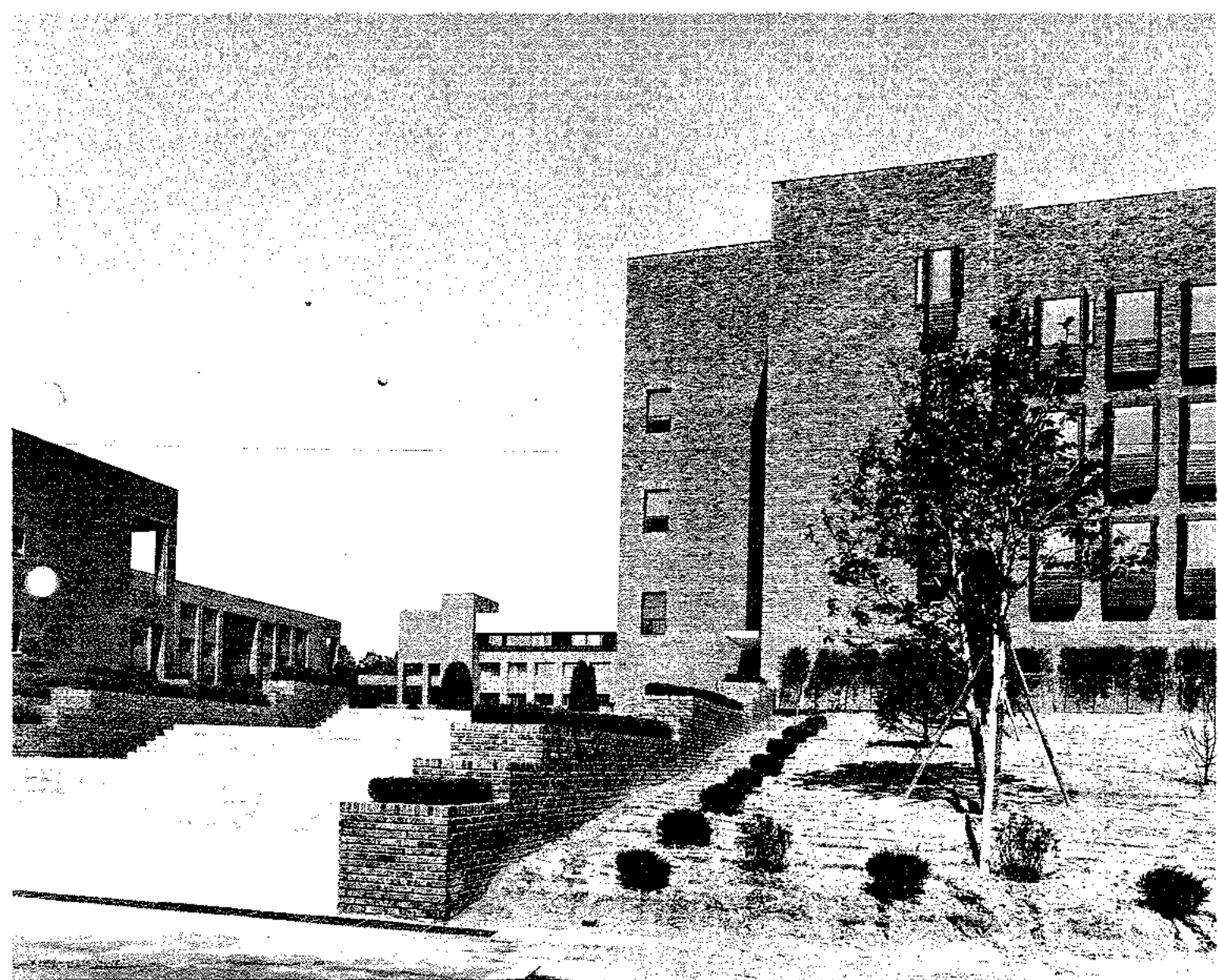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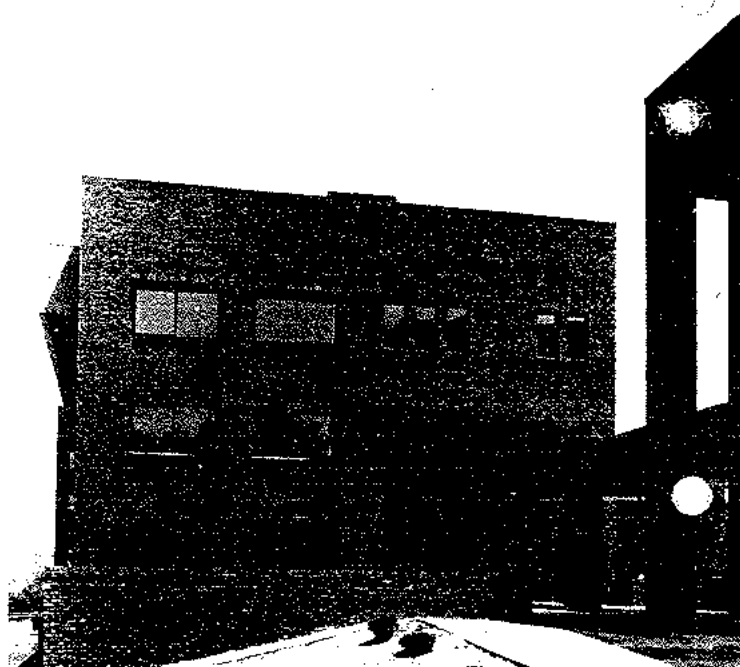
건축설계: 홍순인 · 이상용 · 김영철 · 안찬영 · 이성희

기계설비: 삼신설비 · 유동열 · 황원택

전기설계: 유신전기 · 이충환 · 김영국

구조설계: 신종순 · 정광량





連載:

韓國建築의 絶對特殊性에 関한 考察〔Ⅲ〕

朴 彦 坤 — 弘益大學校工科大学建築學科 副敎授

金 東 旭 — 京畿大學建築工學科 專任講師

A STUDY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CHITECTURE

Park, Eon Kon — Hong Ik University Prof.

Kim, Dong Uk — Kyung Ki University Instructor

3. 架構와 空間

1

建築의 가장 중요한 特性이 空間에 있다는 認識은 비교적 近代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오랜동안 建築은 樣式위주로 理解되어 왔었으며 특히 19세기의 西洋建築은 樣式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近代의 空間에 대한 認識은 바로 19세기의 樣式主義의 극복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겠다.

空間에 대한 認識이 19세기말이나 近代의 所産이라 하더라도 建築이 空間藝術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古代로부터 自明한 사실이었다.

韓國建築에 대하여도 樣式的 理解에서 벗어나 空間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어 空間藝術로서의 韓國建築에 대한 共感이 깊어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그리고 韓國建築은 空間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깊은 藝術性을 간직하여 時代를 초월한 藝術的 感動을 現代에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다.

韓國建築의 空間은 自然과 一体가 되어 造化를 이룬 外部空間에서 그 特性을 찾을 수 있듯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꾸준히 形成되어 온 内部空間속에서도 그 特性을 발견할 수 있다. 木造建築物로 일관해 온 우리나라 建築은 木構造가 갖는 構造的制約 속에서

도 獨特한 内部空間의 意匠을 전개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의 内部空間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窓戶라든가 바닥면의 材質 등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木構造形成의 중심이 되는 架構일 것이다. 따라서 内部空間은 柱・樑構造에 의한 架構에 크게 구속되고 架構와 一体가 된 가운데 形成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建築의 内部空間은 이러한 架構에 의한 制約 속에서도 특성있는 意匠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同一한 木造建築을 지어 온 中國이나 日本 建築의 内部空間과도 서로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2

기둥과 보는 木造建築의 架構를 구성하는 가장 基本이 되는 部材이다. 内部空間은 이 두가지 부재의 복합적인 結構에 따라 결정된다.

기둥과 보는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기둥은 平柱를 기본으로 高柱・退柱 등이 있고 보는 대들보(大樑)・중보(宗樑)・퇴보(退樑)가 있으며 중보 위로 매공이 용마루 밑을 지지하게 둔다. 그림 1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架構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데 内部空間은 架

構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가”는 가장 간단한 架構로 기둥(平柱)에 보(宗樑)와 대공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民家에서 寺刹의 小建物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히 이용된 架構手法이다. 이때의 斷面方向 柱間(스팬)은 대개 8尺~10尺 前後가 된다.

“나”는 平柱 사이에 高柱 하나를 넣은 것으로 前面의 平柱와 高柱가 한스팬을 이루며, 高柱는 後面의 平柱와 退樑으로 연결되는데 그 길이는 대개 半스팬이 된다. 空間의 중심은 高柱의 앞 부분이 되며 退樑으로 연결된 부분은 從的인 空間이 된다.

“다”는 空間이 보다 확대된 것이다. 두개의 高柱가 大樑으로 연결되고 그 위에 宗樑이 놓이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前後에 平柱가 退樑으로 연결된다. 보통 大樑은 退樑의 2배가 되므로 高柱에 의해 구성되는 主空間과 退樑과 平柱에 의해 구성되는 從空間이 明快하게 구분된다.

“라”와 “마”는 각각 “다”의 架構形式의 變形으로 볼 수 있는데 “라”는 보통 지붕이 重簷으로 된 경우로 多包系 建物에 많이 이용된다. “마”는 특별히 건물의 바닥면적이 큰 景福宮 慶會樓와 같은 건물에 이용되는 架構形式으로 高柱를 중앙의 2本 외에 前後로 하나씩 추가하고 각각 平柱를 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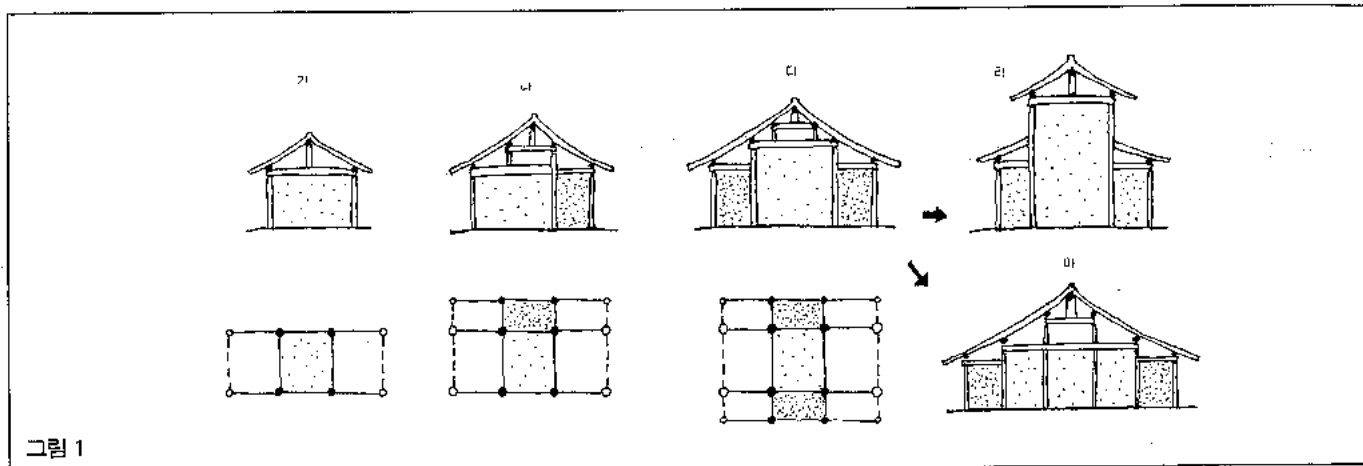


그림 1

그러나 현존하는 우리나라의建築物 중 이렇게 측면이 5間이 넘는 건물은 많지 않고 궁전이나 寺刹의 重要建物도 “나”나 “다”의 架構形態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内部空間은 깊이가 적고 옆 방향으로 길어지는 공간을 이루게 된다.

3

内部空間을 꾸미는 意匠은 건물의 양식에 따라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즉 柱心包系·多包系 또는 익공系 건물은 그 内部空間의 意匠도 서로 다른 것이다.

우선 柱心包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柱心包란 栱包가 기둥 위에만 놓이는 것으로 三國時代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온 가장 오래된 건축양식이다. 柱心包系 건물은 대개 天障을 두지 않고 内部의 架構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많다. 그 때문에 部材 하나하나에 대한 장식이 가하여진다.

柱心包系 건물은 고려末期에 지어진 것 중에 健實한 構體와 풍부한 意匠을 갖춘 예가 몇棟 남아 있는데 그 중 1308년에 지어진 修德寺 大雄殿(그림 2)을 예로 内部空間의 意匠性을 살펴 보기로 한다. 修德寺 大雄殿은 두개의 高柱와 前後의 平柱, 大樑·宗樑과 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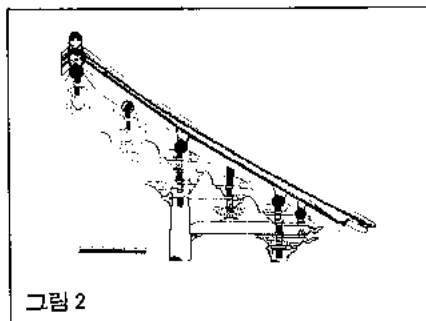


그림 2

樑으로 구성되었다. 기둥들은 모두 강한 배흘림이 되어 있어 그 자체 剛勁의 인 성격을 나타낸다. 대들보는 部材의 斷面이 소위 향아리型으로 되어 부재 뒷면보다 아랫면이 좁게 되었으며 양 측면은 향아리의 옆과 같이 밀으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특이한 曲線을 이룬다. 이것은 他部材에 비하여 특히 굽은 대들보를 밑에서 바라볼 때 실제로 다 가늘게 보이게 하여 다른 部材들과 調和를 이루도록 꾸민 결과이다. 대들보 외에 중보·퇴보 등도 유사한 斷面形으로 架工되었다.

기둥과 보 사이, 보와 보 사이에는 하중을 전달해 주기 위한 小部材들, 즉 소로와 첨차들이 끼어 있는데 특히 밑에서 올려다 보이는 첨차들은 원래의 첨차의 형태를 벗어나 曲線의 꽃무늬와 같은 장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보아지라고 부른다. 대공(台工)은 보아지와 같은 모양의 曲線장식으로 되어 있어 화반대공(花盤台工)이라고 부르며 그 위에 다시 栱包 모양을 한 포대공(包台工)이 놓여 있다.

이 건물에서 특히 주목되는 部材는 우미량(牛尾樑)이다. 이것은 상하의 위치가 서로 다른, 도리와 도리를 연결하는 부재이므로 자연히 曲材로 된다. 다른 部材가 모두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架構部의 가장 윗 부분에 특이한 曲線을 이룬 曲材가 등장하여 내부공간을 경쾌하게 구성해 준다. 더우기 건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部材들은 비교적 장식이 적은데 비하여 内部空間을 구성하는 部材들은 하나 하나에 세심한 曲線장식을 가하여 외부와는 다른 화려하고 장식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4

内部空間의 독특한 意匠은 多包系建物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多包란 栱包가 기둥 위에도 놓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측 柱間에도 栱包가 짜여지는 것으로 고려末期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초의 宮殿이나 城門 등 권위전축에 널리 이용된 양식이다.

多包系建物は 柱心包와 같이 架構를 노출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天障으로 지붕 밑의 架構를 가리고 있다. 또한 栱包가 많으므로 内部空間에서 栱包는 외장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둥과 보로 구성되는 기본 가구는 柱心包와 동일하며 架構의 形態에 空間이 구축되어 架構와 空間이 一体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多包系建物の 하나인 觀音寺 大雄殿(그림 3)은 多包系建物の 内部空間에서 栱包가 갖는 意匠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이 건물은 전·후 두개의 平柱와 하나의 宗樑으로 구성된 매우 간단한 架構로 구성되어 있으며 宗樑의 바로 위에 天障이 덮여 内部空間 자체는 매우 간단한 형태이다. 그러나 栱包가 柱間에도 들쭉 짜여져 있고 각 栱包는 외부보다 내부가 出目 수가 더 많은 것이 특색이다. 栱包는 外部가 3出目이고 内部가 4出目이며 内部의 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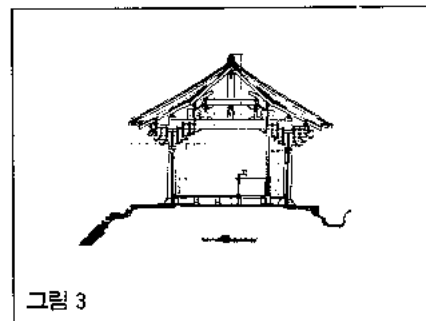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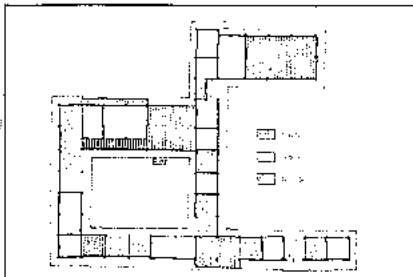


그림 4

차 끝은 소위 雲工形으로 섬세히 장식되어 있다. 따라서 内部空間은 간결한 架構에 4出目으로 장식된 拱包의 압도적인 장식으로 가득찬 느낌을 준다.

多包系建物 중에는 지붕이 重層으로 구성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은 高柱로 구성된 높은 空間과 외곽의 平柱와 退樑으로 구성된 낮은 空間과의 강한 主從關係를 이룬다. 忠南 부여 군에 있는 無量寺 極樂殿이 그 좋은 예이다. 외곽의 平柱 위의 拱包와 高柱 위의 拱包가 重層으로 구성되고 雲工形의 처마 끝의 장식이 중첩되어 화려한 内部空間을 형성한다.

柱心包建物과 多包建物은 두 形式이 모두 架構의 형태가 바로 内部空間을 형성하므로 空間의 意匠은 각 部材를 섬세하게 장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내부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5

익공이나 민도리는 궁전의 부속건물이나 上流住宅 중에 많이 사용된 공포 형식인데 이 제종의 건물은 内部空間의 意匠性보다는 건물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색있는 空間을 구성하였다.

住居建築은 생활과 가장 밀접된 기능적인 内部空間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능상의 요구에 응하면서 우리나라의 住居建築은 독특한 内部空間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朝鮮時代의 上流住宅일 것이다.

住宅建築은 바로 그것이 士大夫들의 大邸宅일지라도 架構는 매우 단순한 柱樑構造이며 高柱는 사용하지 않고 平柱와 退柱를 사용할 따름이다. 拱包역시 宮殿이나 寺刹建築과는 달라서 익공이나 민도리로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住宅의 内部空間은 낮고 간소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架構上的 특색은, 各室의 기능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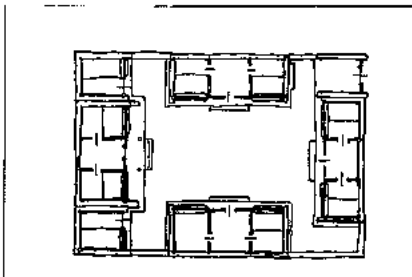


그림 5

양해 집에 따라 退間이 발달하여 内部空間이 前後의 退間으로 확대되어 진 것이다. 그러나 住宅의 空間도 架構에 制約되어 前後半間씩의 退間 이상의 空間의 확대는 없었으며 各室은 배개의 기둥과 보·도리에 의해 규정지어 졌다.

한편 조선시대의 士大夫들은 사회적인 特權과 富를 축적하면서 대규모의 邸宅을 지었고 住宅의 기능도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따라서 内部空間도 여기에 대응하게 되었는데 그 대응은 各室이 橫的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構造的으로 前後方向으로는 1間の 退間밖에 확장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자연히 左右로 室이 연속적으로 확장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例示한 安東의 養眞堂의 平面(그림 4)은 우리나라의 上流住宅이 各室이 橫的으로 전개·확산되면서 독특한 内部空間과 外部空間을 형성하였음을 잘 나타내 준다. 특히 各室은 마루방과 온돌·부엌과 같이 기능의 차이에 따라 内部空間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内部空間이 나란히 붙어 있으므로 해서 같은 지붕 아래 길게 연결된 各室의 단조로움을 깨고 다양한 空間構成을 가능케 한다. 즉 마루방은 천장이 없이 마루도리나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온돌방은 대개 天障을 낮게 하여 마루방과 대조적인 공간을 이룬다. 부엌은 흙바닥을 그대로 이용하므로 바닥이 다른 방보다 낮아지고 위에는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作業空間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내부공간들이 橫的으로 길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架構에 구속받는 空間을 기능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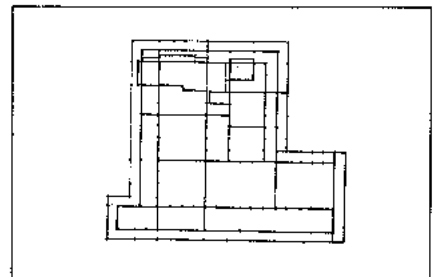


그림 6

住宅의 空間的 특성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木造建物로 일관해 온 中國이나 日本의 住宅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특한 空間구성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中國은 國土가 광대한 만큼 지역에 따라 建物の 성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한마디로 그 특성을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文献을 통하여 北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住宅의 특성을 알아보면 독립된 몇개의 건물이 소위 四合院形式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四合院이란 네개의 건물이 東西南北의 위치에 각각 독립되어 배치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림 5는 北京市内の 典型的인 한 예이다.

한편 日本의 木造建築은 약 10세기부터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몇개의 空間을 결합시키는 問題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즉 寺刹의 内陣과 外陣空間을 同一建物 내에서 구조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15세기 경에는 上流住宅은 架構에서 空間이 분리되어 内部空間은 架構의 제약없이 自由로 여러개의 방으로 나뉘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은 16세기에 지어진 한 邸宅의 일부인데 거대한 지붕 아래에 수많은 방들이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고 各室은 고정된 벽체가 없는 이동가능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内部空間은 쉽게 分割과 統合이 이루어 진다.

中國과 日本住宅의 空間構成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住宅의 内部空間은 架構에 크게 拘束되면서도 기능적인 요구에 맞추어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갔다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各室이 연속하여 橫的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이것이 직각으로 굽어지면서 外部空間을 형성해 갔던 것이다.

A STUDY ON THE PLANNING AND DESIGN FOR RURAL COMMUNITIES

Ryu, Eung kyo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Jeon Bug University

차 례

1. 서 론
2. 농촌 취락구조개선의 현황
3. 농촌 취락구조개선의 문제점
4. 농촌 취락계획의 방향 설정
5. 취락 집촌화의 모델 설정
6. 결 론

1. 서 론

1960년대 이후 정부의 농촌 근대화 정책과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7년의 성과로 1976년 이전까지는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지붕개량, 진입로 및 안길확장, 하수구설치 등 일차 기초환경의 정비를 마침으로써 營農의 기계화나 문화주택 복지시설의 확충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농촌 취락의 구조개선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정부에서는 느끼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事業의 필요성을 첫째, 고도의 경제성장과 새마을사업의 성과로 경지정리, 전기 등 농업생산 기반이 마무리 되어가고 영농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둘째, 도시지역의 인구밀도 대책의 일환으로 郡農간의 격차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새마을운동에 헌신 참여한 농촌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농가의 소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어 불편 없는 의식생활에 부합되는 문화주택 수요가 절실한 바 도시지역에서 향유되는 문화주택, 보건위생, 복지시설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 두고 농촌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필요성에서 영농의 기계화가 촉진되어 취락 구조개선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점을 감안하여 협동과 기업영농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계획적 취락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農村住宅의 구조개선이나 마을 안길확장 등의 소극적 취락구조개선에 불과했고, 적극적인 취락의 개선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郡農간의 격차없는 생활환경조성으로 복지시설 등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으나 고속도로와 철도변의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의 개량신축에 총력을 쏟아왔고 지금도 이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을뿐 總合的이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미시적이며 즉흥적인 현실 미봉책으로서의 계획에 그치고 충분히 건축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설계자의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점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점에 대한 관계당국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全北道의 金堤郡을 택하여 이미 농경지의 정리가 되어 있으나 새마을사업에 의한 농촌주택의 개량이라던가 취락의 구조개선이 본격적으로 향해 지지 아니한 扶梁面을 선정하여 앞으로의 농촌취락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농촌 聚落構造개선의 現況

(1) 농촌 취락규모 현황

우리나라의 自然部落 수는 '80년 말 현재 64,390개에 행정구역상의 洞과

면의 수가 34,892개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매 洞, 면에 약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의 동을 제외하면 3~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法定洞리는 1,675개 면로 자연부락 6,436을 고려하면 1개 法定面에 자연부락 수는 약 4개의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를 13개군으로 나누면 평균 495부락이 됨을 알 수 있다.

전북의 郡 전체 가구수가 315,776호인 점을 감안할 때 1개 군당 평균 24,290호로 1개 자연부락 호수는 49호가 되어 약 50호 규모로 되어 있다.

農家 호수만으로 고려하면 225,980호로 평균 17,383호가 되어 1개 자연부락당 농가호수는 35호가 되었다.

자연부락 내의 호수별 분포를 보면 全北의 경우에 있어서 30호미만이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51~100호 규모로 48.2%이다. 30~100호까지는 82%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재의 자연부락은 평균 40~60호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규모를 감안할 때 농촌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集村化를 통한 취락의 재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농촌 聚落構造개선 실적

우리나라는 그동안 취락구조개선사업을 76년에 10개 마을(227棟) 77년에 247개 마을(5,265棟) 78년에 822개 마을(18,234棟) 79년에 1,023개 마을(15,904棟) 80년에 645개 마을(8,120棟) 81년에 200개 마을(2,685棟)을 개선하여 총 2,947개 마을에 50,434棟의 주택을 개선했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취락구조 개선사업실적

구 분	실적(마을)	사업비(백만원)
계	200	4,000
경 기	30	600
강 원	20	400
충 북	16	320
충 남	24	480
전 북	18	360
전 남	30	600
경 북	30	600
경 남	26	520
제 주	6	120

표 1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40억원의 투자를 통해서 200개 마을의 취락구조개선을 시도했고 전북은 그 중에서 18개 마을에 3억 6천만원을 투입한 바 있다.

(3) 추진방법과 대상마을 선정

내무부 지침을 보면 첫째, 취락구조개선사업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의 능력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무리없이 추진하고 둘째, 주택개량과 병행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하되 재개발 등 낭비가 없도록 마을 여건과 장래전망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며 셋째, 마을 내 주택개량 대상棟數는 농촌인구의 감소추세를 고려해서 개량주택이 空家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상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水害常習地, 山沙汰위험지 또는 低地帶에 위치한 마을과 水没地區 工団조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취락의 移築이 필요한 지역이며, 고속도로, 철도 등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어 일상생활과 營農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全北의 80년말의 농촌주택개량 路線別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변 4개 마을, 全州와 群山간 도로인 번영로변 13개 마을, 南原線 6개 마을, 金清線 4개 마을, 철도변 4개 마을, 관광사적지 2개 마을 国道邊 23개 마을, 기타 7개 마을로 모두 63개 마을을 路邊위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수립절차

지역여건과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마다 특색있게 꾸미어 地適性의 改善類型과 改善指標을 설

정하고, 문화복지농촌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시적인 안목에서 마을의 장기 발전적인 전망을 고려하여 인구·생산유통·기계영농·소득신장 추세 등을 감안,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마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관제당국은 제시하고 있다.

가. 마을계획수립

1) 시장·군수 및 읍·면장과 마을지도자는 전문기술기관 등과 約定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마을 住民總意로 계획안을 확정한다.

2)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마을의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 住民同意를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군의 종합검토

1) 시·군 促進協議會에 附屬, 도지별 특성개발 타당성,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다.

2) 現地測量 및 마을 改善計劃圖를 작성한다.

3) 마을별 개선계획을 종합하여 道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다. 道の 계획보완확정

토지이용계획의 보완(토지의 입지별 기능 및 석함성 검토)과 마을 개선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달하는 계획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농촌 취락구조개선의 문제점

(1) 계획수립상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의 수립은 마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관계 전문인의 자문을 받도록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함에 있어서 約定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공무원과 지도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전시효과 위주의 계획이었지 관계 전문인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기본계획에 앞서서 面單位計劃과 都單位計劃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합적 계획이 결여되어 해당 부락 자체만을 가지고 미시적으로 立案하였기 때문에 부락 상호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희박하게 되어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2) 대상마을 선정상의 문제점

군단위의 계획 속에서 면단위 계획으로 내려감으로써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변과 철도변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행하였기 때문에, 새마을 취락구조개선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계몽적 측면에서는 다소 큰 파급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都市型住宅의 건립이라는 외형적 화려함과 농민 자신들의 부채만을 안겨주었을뿐, 보다 근본적인 협동농업과 생활의 질의 변화를 부여하는데는 너무나도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취락설계상의 문제점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対象마을 선정부터가 중요한 도로변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마을 전체의 方向性이 차를 타고 바라보기 좋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平地로 밀어 格子型 도로를 만들어 버렸으며,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의 제고를 가져올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취락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나 農路가 미비하여 農作業은 물론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으며, 農家空地와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그 규모도 다양함으로 이용율이 낮고 비합리적이다.

또한 주거생활 부분과 생산작업 부분의 混在, 상·하수도, 배수처리 시설의 不備, 공원·녹지·운동·오락 시설의 不備 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4. 농촌 취락계획의 방향정립

(1) 마을자체의 소규모 계획에서 탈피하고 군에서는 군단위의 취락계획을 수립하여 單位마을 現況圖와 부락간의 거리를 圖示化한 후, 상호 유기적인 연합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순서를 정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지금까지는 전시효과와 농민제동에 치중하여 도로변과 철도변 위주로 선정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하여 전체적이고 總合的인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 最適立地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3) 취락의 적정규모와 배치패턴을 地帶別로 연구한 학계와 기술 전문가

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취락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확립과 이에 따른 財政的 지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4) 格F型 공간구조와 획일적인 공간구조로, 농촌의 전통적인 道路패턴을 무시한 계획에서 탈피, 앞으로는 多核空間構造의 패턴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통일 속에 변화와 조화를 부여하는 계획을 해야 한다. 즉 주택배치의 형태는 통일하더라도 단위주택 평면의 규모에서 변화를 주고 외관에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6) 모든 주택의 배치는 그 지역의 기상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시도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인위적으로 외형적인 배치패턴상 方位를 도외시하고 동남향 이외의 방향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7) 규격화는 저렴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획일화에서 오는 물 개성을 노출시킴으로 사전에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8) 단위주택 상호간의 계획은 분산보다는 결함을 위주로 해야 한다.

(9) 취락의 중심은 마을회관도 좋지만 휴식공간이나 역사성이 있는 건물, 오랜 수명의 당산나무 등을 중심으로 부담없이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0) 탁아소나 유치원을 둘 수 있도록 취락의 규모를 확대하고 協業農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1) 自然地形을 절토하거나 파괴하지 말고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며, 진입로는 필수로 짧아야 한다. 그리고 간선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12) 平野部에서 취락의 북서쪽이나 북쪽·동북쪽은 방풍림을 조성하여 背山臨水의 전통적 취락배치 思想과 부합하도록 하여 아늑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13) 취락의 형성은 5戶~10戶가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초단위로 하여 50戶가 기본단위가 되는 부락으로 하고, 50戶가 4~6개 모여서 중심을 형성하는 200戶~300戶 규모로 계획되되, 될 수 있는 한 부락의 戶數規

模를 集村化하는 방향으로 계획, 토지이용의 高度化를 기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제고시키며 기계화와 協業化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규모로 해야 한다.

(14) 현 단계에서는 5戶~10戶 단위의 공동축사를 사용케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마을 전체의 共同畜舍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한다.

(15) 담장의 설계에서는 그 높이를 낮게 처리하고 사이 사이에 自然樹를 식재되되 유실수를 심도록 한다.

(16) 어린이 놀이터는 인공적 요소를 가급적 피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17) 부락에 따라서는 協業化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을 설치하게 되어 주택의 대지는 그리 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협업화가 되고 공동작업장이 생겨서 딸을 작업장으로 이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그 딸은 채소를 심거나 유실수를 심어서 확용할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100~150坪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단위부락은 인근 소부락을 통합 집합하여 유치원을 겸한 국민학교 저학년교, 진료소, 상점, 도서관, 집회소, 소공원, 공동목욕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단위의 시설이 설치가능한 규모라야 하며 부락을 집단화하여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를 주거용지, 도로용지, 생활시설용지, 생산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등으로 용도 구분하고 시설을 集中配置함으로써 빌도를 높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건설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5. 聚落集村化의 모델 設定

(1) 聚落集村化의 立論的 見解

가. 우리나라의 자연부락은 그 입지의 결정에 있어서 비록 평야지대 마을이라 할지라도 背山臨水의 전통적 풍수설과 음양설의 영향을 받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道路의 形態上的 配置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어 전개되며 葉脈狀의 규칙성이 높은 도로패턴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과 적극적 공간(Positive Space)의 반복 교차는 농촌의 아늑한 공간구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다. 土地利用상의 특징을 보면 개인농가는 그들의 울타리 안에 개인용 남새밭(채소밭)이 있는데 이러한 生産空間이 주택과의 최단거리 이내에 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생활공간 이용상의 특징을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연부락 내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구심적 행사와 그 행사를 위한 部落祭는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대신할만한 현대적 개념의 시설이나 행사를 인위적으로 계획하여 줄 필요가 있다.

마. 住居配置의 형태는 내부 마을 안길에 타원형을 이루면서 2戶가 서로 병렬로 놓이도록 계획되고 사립문(대문)은 서로 마주보지 않게 되었으며 부락 내의 요소요소에는 社交空間이 형성되어 4~6戶 정도의 어울림이 일어나는 核空間이 있다.

이들 有核空間이 여러군데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는 多核空間體系를 갖고 주거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핵공간은 Positive Space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2) 選定地域의 現況分析(扶梁面)

(3) 集村化 目標

가. 集村化 規模

우선 현재의 농촌이 보다 살기 좋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協同營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0% 이상이 50戶 미만으로 되어 있는 자연부락을 될 수 있는 한 집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의 규모면에서는 합리적인 협동영농의 규모를 생각해야 될 것이며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검토되어야 하고 地方定住 體系上에서 나타난 합리적인 생활권의 규모를 고려하여 최적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 종원교수는 그의 연구 논문에서 대규모지역에서의 취락의 단계적 구성은 단위부락 50戶, 중심부락(300~

〈表-2〉扶梁面 現況分析

항 목	区 分	計	항 목	区 分	計	항 목	区 分	計
마을 분포	면적	19.99 km ²		田	0.05ha	문화 시설	공 중	9 대
	里数	7 個		1人当耕地面積			라디오	1,646 대
	自然部落数	31 個		合 計	0.34ha		전 축	128 "
	班数	51 個		畓	0.33 "		녹음기	87 "
인구 및 농가户数	家口数	1,206人(100%)	생(미)産品量	田	0.01 "	耕作規模別農家数및面積	TV(흑백)	1,127 "
	農家	999戶(82.8)		채배面積	1,597ha		TV(컬러)	12 "
	非農家	207 "(17.2)		단 수	495kg		스피커	52 "
	人口	5,683人(100)		수확량	7,905M/T		規模別合計	999(戶) 1,652(ha)
	男	2,809 "(49.4)		總面積	1,652.0ha		1단보미만	50 " 1 "
	女	2,874 "(50.6)		수리안전담	1,605.7 "		1-3단보	92 " 27 "
	人口密度	284人/km ²		수리불안전담	46.3 "		3-5단보	154 " 67 "
農家区分	純農家	921戶(92%)	水利施設農機保有	計	238 戶		5-1정보	173 " 170 "
	兼業農家	78 "(8%)		쟁 기	96 대		1-1.5정보	177 " 265 "
	農家人口	4,771人		동력경운기	139 "		1.5-2 정보	119 " 229 "
	純農家人口	4,381 "		트랙터	3 "		2-3 정보	152 " 420 "
	兼業人口	390 "		트 력	1 대		3정보이상	82 " 473 "
	戶当平均農家人口	4.8 "		승용차	2 "		학급수	29명
	家口当平均人口	4.7 "		우마차	22 "		벽 량	18 "
土地利用現況	合 計	1,999ha	편 의 사 설	리어카	285 "		벽 제	11 "
	田	55 "		자전거	880 "		교직원수	34 "
	畓	1,597 "		오토바이	25 "		벽 양	21 "
	林野	16 "		有南農家	498		벽 제	13 "
	塋地	55 "	有南農家	無南農家	552		재학생수	1,165 "(남599명)
	学校用地	3 "		畜牛頭数	420		벽 량	749 "(남385 ")
	道路	54 "		급 수 구 역	호 수 215 호		벽 제	416 "(남214 ")
戶当및1人当耕地面積	其他	219ha(하천, 제방, 삼중지구거,유지,묘지,교회용지)	上 水 道	급 수 현 황	인 구 1,510 人		졸업자수	203 "
	合 計	1,652ha(100%)		호 수	179 호		벽 량	122 "
	畓	1,597 "(74)		인 구	1,253 人		벽 제	81 "
	田	55 "(26)	전 화 가 입	計	362 대		신학자수	200 "
	戶当耕地面積			주 텍	317 "		벽 량	119 "
	合 計	1.65 ha		업 무	45 "		벽 제	81 "
	畓	1.60 "					취학율	20.4%

600戶), 住区中心地(2,000戶), 地域中心地(10,000戶)로 발전단계를 잡고 성장하는 가능성을 따라 단계적 구성안을 제안한 바 있다.

紙面관계상 여기에서는 모두 검토한 내용의 論文을 알릴 수 없으나 本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計劃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表-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촌화의 最適規模를 200~300戶로 보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몇가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集村化의 패턴

본 계획에서 대중지역으로 선정한 扶梁面은 농경지정리가 이미 完了된

〈表-3〉集落配置計劃

區分	취락계통	기본단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기본집락	연합집락	복합집락	종합집락	거대집락
戶 数		30~50	200~300	3,000~5,000	160,000	800,000
人 口		150~250	1,000~1,500	15,000~25,000	800,000	4,000,000

곳으로 평지로 되어 있고 직선적인 도로에 포장된 주요도로를 감안하여 농경지를 향하여 直交하는 직선도로 패턴을 그대로 도입하되 중앙을 공동시설 서비스 지역으로 하고 5~10戶가 공동의 작업장을 중심으로 아늑한 공동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직선적인 도로패턴을 도입하면서 상호간에 교차를 이루는 多核

空間 체계를 갖도록 하고, 사면으로 성장하면서 주거기능이 충족되도록 하며 50戶 규모의 副心空間을 부여하여 協同農業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다.

다. 集村化 實施

扶梁面의 현재의 가구수는 1,206戶에 인구 5,683人인데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2001년까지 집촌화

〈表-4〉 期間別 集村化 計劃表

단위 人口:人 家口:戸

期 間 別	1982		1991		2001		비 고
	人 口	家 口	人 口	家 口	人 口	家 口	
合 計	5,683	1,206	4,842	1,137	4,025	1,000	
I. 신평집촌화(대장, 제월, 신성)	1,150	265	800(220)	200(50)	800	200	() 내는
II. 금화집촌화(배성, 금신, 하방, 상방, 신신, 용골)	1,320	275	800(264)	200(60)	800	200	미집촌화의
III. 포교집촌화(상방, 신신, 복촌)	590	117	457	104	805	200	人口 및 家
IV. 신정집촌화(주촌, 전포, 후군, 전군, 고잔, 후포, 사정)	1,450	296	1,245	283	810	200	口數
V. 서두집촌화(초승, 선인, 신양)	1,173	253	1,056	240	810	200	

계획을 시도하여 매 부락당 200戸 규모에 800人 내외의 인구를 갖는 총가 구 1,000戸에 4,025명의 인구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전국적으로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離農現狀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가족제퇴에 의하여 자녀의 수도 줄어들게 되어 그와 같은 감소 현상은 불가피하지만 그 이상은 감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 이농현상을 사전에 막고 영농의 완전 과학화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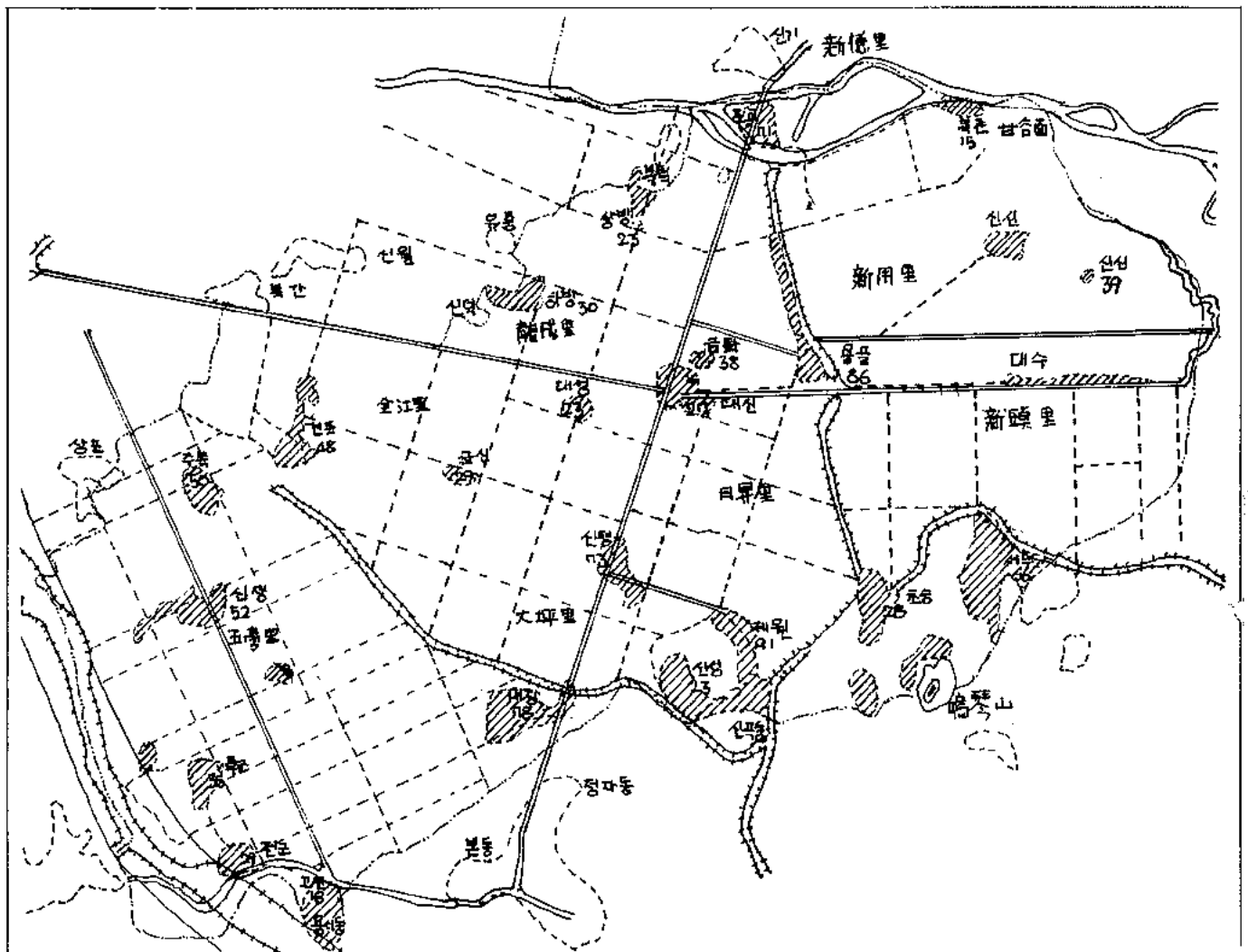
획화가 되도록 부유하고 문화적인 現想農村을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시안으로서 집촌화의 실시를 당국에 제안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막대한 투자비를 취락구조개선에 투입하였는데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40억 규모로서 全北은 그 중에 약 4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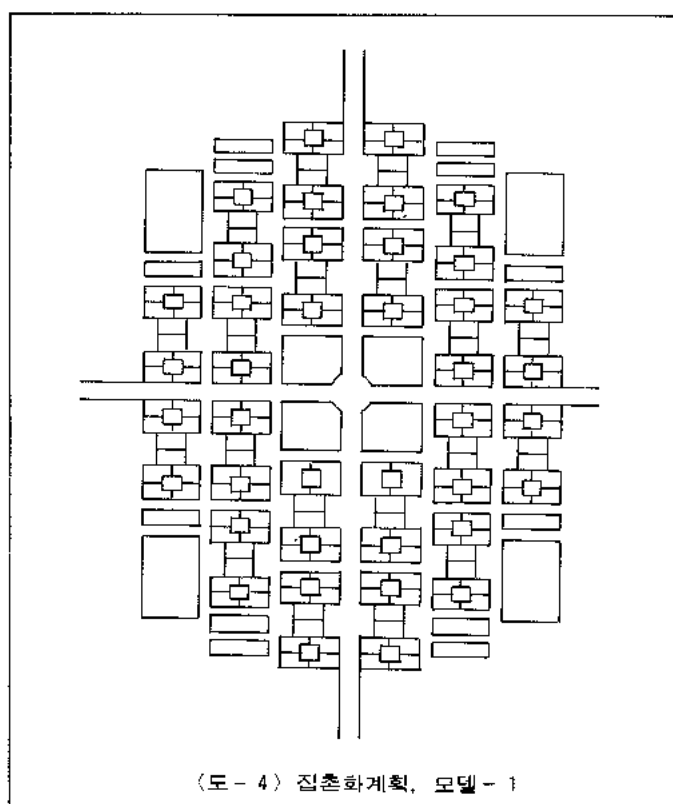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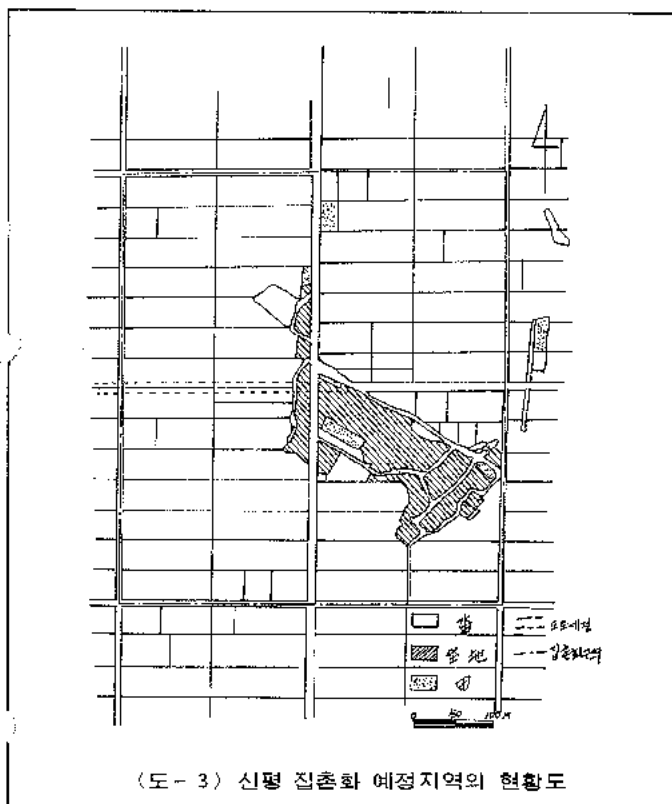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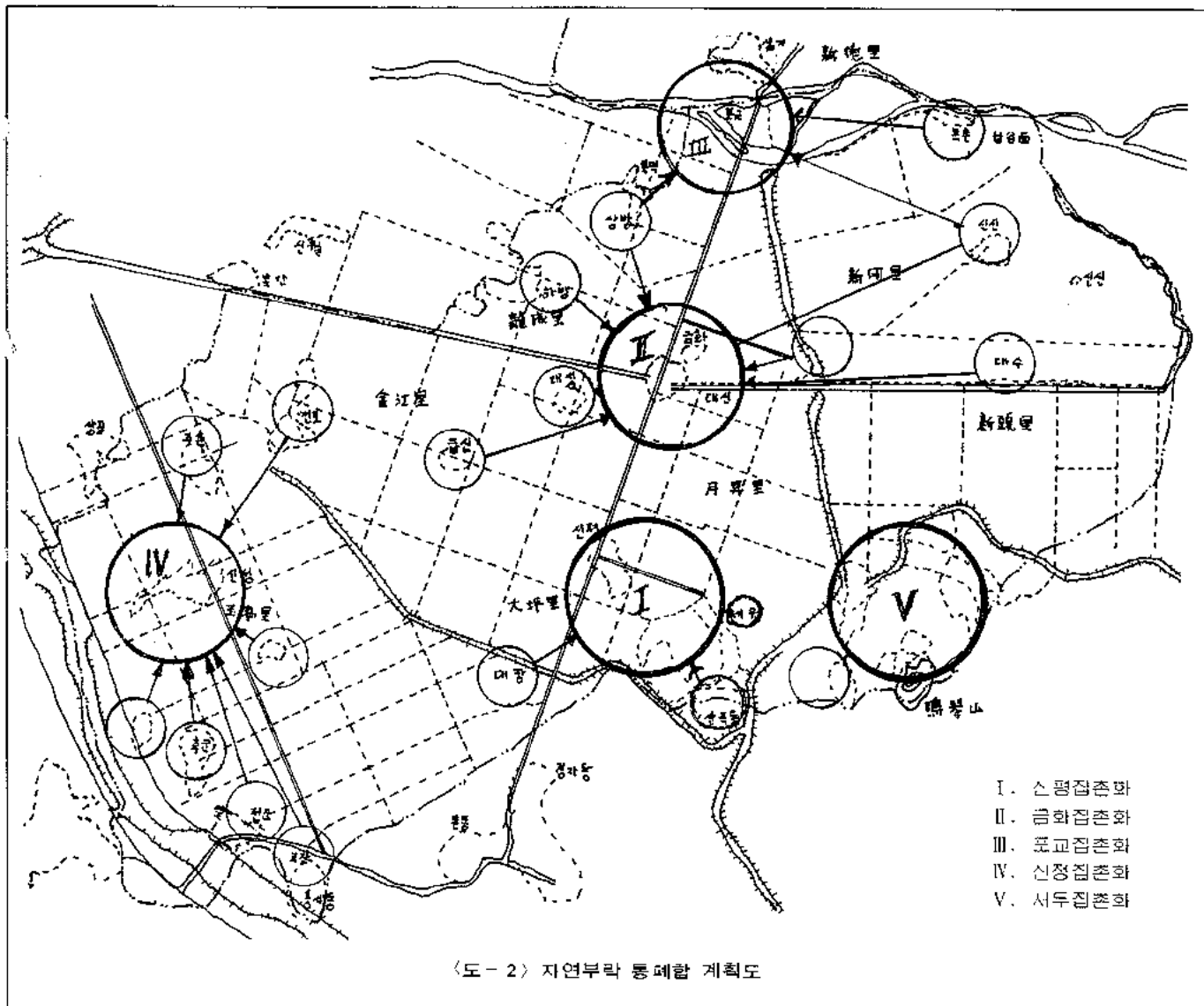
따라서 앞으로 200戸 단위의 집촌화 계획에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중 20%의 농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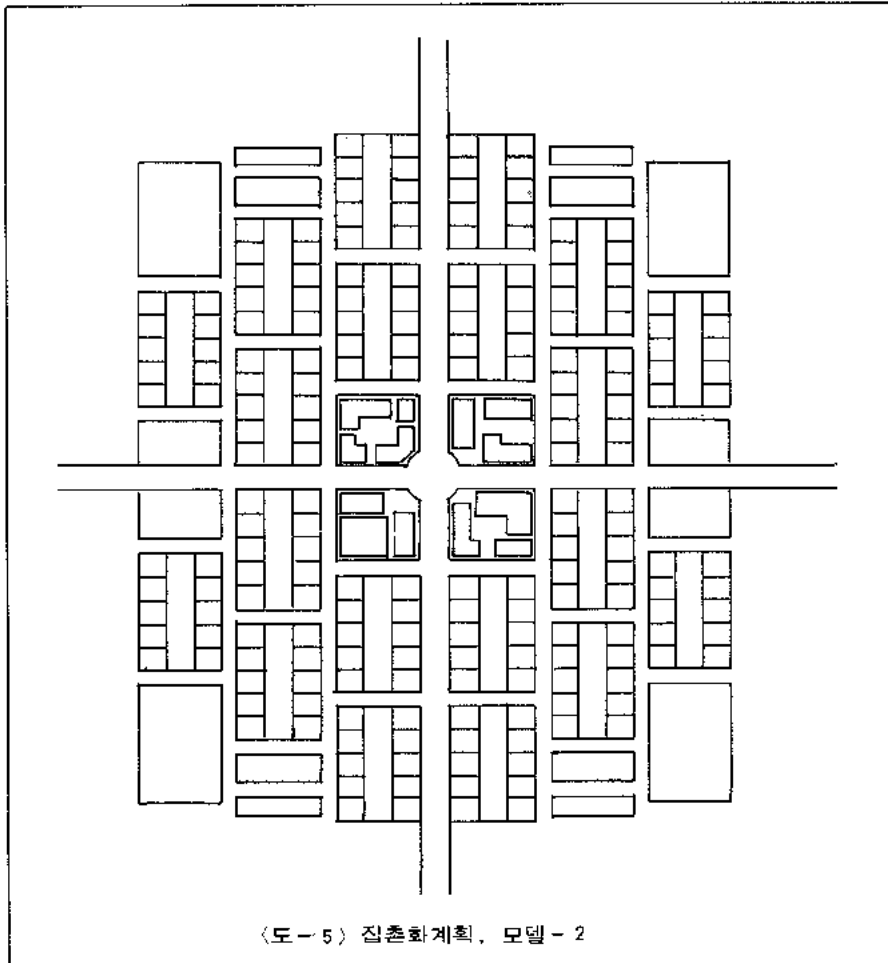
담을 제외한 16억원에 해당되는 투자를 연간 4억원씩 1984년부터 투입한다면 1991년까지는 적어도 2개소의 集村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된다면 신평집촌화와 금화집촌화가 이룩되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나머지 세군데의 집촌화가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가 뒤따른다면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시범 聚落의 패턴이 되어 커다란 관심을 받을 것으로 획기적인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1〉 자연부락 배치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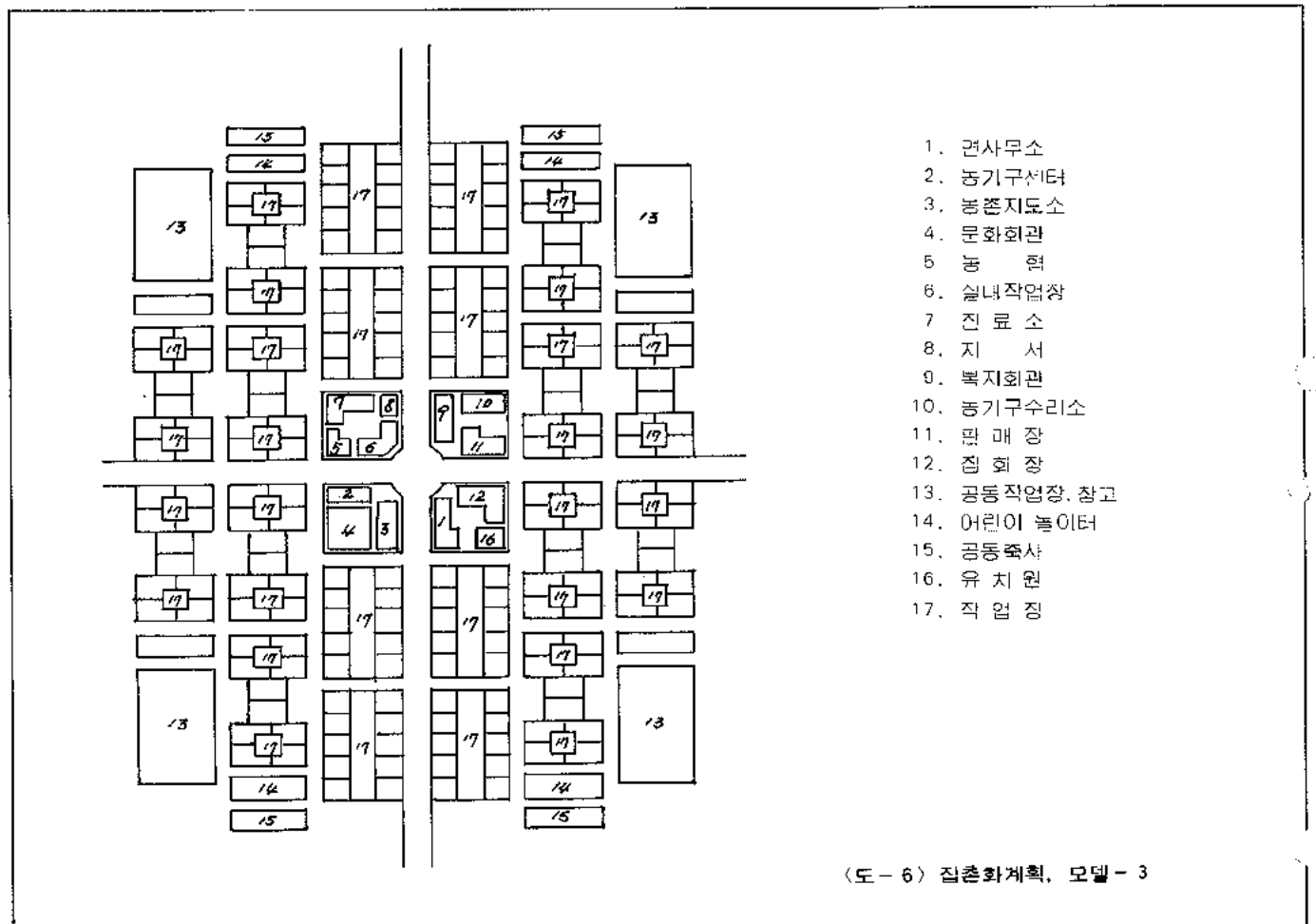
〈圖-1〉과 〈圖-2〉에서는 扶梁面의 자연부락배치현황과 통폐합계획도를 圖示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집촌화를 계획하였던 현재의 면소재지인 신평集村化를 계획하기 위한 현황도를 〈圖-3〉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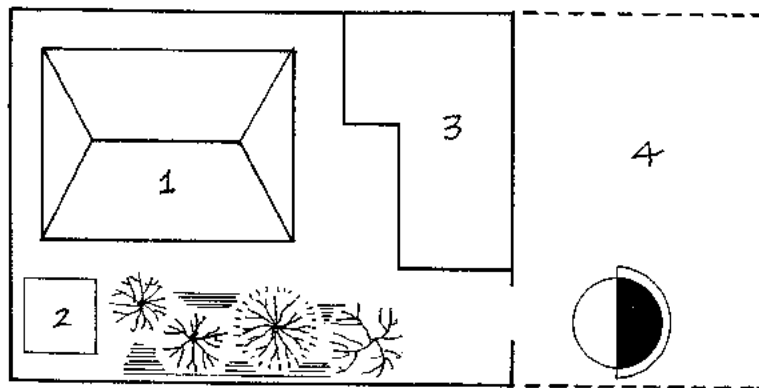
라. 集村化 모델

집촌화의 중앙에는 공공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지역으로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농기구센터, 농촌지도소, 문화회관, 농협 실내작업장, 진료소, 지서, 복지회관, 농기구 수리소, 판매장, 유치원 등이 있으며 5戶 혹은 10戶 단위의 협동농업이 가능한 패턴으로 모두 남향으로 주택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과 창고를 경작지 가까운 부락의 외곽에 두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공동축사, 그리고 합동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장을 사이에 두고 주택이 배치되도록 하였다.

〈圖-4〉, 〈圖-5〉, 〈圖-6〉에서는 각각 모델-1, 모델-2, 모델-3의 집촌화 시안을 제시하고 〈圖-7〉에서는 단위 주거배치안을 제시하였으나 모두 기본적인 도로의 패턴이



1. 면사무소
2. 농기구센터
3. 농촌지도소
4. 문화회관
5. 농 협
6. 실내작업장
7. 진 료 소
8. 지 서
9. 복지회관
10. 농기구수리소
11. 판 매 장
12. 집 회 장
13. 공동작업장, 창고
14. 어린이 놀이터
15. 공동축사
16. 유 치 원
17. 작 업 장



- 가족구성: 부부, 자녀 2인
 대 지: 136 평
 본 대지 91 평
 부속대지 45 평
 건 평: 39 평
 본 건물 23 평
 부속건물 16 평
 1. 본 건물
 2. 장 독 대
 3. 부속건물
 4. 잔 언 장

〈도 - 7〉 단위주택배치 계획안

라든가 공공시설의 배치위치는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으나 단위농가의 배치패턴을 다르게 하여 통일 속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한국적인 농촌의 유형에 접근하도록 시도하여 보았다.

6. 結 論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聚落構造改善事業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뜻을 같이하는 많은 건축인들은 모두 綜合計劃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고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인 취락구조가 형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문자그대로 개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마을 현황의 조사에서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상적인 농촌건설에 건축인은 물론이요, 관계 전문분야의 모든 기술인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관계 당국자의 이야기들 들으면 1人11 部落当 200만원의 설계 용역비가 제상되지 아니하여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이 점을 정부에서는 고려하여 예산에 反映하여야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이 완전하게 반영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획전반에 걸쳐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 하나의 사안으로서 김재균 부랑면 일대의 집촌화계획을 시도하여 집촌화의 모델을 제안하였으나 보다 깊이있게 오랜 시간동안 연구하지 못한채 내놓게 되어 앞으로는 더욱보완 수정하면서 취락입지별로 地帶別計劃까지 병행하여 여러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内務部(1981): 農村住宅改良 및 聚落構造改善事業推進指針
- 2) 田耕培(1974): 農村새마을計劃의 現況과 問題點 '建築' 第18卷 第59號 (7~8)
- 3) 田耕培(1978): 農村聚落의 條件變化와 問題點에서 본 計劃의 基本方針 建築' 第22卷, 第84號 (9-10)
- 4) 朱鍾元(1977): 農村聚落構造改善方

案 '住宅' 12권 1호

- 5) 張明珠·柳應教(1973): 農村聚落의 最適規模 計劃에 관한 研究 '建築' 第17卷 第52號
- 6) 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1): 農村中心圈開發의 理論과 指針
- 7) 柳應教(1980): 韓國農村聚落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工學研究' 第10輯(全北大)
- 8) 李廷德(1978): 서울 近郊農村標準住

宅設計 및 聚落構造改善에 관한 研究 '建築' 第22卷 第84號

- 9) 内務部(1971): 農村聚落構造改善과 住宅改良 方案研究
- 10) 朴稷垚(1981): 새마을 事業으로 이룬 農村建築의 現況과 새 農村建築의 計劃에 관한 研究 '工學研究' 第11輯(全北大)
- 11) 기타: 各種 통계연보

시멘트 벽돌 組積壁体の 構造耐力

(圧縮強度試驗結果를 中心으로 한 耐力檢討)

姜 一 東 — 國立建設研究所 建築基準課 建築技佐

1. 序 言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서 그 사용재료 및 構成部材의 耐力 또는 強度等を 알지 못하고서는 部材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즉 때로는 지나치게 安全하기도 하고 혹은 不安全한 建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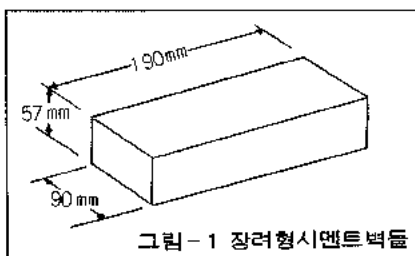
組積構造에 對해서는 아직 國內의 構造設計基準이 없는 形편이며 건축법 시행령의 規定에서 定하는 정도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멘트 벽돌 強度가 50 kg/cm^2 以上으로 개정 실시되고, 規格도 장려형으로 바뀐에 따라 실제의 벽체 強度를 測定함으로써 관계법령의 組積構造에 對한 規定內容을 일부나마 검토하고 組積構造設計에 있어서 壁体の 合理的인 耐力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시험연구의 범위는 시멘트벽돌造에 對해 等分布荷重試驗 및 集中荷重試驗으로 壓縮力에 主안점을 두었다.

2. 材 料

(1) 벽돌

① 벽돌규격

프리즘 및 피어공시체 製作에는 장려형 시멘트벽돌을 사용하고 그 規格은 K.S에 定하는 그림-1과 같다.



② 벽돌의 強度 및 물리적성질

시멘트벽돌의 強度 및 物理的性質은 임의로 채취한 12개의 벽돌에 對한 시험에 의하여 표-1과 같이 밝혀졌다. (표-1)

구	분	단 위	측정치
중 량(기 진 상태)		g	1879.1
기 진 비 중		-	1.93
흡 수 율		%	9
압축강도	윗면(190×90)	kg/cm ²	51.56
	옆면(190×57)	kg/cm ²	26.17

흡수율은 3時間 以上の 침수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壓縮強度는 24時間 以上 침수시킨 후에 試驗한 값이다. 윗면(190×90)과 옆면(190×57)을 각각 加圧面으로 하여 試驗한 壓縮強度間에 상당히 큰 差異가 있는데 그 원인은 분명치는 않으나 벽돌製作時 모르터充填過程과 공시체의 높이비율의 差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모르터

① 모르터材料

* 시멘트

출근모르터用으로 사용한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성신화학주식회사 제품)로서 粉抹度가 $3,000 \text{ cm}^2/\text{g}$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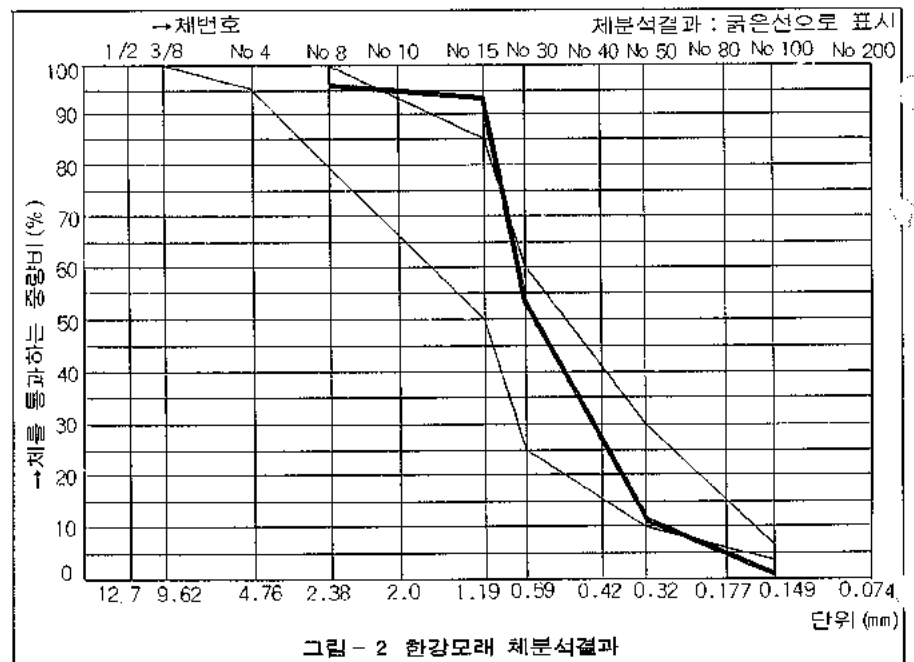
* 모래

모르터용 모래는 한강으로서 체가름 시험결과 그림-2와 같은 粒度分布를 나타냈다.

② 모르터配合

프리즘 및 피어공시체 製作用 모르터는 용적배합비 1:3으로 하고 물시멘트비(W/C)는 60%程度로 했다. 혼합은 손비빔으로 하되 건비빔 3회 후 물비빔 3회로 했다.

모르터공시체는 Batch마다 혼합이 끝나고 프리즘 및 피어공시체製作 직전에 Cube Mold에 충전하여 6개를



〈표-2〉 공시체 種類 및 規格

공 시 체 種 類			規 格 (길이×높이×나비)	공시체수	비 고
시 멘 트 벽 들			19× 5.7× 9	12	
모 르 터 공 시 체			5× 5× 5	6	
프 리 즘			19×39.2× 9	6	
피 어 공 시 체	0.5 B	길 이 쌓 기	59×62.3× 9	6	등 분 포 하 중 시 험 용
			99×62.3× 9	6	집 중 하 중 시 험 용
	1.0 B	길 이 쌓 기	59×62.3×19	6	등 분 포 하 중 시 험 용
			99×62.3×19	6	집 중 하 중 시 험 용
	1.0 B	영 식 쌓 기	59×62.3×19	6	등 분 포 하 중 시 험 용
			99×62.3×19	6	집 중 하 중 시 험 용
	1.0 B	블 식 쌓 기	59×62.3×19	6	등 분 포 하 중 시 험 용
			109×62.3×19	6	집 중 하 중 시 험 용
체	12.5cm	열 세 워 영 식 쌓 기	59×61.1×12.5	6	등 분 포 하 중 시 험 용
			99×61.1×12.5	6	집 중 하 중 시 험 용

만들고 28日間 水中양생하였다. Ca-be Mold 規格은 5cm×5cm×5cm 이고 28日 圧縮強度는 平均 111.3kg/cm² 로 측정되었다.

(3) 공시체

① 공시체 종류 및 규격

공시체는 各種 공히 6개씩 製作하여 벽돌 및 모르터공시체를 제외하고 총공시체수를 66개로 하였다.

공시체 種類 및 規格은 표-2와 같다.

피어공시체는 등분포 하중시험용과 집중하중시험용으로 大別하였으며, 試驗機의 性能 및 加荷법위를 고려하여 공시체의 규격을 정하였다. 特히 集中荷重試驗用 피어공시체는 그림-3과 같이 荷重作用部位에서 45° 角度로 힘이 확대전달된다고 보아 길이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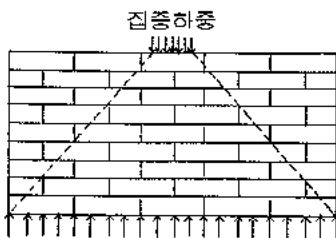


그림-3

② 공시체製作 및 보양

공시체는 地面을 평탄하게 한 후 12mm 내수합판을 깔고 그 위에서 製作하였다.

시멘트벽돌은 使用分에 對해서 쌓기 하루전에 물을 뿌려 공시체製作時에는 内部濕潤 表面乾燥狀態가 되도록 하였으며 줄눈두께는 1cm를 基準으로 하였다.

벽돌공은 숙련공으로서 經驗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였고 공시체는 9커 쌓기로 하였다.

공시체는 옥외에서 양생하였으나 공시체 제작당일 作業이 끝나는 직후에 바닐지로 싸우고 5일간은 물을 뿌려 충분한 습윤상태에서 平均溫度 13℃ (午前10時基準)로 28日間 양생하였다.

3. 공시체의 圧縮強度試驗 및 結果分析

(1) 일반사항

제작 처음날부터 28日 以上이 經過된 후 全公시체에 對하여 點查를 한 다음 시험실까지 미리 운반해 놓았다. 제작장소에서 시험실에 운반하는 동안에는 특히 공시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試驗은 당초 국립건설연구소 건축자재과의 100톤 만능시험기를 使用하려고 計劃하였으나 시험도중 시험기에 이상이 생겨 材料試驗科의 300톤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였다.

피어공시체의 上下面은 모르터를 발라 고르게 하였고 試驗時에는 上下面에 15mm 고무판을 깔고 그 위에 H-形鋼 또는 20mm 철판을 대었다. 加壓速度는 1.5~3.5kg/cm² sec를 기준으로 하였다.

(2) 圧縮強度試驗結果 및 分析

① 圧縮強度試驗結果

프리즘 및 피어공시체의 시험 결과는 表-3으로 나타냈는데 등분포 하중試驗時 프리즘 0.5B 길이쌓기, 1.0B 길이쌓기 및 세워영식쌓기 공시체는

100톤萬能試驗機로 試驗한 結果値이며, 1.0B영식쌓기, 1.0B블식쌓기 및 집중하중용 공시체는 300톤 만능시험기로 試驗한 結果値이다. 100톤만능시험기를 利用한 結果와 300톤만능시험기에 依한 試驗値間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공시체의 同質性을 감안할 때 시험기의 성능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시체의 파괴양상은 等分布荷重試驗時에는 대부분 上部加壓面이 부서져 내렸고, 集中荷重試驗時에서는 集中荷重作用部位로 부터 45° 下向方向으로 균열이 發生하거나 中央部에 垂直균열이 發生하여 절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荷重이 45° 方向으로 擴大伝達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② 벽돌個体強度 및 모르터強度와 공시체強度와의 관계

그 관계를 도표로 表示하면 다음 표-4와 같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벽돌個体에 對한 공시체強度의 비율은 等分布荷重試驗에서 30%~55%로 平均 40% 정도이고, 集中荷重試驗時 75%~90%, 平均 80%로서 集中荷重作用時의 공시체強度가 等分布荷重作用時의 공시체強度보다 벽돌個体強度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크게(약 2배의 비율)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르터強度에 對한 공시체強度比率은 等分布荷重試驗에서 14~25%, 平均 20%이고, 集中荷重試驗에서 35~45%로 나타나 공시체의 圧縮強度는 모르터의 圧縮強度에 의하여 큰 영향을

표-3 시험 결과

공 시 체 종 별			규격(길이×높이×나비 cm)	파괴하중(kg)	압축강도(kg/cm ²)	비 고
프 리 즈 공 시 체			19×39.2×9	5,800. kg	34.01kg/cm ²	
피 어 공 시 체	등분포하중시험	0.5 B 길이 쌓 기	59×62.3×9	13,650. "	25. 5 "	300Ton 시험기이용 "
		1.0 B 길이 쌓 기	59×62.3×19	32,400. "	28. 3 "	
		1.0 B 영 식 쌓 기	59×62.3×19	17,000. "	15.19 "	
		1.0 B 불 식 쌓 기	59×62.3×19	17,350. "	15. 2 "	
		12.5cm 열세워영식쌓기	59×61.1×12.5	16,800. "	21.55 "	
	집중하중시험	0.5 B 길이 쌓 기	99×62.3×9	6,950. "	38.61 "	가 압 변 적 180cm ²
		1.0 B 길이 쌓 기	99×62.3×19	17,000. "	44.75 "	" 380 "
		1.0 B 영 식 쌓 기	99×62.3×19	17,500. "	45.96 "	" 380 "
		1.0 B 불 식 쌓 기	109×62.3×19	15,800. "	41.53 "	" 380 "
		12.5cm 열세워영식쌓기	99×61.1×12.5	11,600. "	45.49 "	" 250 "

〈표-4〉

공 시 체 종 별			벽돌강도(A)	공시체강도(B)	B / A×100(%)	모르터강도(C)	B / C×100(%)
프 리 즈 공 시 체			51.56 kg / cm ²	34.01 kg / cm ²	65.96 %	111.33kg / cm ²	30.55 %
피 어 공 시 체	등분포하중시험	0.5 B 길이 쌓 기	"	25. 5 "	49.46 %	"	22.90 %
		1.0 B 길이 쌓 기	"	28. 3 "	54.89 %	"	25.42 %
		1.0 B 영 식 쌓 기	"	15.19 "	29.46 %	"	13.64 %
		1.0 B 불 식 쌓 기	"	15. 2 "	29.48 %	"	13.65 %
		열 세 워 영 식 쌓 기	"	21.55 "	41. 8 %	"	19.36 %
	집중하중시험	0.5 B 길이 쌓 기	"	38.61 "	74.88 %	"	34.68 %
		1.0 B 길이 쌓 기	"	44.75 "	86.79 %	"	40.20 %
		1.0 B 영 식 쌓 기	"	45.96 "	89.14 %	"	41.28 %
		1.0 B 불 식 쌓 기	"	41.53 "	80.55 %	"	37.30 %
		열 세 워 영 식 쌓 기	"	45.49 "	88.23 %	"	40.86 %

〈표-5〉

공 시 체 종 별		높이/두께	(kg/cm ²)	강 도	수 정 계 수		(f'm)	안전율	(fm)
			파 괴 강도	편차(%)	편차수정	높이/두께수정	수정압축강도		허 용 압 축 강도
등분포하중시험	0.5 B 길이쌓기	6.92	25. 5kg/cm ²	10. 0 %	·	·	25. 5kg/cm ²	5	5. 1kg / cm ²
	1.0 B 길이쌓기	3.28	28. 3 "	12. 6 "	0.091	0.886	25.07 "	5	5.01 "
	1.0 B 영식쌓기	3.28	15.19 "	4.89 "	·	0.886	13.46 "	5	2.69 "
	1.0 B 불식쌓기	3.28	15. 2 "	4.28 "	·	0.886	13.47 "	5	2.69 "
	열세워영식쌓기	4.89	21.55 "	9.73 "	·	0.995	21.44 "	5	4.29 "
집중하중시험	0.5 B 길이쌓기	6.92	38.61 "	6. 7 "	·	·	38.61 "	5	7.72 "
	1.0 B 길이쌓기	3.28	44.75 "	7.50 "	·	0.886	39.64 "	5	7.93 "
	1.0 B 영식쌓기	3.28	45.96 "	6.38 "	·	0.886	40.72 "	5	8.14 "
	1.0 B 불식쌓기	3.28	41.53 "	4.59 "	·	0.886	36.80 "	5	7.36 "
	열세워영식쌓기	4.89	45.49 "	8. 3 "	·	0.995	45.30 "	5	9.06 "

〈표-6〉 (옥상을 사용하는 슬라브지붕) 내력벽체에 작용하는 압축력 (단위 : kg/cm²)

室 의 크 기(Mxm)		내 력 변 이 는 적 지 다 (A) (m ²)	1 층 또는 최상층		2 층의 아래층		3 층의 최저층		
			벽 두께		벽 두께		벽 두께		
가 로(ℓ ₁)	세 로(ℓ ₂)		19cm	15cm	29cm	19cm	39cm	29cm	19cm
3.6 m	3.0 m	6. 3m ²	1.52kg/cm ²	1.74kg/cm ²	2.41kg/cm ²	3.53kg/cm ²	3.11kg/cm ²	3.59kg/cm ²	5.38kg/cm ²
4.2 "	3.3 "	8.41 "	1.64 "	1. 9 "	2.58 "	3.79 "	3.29 "	3.83 "	5.77 "
4.8 "	3.6 "	10. 8 "	1.76 "	2.05 "	2.74 "	4.04 "	3.47 "	4.08 "	6.15 "
5.4 "	4.0 "	13. 6 "	1.89 "	2.21 "	2.91 "	4.31 "	3.67 "	4.34 "	6.57 "
6.8 "	5.0 "	21. 5 "	2. 2 "	2.61 "	3.33 "	4.97 "	4.14 "	4.97 "	7.56 "
8.0 "	6.0 "	30. 0 "	2.49 "	2.97 "	3.71 "	5.57 "	4.57 "	5.54 "	8.47 "
8.0 "	7.5 "	31.85 "	2.60 "	3.11 "	4.03 "	5.81 "	4.74 "	5.77 "	8.83 "
10.0 "	8.0 "	48. 0 "	3. 0 "	3.68 "	4.39 "	6.64 "	5.34 "	6.66 "	10.22 "

표-7 (기외지붕) 내력벽체에 작용하는 압축력 (단위 : kg / cm²)

室 의 크 기		내 력 지 지 하 는 벽 의 바닥 면적 (A) (m ²)	1 층 또는 최 상 층		2 층 의 아 래 층		3 층 의 최 저 층		
			벽 두 개		벽 두 개		벽 두 개		
가 로 (ℓ ₁)	세 로 (ℓ ₂)		19cm	15cm	29cm	19cm	39cm	29cm	19cm
3.6 m	3.0 m	6.3 m ²	0.85kg/cm ²	0.9kg/cm ²	1.99kg/cm ²	2.86kg/cm ²	2.79kg/cm ²	3.17kg/cm ²	4.72kg/cm ²
4.2 "	3.3 "	8.41 "	0.88 "	0.94 "	2.07 "	3.03 "	2.93 "	3.35 "	5.1 "
4.8 "	3.6 "	10.8 "	0.91 "	0.97 "	2.20 "	3.19 "	3.07 "	3.54 "	5.30 "
5.4 "	4.0 "	13.6 "	0.94 "	1.0 "	2.31 "	3.36 "	3.22 "	3.73 "	5.61 "
6.8 "	5.0 "	21.5 "	1.0 "	1.09 "	2.57 "	3.77 "	3.57 "	4.21 "	6.36 "
8.0 "	6.0 "	30.0 "	1.06 "	1.17 "	2.81 "	4.15 "	3.90 "	4.64 "	7.05 "
8.0 "	7.5 "	31.85 "	1.08 "	1.34 "	2.90 "	4.30 "	4.03 "	4.81 "	7.32 "
10.0 "	8.0 "	48.0 "	1.18 "	1.37 "	3.23 "	4.82 "	4.48 "	5.50 "	8.41 "

〈표-8〉 벽의 수평단면적 비율에 따른 작용압축력

단위 : kg / cm²

벽단면적 / 바닥면적		1 / 25	1 / 20	1 / 15	1 / 10	1 / 7	1 / 5
구 분	바닥면적 1 m ² 당 벽단면적	400cm ²	500cm ²	667cm ²	1,000cm ²	1,429cm ²	2,000cm ²
1 층 또는 최 상 층	스 라 브 지 붕	1.79kg/cm ²	1.56kg/cm ²	1.33kg/cm ²	1.10kg/cm ²	0.96kg/cm ²	0.87kg/cm ²
	기 와 지 붕	0.89 "	0.84 "	0.79 "	0.74 "	0.71 "	0.69 "
2 층 의 아 래 층	스 라 브 지 붕	3.70 "	3.21 "	2.73 "	2.24 "	1.95 "	1.76 "
	기 와 지 붕	2.80 "	2.49 "	2.19 "	1.88 "	1.70 "	1.58 "
3 층 의 최 저 층	스 라 브 지 붕	5.58 "	4.84 "	4.11 "	3.38 "	2.94 "	2.64 "
	기 와 지 붕	4.68 "	4.12 "	3.57 "	3.01 "	2.68 "	2.46 "

받지 않지만 벽돌個體強度에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組積方法에 따른 圧縮強度의 비교분석

통상적으로 組積方法에 따라 벽돌壁體의 지지내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본 시험결과에 의하면 圧縮強度에 관한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等分布荷重作用時 공시체의 圧縮強度는 英式쌓기 15.19kg/cm², 佛式쌓기 15.2kg/cm²로서 佛式쌓기 공시체가 오히려 약간 큰 強度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테두리보등을 설치하여 荷重이 균등하게 분포될 경우에는 쌓는 방법에 구애받을 필요가 적음을 알 수 있다. 集中荷重作用時의 각 공시체의 圧縮強度는 다소 양상이 달라 英式쌓기 45.96 kg/cm², 길이쌓기 44.75kg/cm², 佛式쌓기 41.53kg/cm²로 나타나 약간의 強度差를 보이고 있으며 英式쌓기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시험은 모멘트荷重과 전단력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험이 되지 못해 圧縮力에만 有効하다는 점을 점언해 둔다. 한편 0.5B 길이쌓기와 1.0B 길이쌓기의 強度를 비교해보면

1.0B가 하중지지 능력이 크다는 사실과 12.5cm 옆세워영식쌓기 공시체도 상당한 強度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멘트벽돌造 耐力壁體의 許容圧縮 応力度推定

피어공시체에 대한 圧縮強度試驗結果로부터 美國의 BIA *기준에 의거 許容圧縮應力度를 算出하면 표-5와 같다. 여기에서 強度편차에 의한 수정계수는 강도편차가 12%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했다. 수정 圧縮強度(f'm)에 대해서 안전율5를 적용한 값을 許容 圧縮強度(fm)로 한다.

* BIA : Brick Institute of America

4. 組積造 耐力壁體에 作用하는 荷重

(1) 住宅에 있어서의 組積造耐力壁 體에 作用하는 荷重

荷重이라 하면 固定荷重, 積載荷重, 風荷重, 積雪荷重, 其他荷重이 있으나 주택에서는 건물의 규모가 작은 관계로 固定荷重과 積載荷重만을 주로 고려하기로 한다. 층고는 2.8m로 가정하고 耐力群 길이의 合計가 내진벽으

로 구획된 거리의 1/2 以上이 되어야 하며, 耐力壁의 길이는 10m를 넘을 수 없다는 規定과 耐力壁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m²를 넘을 수 없다는 現行 建築法施行令에 준하여 自重 및 아파트 경우의 積載荷重을 고려하면 室의 크기에 따라 表-6, 表-7과 같은 作用 圧縮力이 推定計算된다.

한편 一般的으로 組積造建物は 耐力壁 水平斷面積의 바닥面積에 대한 비율이 1/5~1/25 정도가 되는데 위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1/20 範圍가 적정比率로 推定된다. 그 比率가 1/25 以下가 되면 構造安全上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荷重에 따라 벽두께 또는 벽길이를 조정하여 適切한 水平斷面積을 担保하도록 하고 耐力壁이 균등하게 分布하도록 配置함이 바람직 하다.

5. 結 語

장려형 시멘트벽돌(압축강도 : 50kg/cm² 이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공시체試驗結果를 분석해 보면 耐力壁體의 圧縮強度는 組積方法에 의해서는 별다

은 影響을 받지 않는데, 特別 等分布 荷重이 작용할 경우에는 強度上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英式쌓기공시체와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佛式쌓기공시체 사이에 거의 強度差異가 없다는 點은 特記할 만한 試驗結果이다. 따라서 치장쌓기를 겸한 耐力壁은 佛式쌓기를 이용하여 미장效果도 아울러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한편 壁體의 許容壓縮強度를 算定함에 있어 本文에서는 安全率을 美國

基準에 따라 5로 취하였으나 美國은 이 基準에 의해서 高層의 組積造建물을 設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建築法令에 규정하고 있는 3층 이하의 規模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安全率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耐力壁의 水平斷面積은 바닥面積 1m^2 당 最小 400cm^2 즉 $1/25$ 以上으로 하고 보통 500cm^2 ($1/20$) ~ $1,429\text{cm}^2$ ($1/7$) 範圍가 適切하다고 본다. 또한 테

두리보를 設置하여 荷重이 集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組積壁공시체에 대한 본 시험은 試驗機의 性能 및 稼動範圍等의 情形상 實物크기 試驗을 하지 못하였으며, 壓縮強度에만 主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試驗結果分析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며 앞으로 이 分野에 對한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行하여 合理的인 組積造設計方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職業倫理觀의 確立

閔榮基(본회 이사·정원건축연구소)

직업이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生活, 다시 말해서 人格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직업을 통하여 활동함은 自己實現이므로 직업은 곧 개개인의 生活基本이며 自己表現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내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삶에 충실함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기가 속해 있는 集團에 대한 충실함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직업은 사회생활에서의 삶의 구실이다.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할 때에 그 사회는 원만하게 영위되면서 발전할 것이며 동시에 개개인의 보람있는 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이 <나>라는 인간의 총체적 표현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天職이라 생각하여 거기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는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긍지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듯 직업에 대해 신념을 갖고 긍지를 지닐 때 우리는 職業倫理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엄격한 職業倫理가 뒤따르지 않는 직업이라면, 직업 그 자체에 대한 어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現代는 근대화에 따른 工業화를 통해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産業技術과 機械,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유기적인 機能을 발휘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建設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고도의 産業社會가 갖는

生産的인 의미 못지않게 인간소외, 가치관 및 윤리의식의 결핍과 더불어 황금만능 내지는 經濟第一主義라는 현상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다.

産業社會란 인간과 인간, 기계와 인간, 과학과 인간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자본주의의 生理를 안고 움직이는 세계이다. 여기에서의 行動準則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그 목적을 끝까지 정당화시켜도 옳으나 아니냐의 가치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職業倫理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건전하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자기실현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로 창조되는 것이다.

직업이란 하나의 경제적 가치창조 이전에 人間本性에 입각한 삶의 權利이며 債務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은 단순히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동의 장소가 아니며 숭고한 生, 바로 그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産業社會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과 집단 속에서 개인의 창조적 능력이 고도로 발휘되어 '톱니바퀴처럼 조화되고 팀웍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성·발전해 나가야 한다.

産業社會의 구조를 이루는 밑바탕은 개인적인 윤리와 직업관 및 직업

윤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실현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공헌이라는 사명감, 자기성장·자기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 그리고 사회조직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 등을 가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직업활동의 期待値 내지 目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이를 조직의 이념으로 승화시켜 일체화된 産業社會를 이룩해야 한다. 그것은 직업윤리의 확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직업윤리는 직업인이 스스로 商道德과 誠實性을 높일 때 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인내의 부족, 무엇이나 손쉽게 구하려는 結果主義, 速成的의 눈가림 등을 직업윤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한편, 建築業務 수행에 따른 직업윤리의 확립이야말로 건축사의 품위 보존은 물론 거래질서의 확립이며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인 동시에 건축설계와 감리의 올바른 수행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경이라는 것을 모든 건축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건축사들은 意識改革運動의 전개와 더불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職業倫理의 재정립으로 명예로운 建築士로서, 그리고 建築文化의 창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職分을 다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現代建築物과 撥水劑의 應用

— 高濃度 실리콘原液을 中心으로 —

洪 恩 天 — 大韓建築學會參與理事・工博

서 언

건축물의 품질향상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때를 즈음하여 지난날 우리 건축인들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 오던 防濕과 撥水作用을 부여하는 연구가 매우 절실했던 것이다.

실리콘발수제란 無機系로서 구마・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 그 성과가 매우 컸던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실리콘발수제는 타일, 벽돌, 콘크리트 등의 部位에서 흡수로 인해 생기는 白花나 凍害剝落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목재면에 생기는 균열(Crack)을 막아주는 등 理化學的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건축 내외장 부위에 발수작용을 부여하여 건축물에 생기는 위와같은 물리화학적인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淸淨한 건축작품의 형태와 색상을 손상함이 없이 유지보존하고 그 可用年限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건축내외부에 발수작용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1. 실리콘(Silicon)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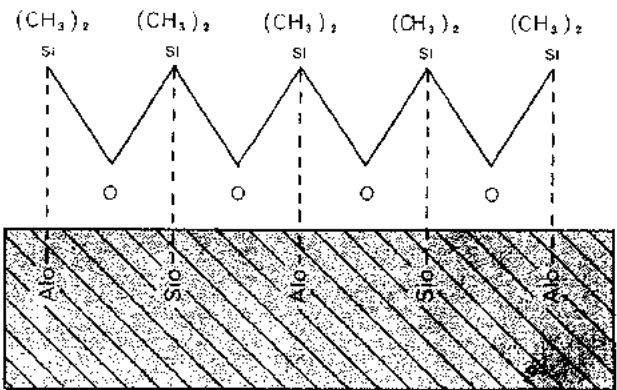
타일, 벽돌, 콘크리트 및 석고 등의 건축재료 등은 조직상 미세한 구멍(氣孔)이 많아 비를 맞거나 물에 젖으면 쉽게 흡수된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아스팔트나 에폭시와 같은 有機樹脂로 피막을 입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유기수지는 無機的인 건축자재와 잘 융합되지 못하고 空氣의 침투를 차단하여 건축물의 흡수작용을 저지하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실리콘撥水劑는 발수성과 通氣性을 겸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2. 실리콘의 特性

(1) 반영구적인 撥水性

실리콘은 아스팔트나 에폭시와 같은 유기수지처럼 單純皮膜을 형성하지 않고 건축재료 자체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물질이 됨으로써 반영구적인 발수성을 갖게 된다. 건축표면에 塗布한 실리콘발수제와 骨材성분(硃砂 및 알미나)과의 화학성분결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리콘과 骨材의 化學成分結合 모형도

(2) 침투성 皮膜의 形成

실리콘을 表面塗布할 때 건축재료내부에 있는 미세한 모세관을 통해 조직 깊숙히 침투하여 침투면에 균등하게 피막을 형성한다. 침투깊이는 건축재료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침투 깊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실리콘의 침투 능력

재 료	"고려 실리콘" 침투깊이 (단위 : mm)
시멘트벽돌	7.6
콘 크 리 트	1.5
석회고압벽돌	
비중 : 1.5	8.4
비중 : 2.0	6.0

표면 처리만 하였을 경우 "고려 실리콘"의 침투 능력.

(3) 通水능력

바람을 동반한 비가 벽면에 수직으로 내려질 때 흡수력이 큰 건축물이라 해도 일시에 내리는 벽의 전부를 흡수하지 못하고 과잉의 빗물은 벽면을 흘러내리면서 빗물로 이루어진 膜을 형성하게 되며 이때 바람을 동반한 빗물의 경우에는 이 바람이 빗물로 이루어진 膜 위에 붙게되어 일정한 水壓이 걸리게 된다.

〈표 2〉 바람의 속도에 따른 물의 表面壓(DIN 105)

바람의 속도 m / sec	表面壓力(물기둥으로 나타냄) cm
13.9	1.2
28.3	5.0
38.9	9.5

실리콘으로 처리한 벽돌面은 10cm 높이의 물기둥이 적용하였을 때 전혀 투수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와같은 결과는 屋上이나 壁面과 같은 外壁에 실리콘으로 처리하였을 때 충분히 방수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4) 建物の 白花現象

콘크리트나 벽돌 내부로 흡수된 물이 표면으로 스며 나오면서 시멘트 중의 石灰物을 용해하여 표면에 탄산석회의 白花현상을 생성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와 벽돌 등의 알칼리분이 상실되므로 콘크리트의 中性化가 일어나 材質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실리콘은 建築物의 수분 침투를 차단함으로써 石灰分の 生成을 방지하여 美觀을 유지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게 된다.

(5) 색 상

일반적으로 유기질의 방수제는 그 자체가 색상을 갖고 있거나 또는 建築材料와 색상이 같지 않으므로 건물의 외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리콘撥水劑는 무색 투명하여 건물의 原色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다.

(6) 建物表面의 오염방지

먼지나 미세한 입자의 오염물이 물기를 타고 建築物 내의 모세관으로 흡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리콘으로 이러한 먼지들이 표면에 고착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바람이나 빗물로 씻겨버리게 된다.

(7) 風害防止

외부에 노출된 壁面이나 벽돌面에 실리콘撥水劑를 도포하면 수분의 침투가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骨材가 흡수한 수분의 온도차에 따른 반복적 수축과 팽창(結氷과 落解)에 따른 風害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8) 木材의 균열방지

목재의 저장 중에 수분의 증발 및 흡수에 의하여 균열이 생기거나 부식되기 쉽다. 실리콘撥水劑를 木材面에 도포하면 건조·습윤의 조절을 최소한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균열이나 부식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3. 施工上の 요령

실리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붓칠이나 스프레이로 도포하는 것이며 바름바탕(地下)에 다소 습기가 있어도 바로 건조시키지 않아도 시공할 수가 있다.

(1) 前處理

처리面의 먼지나 이질물을 제거하고 Crack 또는 Pin-hole이 있으면 모르타르를 완전하게 충진하여 그 위에 시공을 해야 한다.

(2) 塗裝道具

붓칠을 하거나 붓칠을 할 때 塗裝面이 균일하게 되도록 해야 하며 보통塗裝을 할 때에는 순서를 정하여 왕복동작

을 계속 하면서 처리액이 벽에 충분히 흡윤되게 흘러내리는 정도로 한다.

(3) 塗裝時期

실리콘撥水劑는 벽면이나 塗裝 대상물의 건조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콘크리트의 경우는 하절기에는 1주, 동절기에는 2~3주간, 춘추계절에는 10일 정도 양생시킨 후에 시공한다.

물面 마감부는 2~3일 후에 시공해야 하며 雨期에는 삼가해야 한다. 시공 후 하절기에는 12시간, 동절기에는 24시간 정도 물기를 피해야 한다. 또한 도장 후 점차로 撥水力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3주간 경과 후에는 완전한 撥水力을 나타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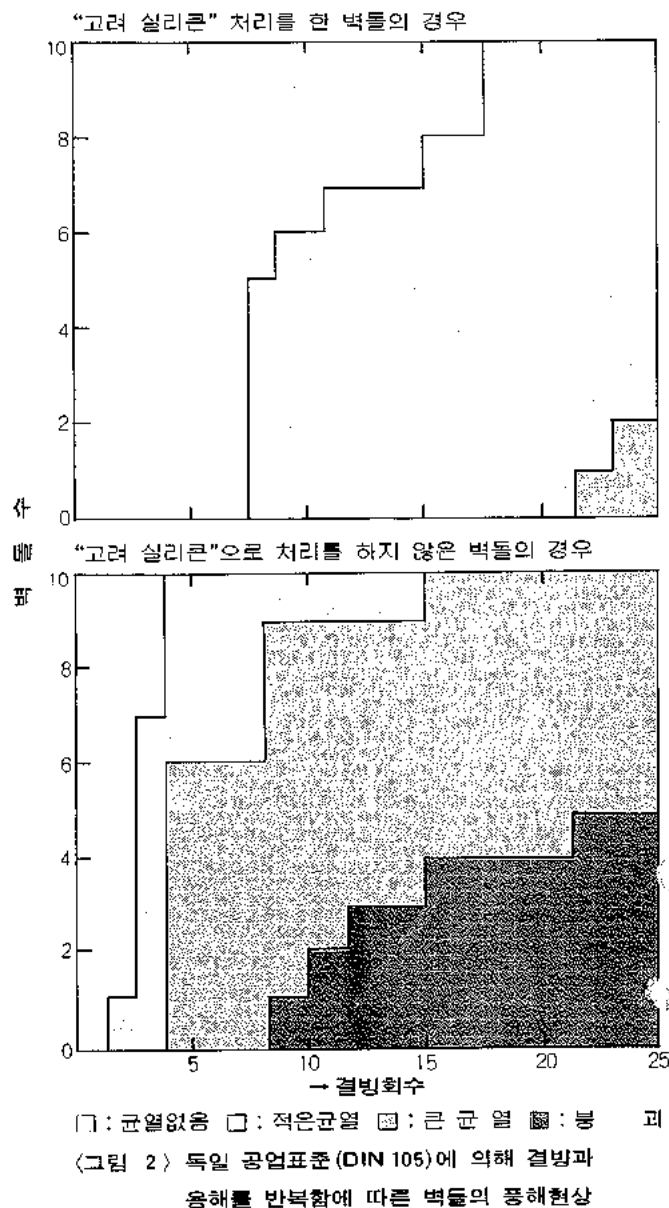


表 3. 고려실리콘의 종류

K-300	30% 수용액	회석제: 물	• 일반 건축물의 옥상 및 벽면 • 타일 벽면의 이음새 (매지부위) 의 방
-------	---------	--------	--

			수 및 백화방지 • 냉동냉장고, 취사장, 식품공장과 같이 물기 접촉이 많은 곳의 바닥 및 벽면 방수 및 균열방지 • 교량, 교각의 풍해에 의한 균열 틈 및 백화방지 • 오래된 건물 및 문화재의 풍해 방지 목적의 보수용 재료
G - 350	35% 수용액	희석제 : 물	• K - 300의 용도와 동일하나 특히 석회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적용에 적합하다.
P - 75	실리콘 수지 6%를 함유한 유기용제 용액	희석하지 않고 원액 자체로 사용함	• K - 300, G - 350과 동일 용도에 사용하나 물탈이나 콘크리트 혼합용으로 사용 불가함 • 표면처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일반 건물은 물론 석회를 많이 포함한 건물의 경우에도 적합함. • 수용액형보다 경화가 빠르고 (도장 1~2시간 후부터 발수력을 나타냄) 발

		수력이 우수하다. 타일 고층 건물의 백화 방지에 최적이다.
--	--	----------------------------------

(4) 실리콘撥水劑의 工業規格

美國聯邦規格 (Federal Spec SS - W1106)에 가입되어 있는 실리콘撥水劑의 규격 및 고려실리콘의 시험 성적은 <표 4>와 같다.

表 4. 실리콘撥水劑의 規格

분석항목	기 준	시 험 결 과 “고려실리콘” K - 300, G - 350, P - 75.
저장안정성 Storage stability	6개월동안 보관시 분리, 응고, 침전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분리, 응고, 침전을 형성하지 않음
발 수 성 Water repellence	수분흡수량 : 1% 이하	1% 이하
내 후 성 Weathering	Weather meter로 처리시 수분흡수량 2% 이하	2% 이하
통 기 성 Breathing	물로 포화시킨 시편을 실리콘 발수제로 도포하고 난 후의 수분 감량을 측정 수분감량 : 50% 이상	50% 이상
백 화 현 상	실리콘 발수제를 도포한 시편을 염 용액에 보관시 백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백화현상 보이지 않음
고형분, 실리콘분 Total solid	5% 이상	5% 이상

※ 내후성은 자체 내 시험결과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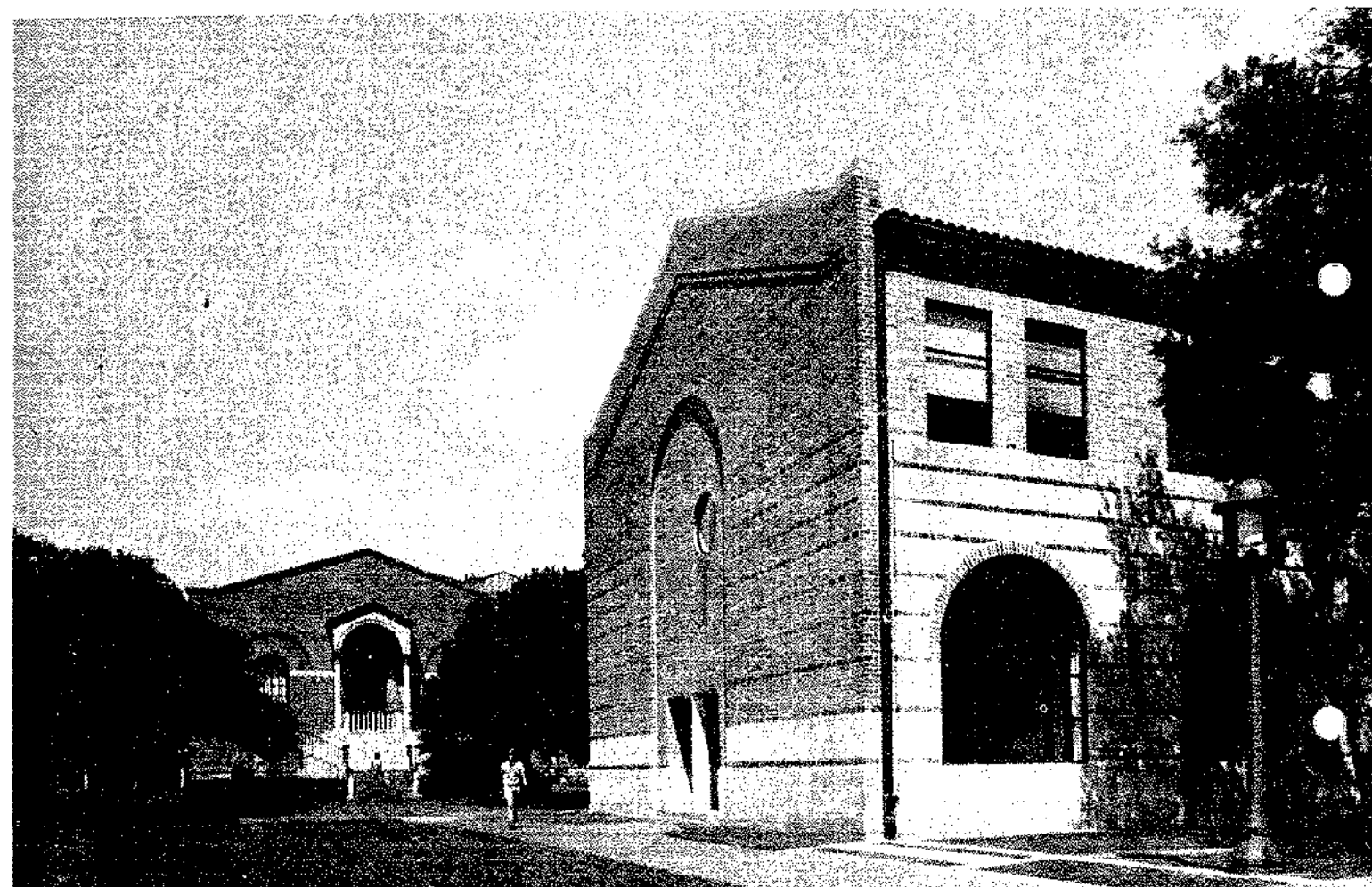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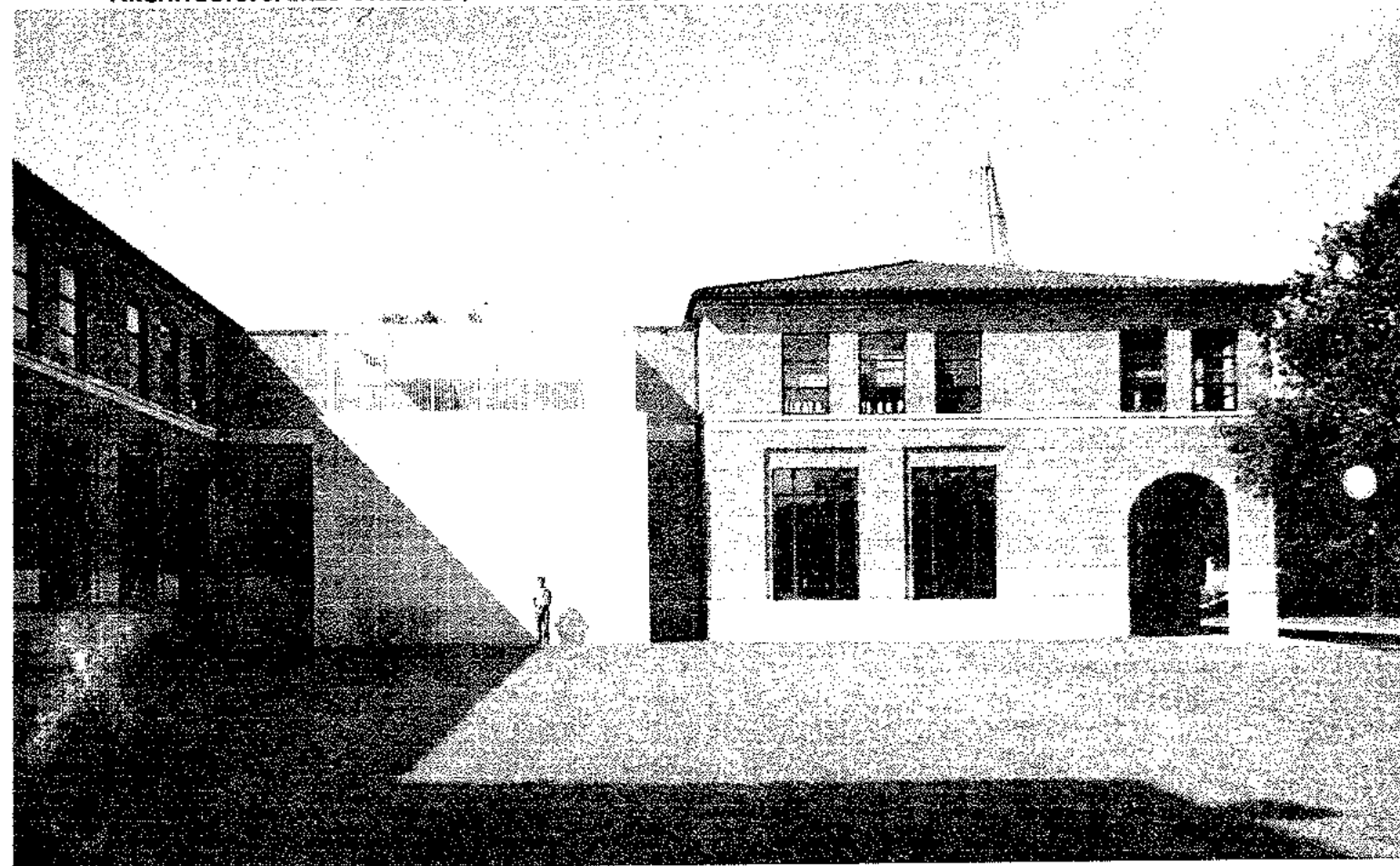
“건축설계 · 감리 올바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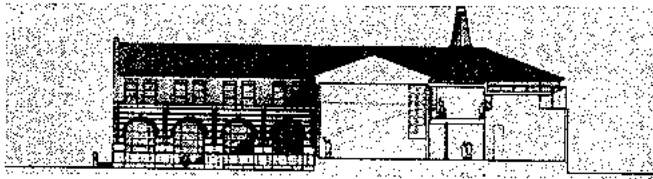
부당한 업무수탁 안하기
 타인의 설계도서에 명의대여 안하기
 설계 보수요율 준수하기
 윤리규약 준수하기
 건축설계 · 감리 철저히 하기

□ 海外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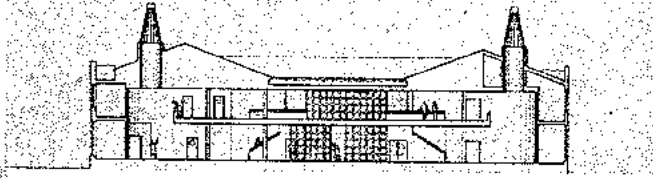
라이스대학 건축학부 / 미국 휴스턴

ARCHITECTS: JAMES STIRLING / MICHAEL WILFORD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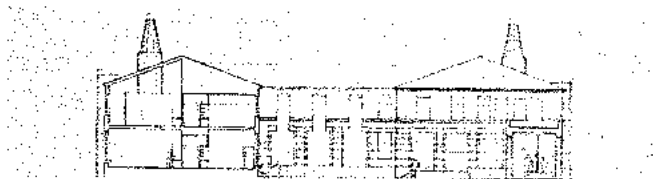




회랑을 통해서 본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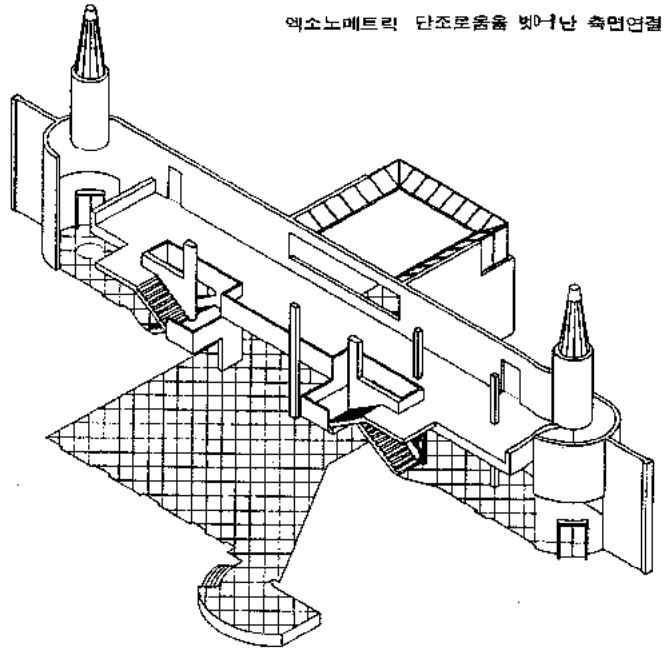


입구 앞쪽에 있는 다리를 통해서 본 B-B 단면도



새 외벽을 통해서 본 C-C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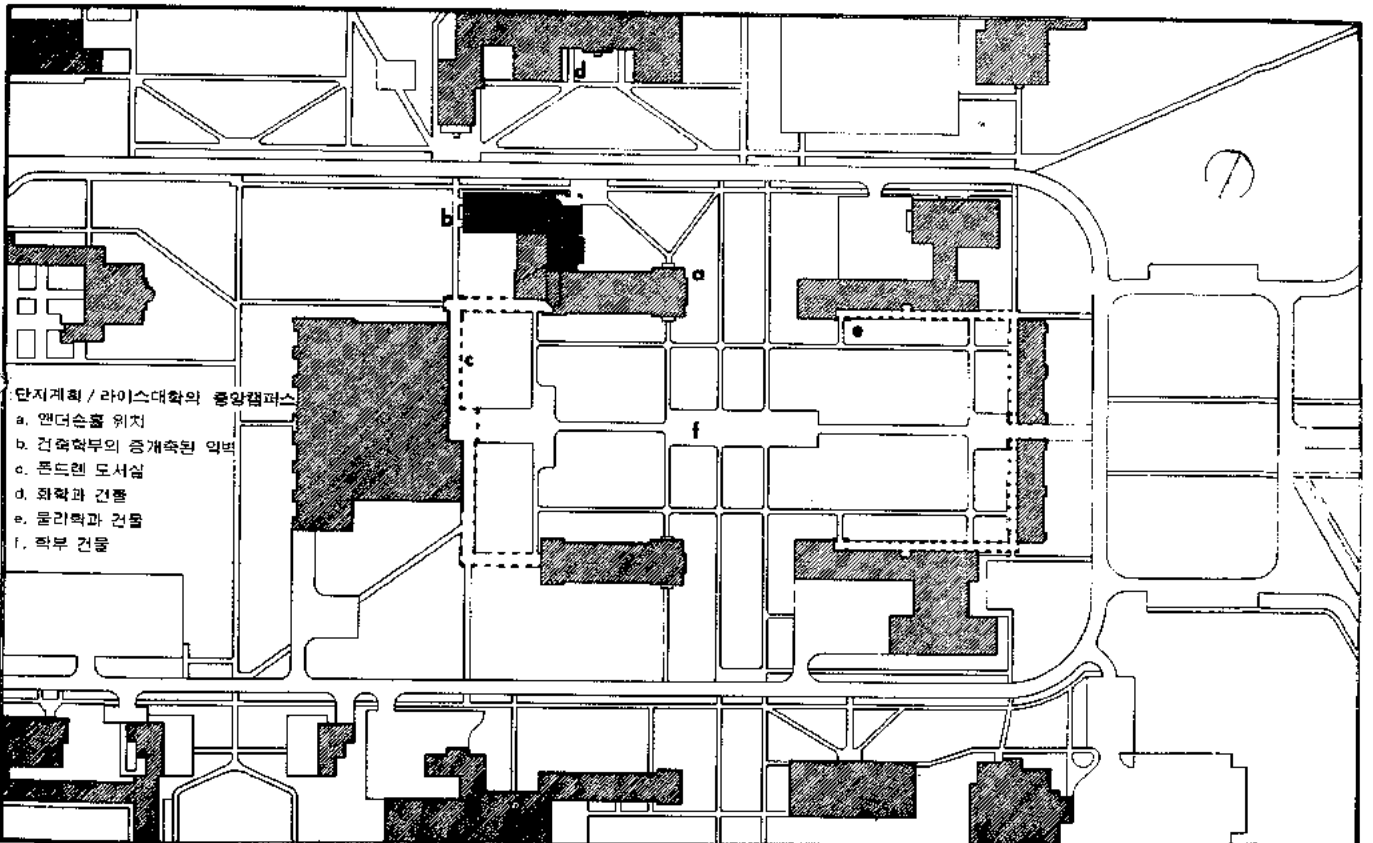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단조로움을 벗어난 축면단절



SCHOOL OF ARCHITECTURE, RICE UNIVERSITY, HOUSTON, TEX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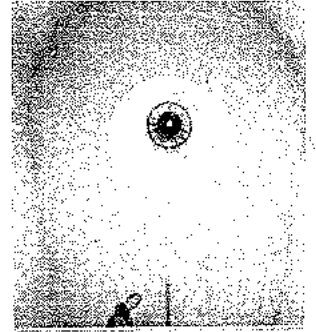
제임스 · 스틸링의 설계로 최근 건축된 라이스대학의 건축학부는 라이스대학의 특별한 환경과 역사에 상응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의 설계를 스틸링에게 맡기기 위해 그의 업적과 작품에 대한 평가를 동대학의 건축학부 부교수인 피터 C. 파파도모트리에게 의뢰했다.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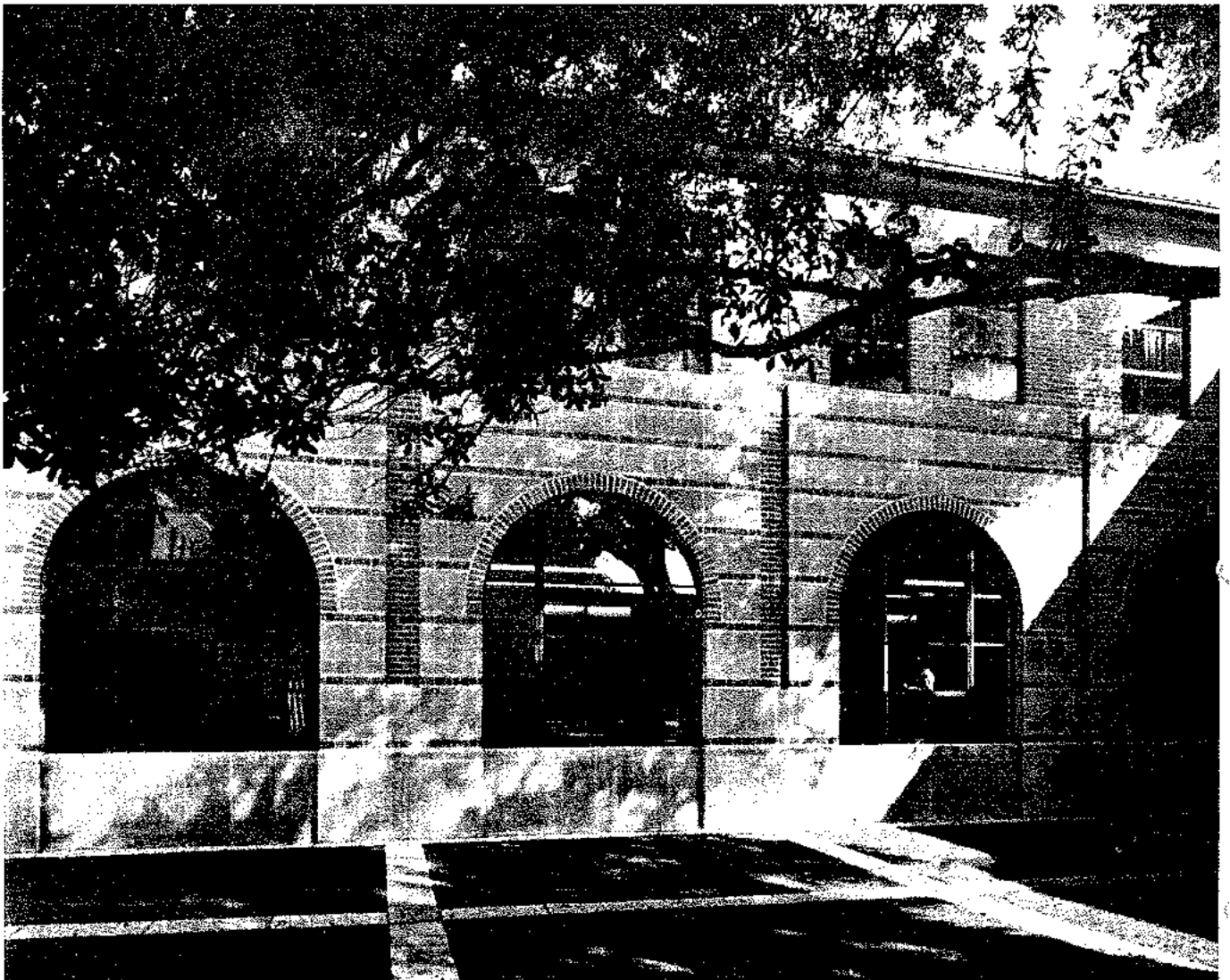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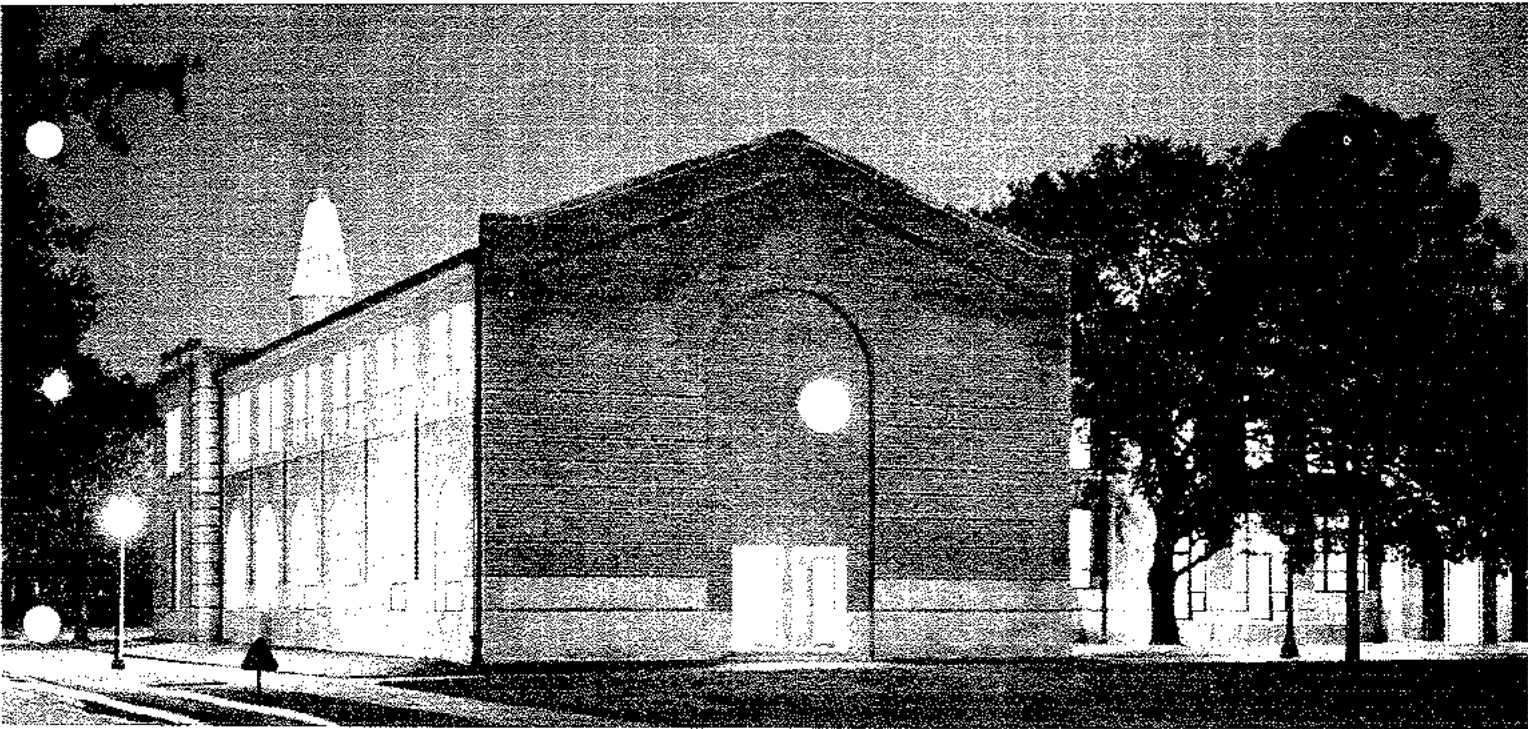
5

1. 왼쪽에 앤더슨·홀의 현존 익벽이 있는 동쪽 입면.
2. 새 익벽은 모하게도 어긋 건물의 형태를 반영하면서 캠퍼스속에 모나지 않게 조화를 이룬다.
3. 일구에 연결된 아아치
4. 회랑의 끝에서 올려다 본 지붕을 깨우는 원추형등이 달린 이층으로 된 익벽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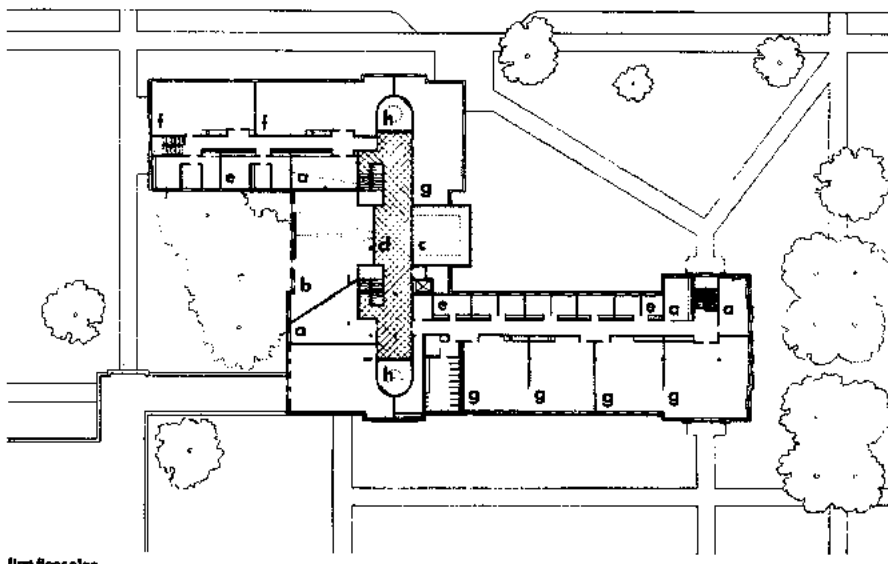
5. 신·구 익벽의 일층에 있는 전형적인 회랑
6. 새 익벽의 볼어는 '전당'이라고 나뉘어진 아이치형 창이 있고 꽃면의 박들과 내조를 이루는 벽돌쌓기 등은 뜰을 하나의 활동지역으로서 그 건물의 주재료 보완으로서 규정자이 진다.
7. 캠퍼스 안쪽의 구불거리인 길에 면해있는 새 익벽
8. 왼쪽 멀리 아이치가 있는 전주의 앤더슨·홀

6





7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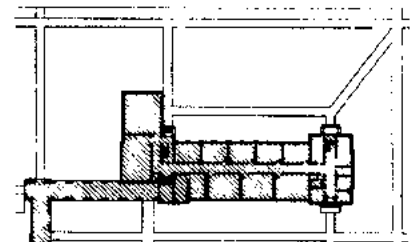
key to first floor

- a. 연구실
- b. 화랑
- c. 준비실
- d. 다 리
- e. 교수실
- f. 강의실
- g. 강의실
- h. 입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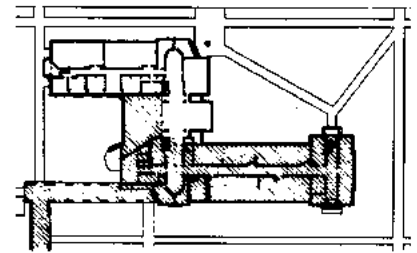
key to ground floor

- a. 물
- b. 화랑
- c. 준비실
- d. 관리실
- e. 강의실
- f. 강의실
- g. 강의실
- h. 화랑
- i. 휴게실
- k. 입 구
- m. 제 2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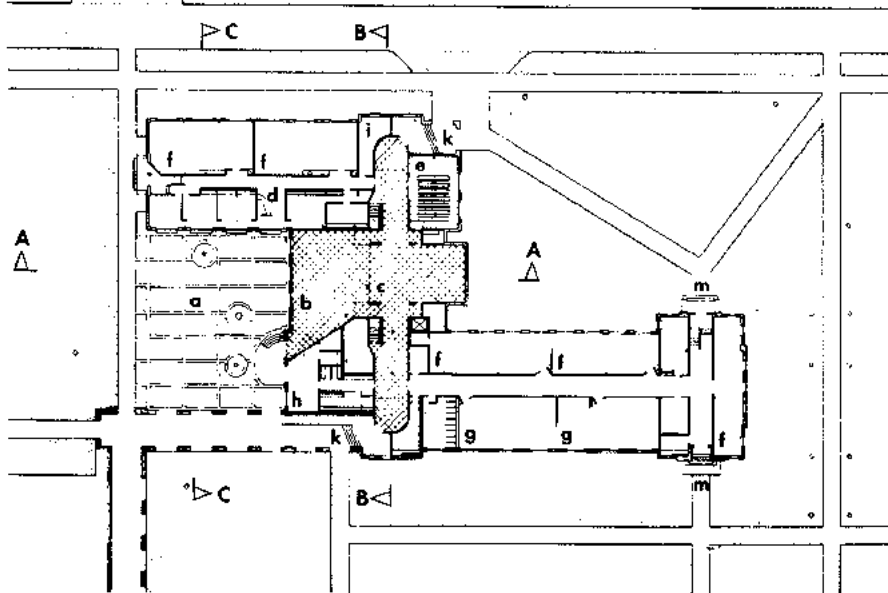
comparative ground floor plans of Anders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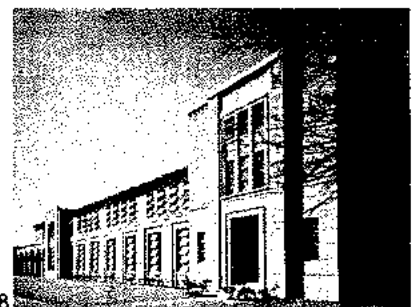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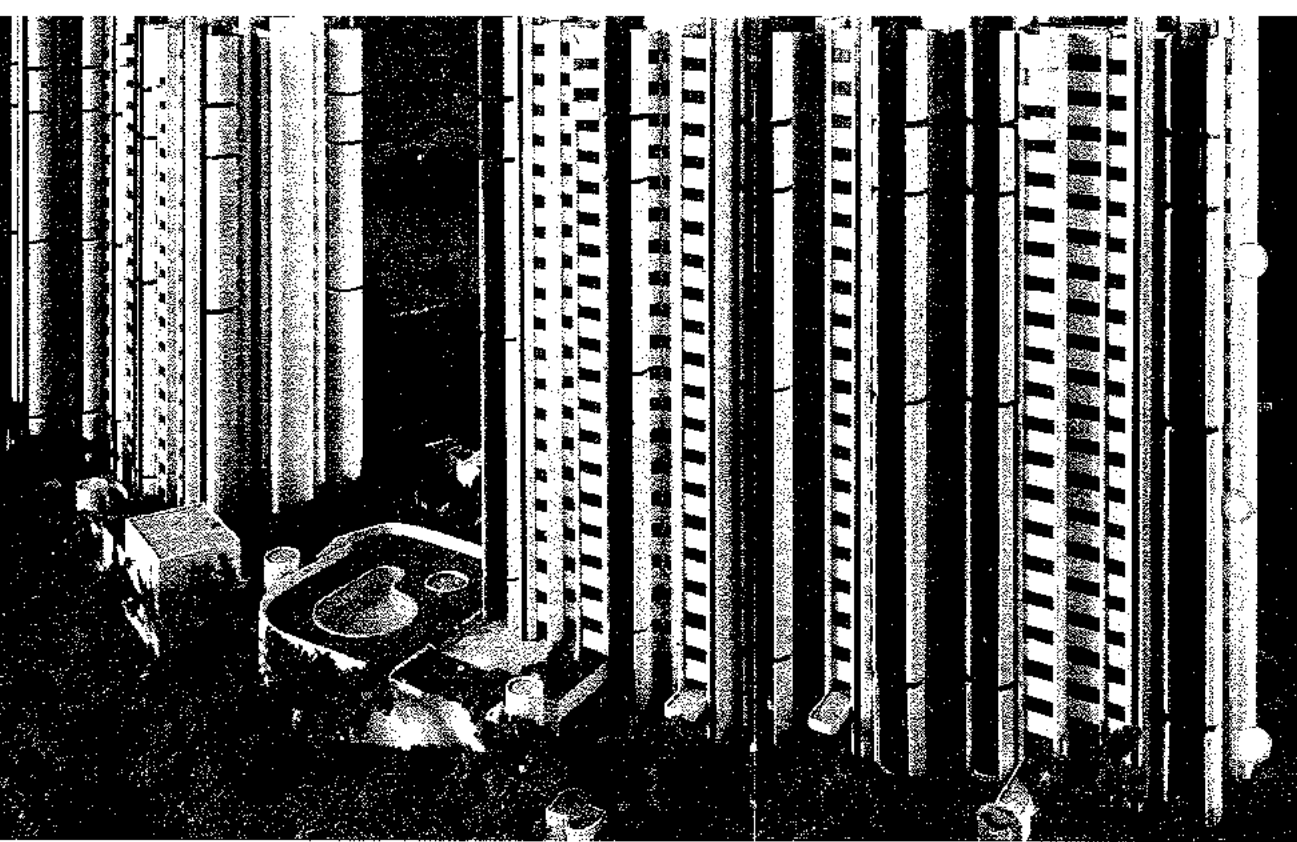
after



ground floor plan



8



THE PROPOSED CONDOMINIUM HOUSING PROJECT—SINGAPORE

자료제공—쌍용종합건설 기술실

東洋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싱가포르 는 말레이 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都市國家이면서 자유경제 무역항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지리적인 특수성과 정치·사회적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제도 속에서 아시아 제 2의 富國으로 급성장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都市再開發로 美的 이나 規模面에서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상이 없는 田園都市化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정책과 개발을 위한 투자력에 힘입어 현지 建設業 体들이 소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大型工事들이 현재 계속해서 발주 되고 있다. 비록 한정성이 있기는 하지만 중등 건설시장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싱가포르는 또하나의 좋은 建設 市場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재 몇몇 韓國業体가 진출해 있으나 쌍용종합건설이 싱가포르에 상륙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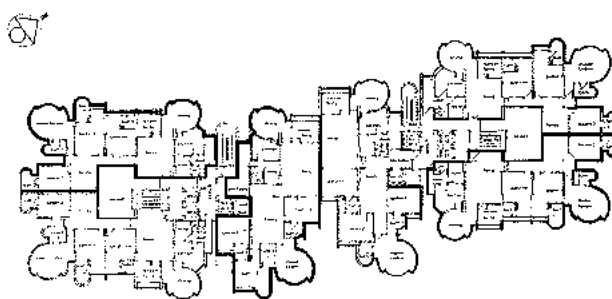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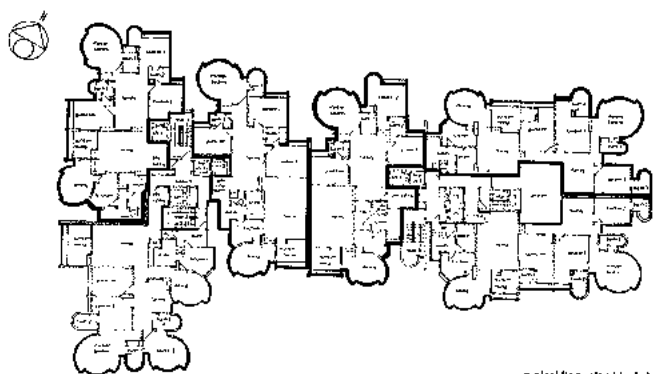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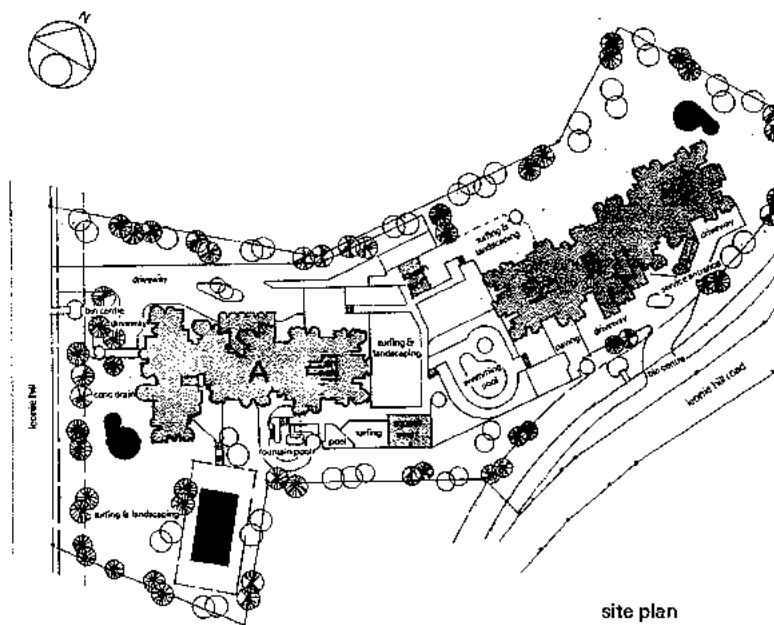
것은 1980년 8월, 동양에서 최대 규모라는 80층 건물인 Raffles City 工事 1차 발주분 토공사를 수주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80년 11월, 시공의 우수성과 현지의 좋은 반응으로 콘더미니엄 발주처인 Horizon Tower Private LTD.로부터 Letter of Invitation(입찰 초청장)을 받아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1981년 4월 1일, Condominium Housing Development의 공사를 쌍용종합건설이 착수하게 된 것이다.

〈工事概要〉

- 공사위치 : URA Land Parcel 76 & 77
Leonie Hill/Leonie Hill Road Singapore
- 발주처 : Horizon Towers Private Limit
- 감리회사 : Timothy Sew & Partners

- 공사기간 : 1981년 4월 1일~1983년 9월 26일 (2년 6개월)
- 공사금액 : USD 45백만달러 (324억원)
- 대지면적 : 20,527m²
- 바닥면적 : 7,017m²
- 연면적 : 76,157m²
 - * Car Park : 16,949m²
 - * A Tower : 29,181m²
 - * B Tower : 30,027m²
- 구조 : Reinforced Concrete Frame With Math Foundation And Bore Pile

계획 및 기능의 특징—Bed Room 을 Living Area(거주공간)와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유지되게끔 계획하였으며 Level에 차이를 두어 용도별로 각 방의 독립공간을 유지시켰다.







특히 Sunken Lounge는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外部造景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Dining Room과 Master Bed Room을 원형 공간에 배치하여 쾌적한 내부환경과 창문을 통해 외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관 입구에서부터 Reflecting Pool을 내부로 끌어 들여 생활공간의 쾌적화와 변화감 조성을 추구하였다.

구조의 특징—고층아파트의 일반적인 Box Type을 탈피하기 위해 Column 대신 내부 및 외부를 다변적인 원형의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으로 설계하여 외관상 변화와 아름다움을 연출해냈다.

현지의 施工業者가 1차로 공사한 토공사와 흙막이 공사의 부진과 하자를 간단히 해결해 버린 한국 기술진의 우수성에 싱가포르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Raffles City 2차 발주분인 기초 및 지하 구조물 공사와 상가아파트·호텔·차고용의 복합건물인 Liang Court Project 등, 대형공사를 쌍용중화건설이 계속 수주하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1년 4월, 본 콘더미니엄工事を 착수한 이래 까다로운 현지 법규와 일년 내내 끼는 듯한 더위, 주민들의 소음 항의로 중지된 야간작업, 연중 2개월 이상이나 되는 雨期철, 하루에 평균 한 차례 이상 퍼붓는 소나기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재 豫定工期에서 약 1개월 가량 앞서 施工 중에 있으며 공사 완공단계에 가서는 2~3개월 단축은 무난하리라고 본다.

본 공사는 싱가포르 都心部 고급 주택가의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상류 부유층을 위한 호화화 아파트이다. 따라서 외부는 모두 200개 가까이 되는 크고 작은 원형 공간(Dining·Master Bed Room & Bath)에 고급 재료로서 마감하였고 그 사이 사이에 알루미늄 프레임에 Tinted Glass를 끼워 우아한 외관과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주위 조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내부는 동선과 각 방 사이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게끔 계획되어 있어 입주자들의 生活空間을 쾌적하게 조성한 것이 본 건물의 특징이다.

현재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200여개의 원형벽을 모두 철제 거푸집으로 모

두율化 하였으며, 바닥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은 Table Form을 사용하여 건물의 강도와 질의 고급화를 꾀해 공사기간의 단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콘더미니엄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본 프로젝트는 車庫(350대)용의 지하 1층·지상 3개층의 Podium Block 위에 70평에서 140평에 이르는 고급아파트 108세대분인 지상 21층 Tower Block A와 104세대분인 지상 21층 Tower Block B의 쌍둥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외에도, 거주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Swimming Pool 2개소와 테니스 코트·Squash Court가 있으며 주위 10,300㎡에 달하는 Landscaping Area와 도로 포장 등, 주위 조경 및 부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제 뜨거운 적도의 햇빛에 겹쳐 난 韓國人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싱가포르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날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쌍용人들은 오늘도 피로를 잊은 채 힘찬 발걸음을 工事場으로 내딛고 있는 것이다.

건축계 뉴스 / 정보

首都圈 건축규제 서울시청 이전 백지화

서울을 비롯,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전역 등 수도권지역의 인구분산을 위한 건축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용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 및 증축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서울 시내에서는 민간건축물이라도 21층이상 사무실용건축물 11층이상 백화점 등 판매장용 건축물 및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신증축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일원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강남구 서초동에 부지까지 확보, 이전키로 한 서울시의 새청사건설계획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위원장 劉彰順)가 확정된 수도권건축물 규제계획에 따르면 이번 규제대상 건축물에는 종전의 행정부청사 외에 입법,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청사는 물론 국영기업체 사옥과 대형민간건축물까지 포함시켰다.

규제대상건축물 중 행정·입법·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청사의 신증축은 무조건 금지하며 교육시설 및 민간부문의 대형건축물은 이 전축전지역과 제한정비지역으로 구분, 규제토록 돼있다.

이전축전지역은 서울을 비롯, 의정부 등 서울이북지역으로 21층이상 사

무실용 건축물과 11층이상 판매장용 건축물은 건축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는 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시설신증축이 금지되고 서울도심으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서는 고등학교의 신증축도 금지되며 서울강북지역에서는 사실강습소도 신증축을 할 수 없다.

또 제한정비지역은 인천·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 등 6개시를 비롯, 서울이남 수도권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민간부문의 대형건축물은 규제를 받지 않고 이전축전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는 교육시설도 수도권문제심의위의 심의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대형건축물 및 교육시설은 이번 규제 조치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김태수씨 作品展 美術會館 2층서

在美作家 김태수씨가 設計作品展을 개최한다.

오는 6월25일부터 6일간 여는 이번 전시회에는 金씨가 그동안 정성껏 設計한 作品 다수가 선 보일 예정이다.

개최 장소는 동충동 미술회관 2층 전시장.

높은 에너지損失率 斷熱保温 강화 시급

아파트·호텔·병원·대형건물 등 주요構造體의 연관류율이 법정기준치보다 보통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물의 단열보온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아파트나 병원의 에너지손실율은 호텔보다도 거의 배나 되는 13%수준이며 건물부문의 평균 에너지손실율은 산업체의 손실율(6.6%)보다도 배가 높은 11.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자부는 건물부문의 이같은 에너지관리실태를 감안, 노후·저효율설비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제, 열효율을 제고시키고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는 등

건물부문의 에너지관리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자부 및 에너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백6개 건물(構造體)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건물부문 에너지 관리 현황에서는 아파트·호텔 등 대부분의 구조물이 현행 건축법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구조체열관류율 기준을 외면하고 있다.

건물의 단열보온강화를 위해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관계 규정에는 「外壁」의 경우 기준치가 m^2, h, C 度當 0.5K 칼로리로 돼있으나 실제 側壁의 경우 아파트1.28, 호텔1.83, 병원2.19, 건물2.02 등으로 기준치보다 3~4배나 높다는 것이다.

관계법규상에는 건물의 외벽·지붕·바닥·창문 등 각 부위별로 기준열관류율을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로 이같은 관계기준을 모두 지키고 있는 건물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지난해 1천50개 산업체의 에너지관리진단계획 일환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선 호텔의 에너지 손실율이 7.1%로 타업종에 비해 예상밖으로 낮은 반면 대형건물11.1%, 아파트13.3%, 병원13.5% 등으로 아파트 및 병원의 손실율이 의외로 높게 나타났다.

또 건물부문 전체의 에너지 손실율은 11.5%로 지난해 동일시점에서 조사한 산업체의 에너지손실율(6.6%)보다 거의 배나 높았다.

난방면적당 연료사용량에 있어선 대형건물이 1㎡ 당 18.9kg(석유환산)인데 비해 28.8kg, 호텔46.7kg, 병원52.1kg 등으로 병원에서의 연료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단열효율을 말하는 2重窓率에 있어선 호텔이 81.6%로 가장 높아 열관리가 잘된 반면, 일반빌딩71.2%, 아파트80.2%로 비교적 높고 가장 연료사용량이 많은 병원에 있어선 41.2%에 불과 에너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동자부는 건물부문 진단결과 2백6개 건물에서 39억9천2백만원의 에너지 절약시설자금을 투자하면 연간

중사용에너지의 11.5%인 1만8천9백톤(40억3천만원상당)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1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열수송설비의 보온강화 실내온도적정 유지 운전관리 합리화 등 건물부문의 에너지관리강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축경기 부양책 모색 양도소득세 등 완화 검토

정부는 국도의 침체상태에 빠진 건축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부양책을 강구할 것을 검토 중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새로운 부양책은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緩和를 비롯, 주택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의 절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2주택 6개월 이상 義務居住規定의 완화, 아파트 3년내 재당첨금지조치의 철폐 등의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새로운 부양책은 정부가 올해 들어 건축경기회복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주택수요자금융을 방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오히려 거래가 전혀 없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주택수요자금융의 방출, 정부건설사업의 조기발주 등으로 건축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반기 중의 추세를 지켜본 후 필요할 경우 하반기에 들어서는 새로운 부양책을 쓸 계획이었으나 지금의 건축경기침체가 지나치게 극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양책을 이처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住宅建設促進法 개정 시행

정부는 住宅建設促進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 개정령은 아파트地區 개발기본계획의 수립기간과 국민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각각 단축하여 주택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료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이 개정령의 주요골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을 연간 5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를 住宅建設事業者로 등록하던 것을 연간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地區 개발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토록 했다.

이 개정령은 국민주택의 전매기간을 그 事業主体가 당해 주택을 입주자에게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던 것을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로 조정하였으며 住宅組合 중 직장조합의 구성원 범위에 제열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시켜 제열회사 직원간의 組合住宅建設을 촉진시켰다.

또 이 개정령은 垆地造成事業의 등록 및 등록달소에 관한 권한과 임대료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및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생산한 주택자재에 대한 검사명령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시키고 있다.

建築資材 전시회 열려

건본주택도 선보여

제4회 주택·건축자재전시회가 지난달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기제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열렸다.

건설부가 우수건축자재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메이커의 생산의욕을 북돋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자재전시외에 전본주택을 건립한 업체적인 전시로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옥외에 전시된 전본주택은 만송산업(주)이 S.W.판넬을 사용해서 건립

한것과 아포텍스를 자재로 쓴 (주)삼익토건이 선 보인 것이다.

그밖에 옥내에 전시된 모형주택은 주택공사가 건립한 것이 눈길을 끌었으며, 자재로는 (주)한성의 고압벽돌, 방수제등을 포함한 55개 회사제품과 창호부문의 6개 회사제품등이 출품 전시되었다.

建築學會 회관건립 확정

대한건축학회는 숙원사업이던 건축회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학회는 건축인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대화의 장소와 건축인의 교육 및 연구장소로서 활용키 위해 학회건물회관을 건립키로 한 것인데, 총 5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부지 250평 위에 4층의 회관을 오는 83년 5월에 착공, 84년 4월에 준공키로 한 것이다. 회관이 준공되면 강당세미나실·도서관·회의실·전시실 및 기타 복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주택건설 指定制철폐

건설부는 주택건설의 양산화와 전문화를 위해 대형주택건설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주택건설사업체 지정제를 실시 4년만에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예의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8년 「8·8」조치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정업체들이 연간 건설의무기준인 1천가구를 거의 지키지 않아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빛나가고 있는데다 지정업체에 부여한 주택상환사채발행 및 토지수용 등의 혜택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78년 5월 주택건설사업지정업체가 첫 지정된 이래 지정업체는 현재 68개사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삼익주택(주)·라이프(주)·삼호(주)·한양·한신공영·한보주택·우성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택경기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주택건설을 전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경향건설·공영토건·극동건설·금강·금호건설·남광토건·(주)대우·미통건설·화성산업·한일개발 등은 주택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난 4년동안 1천가구도 짓지않아 이들을 통해 주택건설을 적극유도, 양산화하겠다는 건설부의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지정업체의 의무기준을 현재 연간 주택 1천가구 건설에서 2백~3백가구로 완화하는 방안과 이를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 관계자는 실효성없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주택건설사업 지정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짙다.

아파트地區 건폐율 세부 규정

건설부는 아파트 지구안에 세워지는 건축물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건설부가 개정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은 연립주택이 30% 이하, 저층아파트가 25% 이하, 고층아파트가 20%이하, 기타가 50%이하로 각각 제한했으며 ha당 수용허용세대수는 연립주택이 40~80세대, 저층아파트가 80~1백50세대, 고층아파트가 1백50~2백50세대로 각각 규정됐다.

새 규정은 근린 住區의 크기를 반경이 4백m 이내가 되도록 하고 주구당 공동주택건설세대수는 1천5백~3천세대가 될수있게 구획토록 했으며 각 주구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면적의 2~10% 범위안에서 주구면적을 설치토록 했다.

아파트 유리벽 권장

서울시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베란다에 유리벽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아파트의 방음 및 보온을 위해 국민주택규모하한선인 25.7

평 이상의 신규민영아파트에 유리벽설치를 권장키로 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개정을 곧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베란다에 유리벽이 설치될 경우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건축면적에 포함되게 돼 있어 분양가격의 상승은 물론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을 받게 되는데 서울시는 관계법령을 개정, 유리벽이 설치되더라도 그 사용목적이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건축면적으로 인정치 않기로 한것.

30개 再開發지역 해제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해당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제한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지구로 예정돼 있던 종로구 누상동 산1번지 일대 등 30개지구(1백19만1천4백46평 2만3천5백97채)를 올해 2차로 전면해제하고 종로구 모악동 7번지 일대 등 44개지구 중 일부를 재개발지구에서 해제했다.

서울시는 또 금호1지구(금호동317일대 15만2천7백평)에 18만9천5백20평을 추가지정하고 성동구 행당동122일대 행당구역에 9만1천평을 새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1백79개지구(3백81만9백72평10만2천5백25채)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당초 22개 법정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52개 지구를 일부해제로 건축법에 요청했으나, 전면 해제지구를 8개 더 늘리는대신 일부해제지구는 사업의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들로 해제지구 주민들은 건축·매매 등 재산권행사가 자유롭게 됐으며 이들 지구의 무허가 건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별적으로 양성화조치를 받게 된다.

해당 주민들은 내달부터 구청에 신고, 개별심의를 거쳐 상습해제지구나 환경정비지구가 아니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중순 재개발에

정지구 2백21만평 5만1천8백98채를 1차로 전면해제했었다.

학교부지도 建築許可

건폐율 33%까지—조건부

그동안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돼 왔던 도심지의 학교이전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조치가 풀리자 서울교고 자리 등 4대문 안에 있는 11개학교 자리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현재 4대문 안에 있는 학교이전적지는 △은석국교 1천429坪 △서울교고 2만9천789坪 △희문중·교고 1만138坪 △숙명여중·교 4천536坪 △정신여중·교 6천743坪 △동대부고 2천859坪 △덕수상고 1만1천101坪 △성정여중400坪 △보인상고 1천232坪 △동북중·교 6천890坪 △배재중·교 7천927坪 등 11개학교로 부지구묘만도 총 8만3천44坪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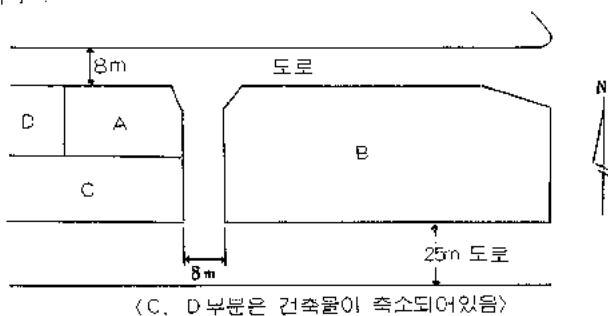
이들 학교이전부지를 매입, 사무실 등에 활용할 건물신축을 서두르고 있는 업체는 △극동건설 4천288坪(은석국교·동대부고) △현대건설 3만9천927坪(서울교고·희문교고) △코오롱건설 7천927坪(배재중·교자리) △덕수종합개발 1만1천101坪(덕수상고) 등 건설업체와 △대한보증보험 △대호동산이 6천743坪(정신여고) △석탄장학회 △대한재보험 4천536坪(숙명여중·교) △에스콰이어(주) 400坪(성정여중) △대일동산 1천232坪(보인중·상고) △태광산업 6천890坪(동북중·교고) 등 11개업체로 이들 업체들은 사옥신축 또는 임대용 건물신축 등 자체활용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4대문안 都心建築物高度基準을 확정, 시행하면서 학교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유보시켜 왔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도시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조건을 붙여 건축허용방향을 세운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條例에 학교이전부지에 대한 건축기준조항을 신설 건폐율 33%, 용적율600%, 고도는 최고 18층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건축행정 / 질의응답

문 도로 및 대지의 형상이 그림과 같이 분할되어 상업지역 정류장지구로 고시가 된 지역으로 도면의 B, C, D, 부분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고 A대지(151.8m²)에 건축하고자 하는바 시 당국에서는 동정류장 지구에 대한 조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음 경우 위 A대지에 상업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진 여부?



(C, D부분은 건축물이 축소되어있음)

답 A대지가 이미 도시계획상 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구역에 포함된다면 당해 정류장 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건설부)

문 건축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함에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² 미만이며 기존 건물과 합한 연면적은 300m² 이상으로 평면증축할 경우 공사감리자의 선정 여부? (단 증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3m이하, 처마높이 9m 이하임).

답 기존 건축물에 붙여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이 공사감리 대상 면적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설부)

문 건축법 시행령 제140조의 2의 적용에 관하여 경사도 12° 정도의 구릉지를 개발한 대지에서 23m 미만의 막다른 도로의 지점에 계단이 설치되고 사실상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각전제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 건축법 시행령 제14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로 모퉁이 부분에 건축선을 정하여 가각 전제를 하여야 하는 대지라 하더라도 도로모퉁이 부분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계단등의 시설이 있을 때에는 동 제1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

□ 건축법

문 주택 2층건물로 2층부분에 5평정도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신고로 가능합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처리중임)

문 6m 및 8m 도로변에 있는 대지로 8m 도로변에 타인대지가 11평 있는데 구입해야만 건축이 가능한가?

(시민방문)

답 귀하의 대지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구입하지 않아도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경우는 구입하지 아니하여도 건축허가 가능한.

문 4m 도로가 있을 때 도로의 사선제한은 받지 않는지요? (희원전화)

답 4m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에서 건축물 외곽선까지의 거리의 1.5배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문 구획정리를 한 상업지역의 대지면적이 150m² 인데 건축이 가능한지? (시민방문)

답 현재로서는 구획정리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건축이 불가함. (건축법이 개정되어 1982. 7. 1 이후 가능함)

문 미관지구와 아닌 지역에 걸쳐 있을때 지역지구는 어디에 적용되는지요? (시민방문)

답 원칙적으로 동 대지의 과반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지구의 적용을 받지만 비모양으로 설치된 미관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 건축할때는 당해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허가서 정화조 설치신고를 포함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건축허가 및 준공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의 신고나 검사를 동시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1982. 7. 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 건축법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노선 상업지역의 명칭이 바졌는데 노선상업지역에 걸칠 경우 과반수 이상 걸치는 지역은 적용을 받습니까? (시민전화)

답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노선 상업지역에 걸칠 경우 과반수 이상 걸치는 지역의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문 측대 상단에서 띄워야 할 거리는? (시민전화)

답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층수가 2층일 경우 2m, 3층일 경우 3m 이상 띄워야 합니다.

□ 시행령

문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50m인데 현재 도로는 3m입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령 제138조에 의하면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일 때 도로의 폭은 6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후퇴하시 후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원 법에 의한 지하층을 파려면 기계실 등도 포함을 시키는지요? (시민전화)

답 지하층 중 건축설비 및 운전전 전용되는 부분 등은 지하층 설치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문 풍치지구 및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이 170㎡인데 전폐율 30%를 지을 경우 건축면적이 51㎡로서 기준에 부적합한데 구제방법은? (시민방문)

답 형제180조 제 4 항에 의한 경우 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면적이 51㎡ 라도 가능합니다.

문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서 형제168조의3 제 2 항 제 2 호의 조경면적의 1/2이란 무슨 뜻입니까? (회원전화)

답 형제168조의 3 에 의한 조경기준의 50%만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옥상의 경우(지표면으로 2m 이상) 기준 이상의 조경을 설치한다 해도 기준산정에 있어서의 50%만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문 공해공장의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는? (회원전화)

답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직각방향 수평거리 4m 이상, 처마끝으로부터 직각방향 수평거리 3m 이상입니다.

문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마다 지하층을 설치해야 합니까? (회원전화)

답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의 지하층을 어느 동에든 설치하면 됩니다.

문 공사감리를 할 때 꼭 상주를 하여야 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5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상주공사감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 인접대지 경계가 측매로 되어 있는데 일조권을 적용하여 북측에 거리를 띄어야 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문 동별대지내 수동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동별준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시민전화)

답 동별 준공점사는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행하고 있습니다.

문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종축이 가능한지요? (시민전화)

답 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제외한 공장은 가능합니다.

문 아파트의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난간벽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지붕 등에 이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1/2미만에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문 아파트 건축시 2개 이상의 전면도로가 각각 20m일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피어야 합니까? (회원전화)

답 각 도로경계선(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의 1/2이상 피어야 합니다.

문 상업지역내에서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얼마입니까? (시민전화)

답 높이의 12m를 감하여 그것을 40으로 나눈 값에 0.5m를 더하면 띄우는 거리가 나옵니다.

문 주택의 다락방은 면적에 포함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다락방의 반자높이가 1.8m 미만일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문 피난거리 30m란 실의 구석으로부터 피난계단까지의 거리로 계산합니까? (회원전화)

답 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실의 문 등을 통한 보행거리 30m 이내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주거지역안의 대지 옆으로 2m 도로가 통하고 있는데 2층을 지을 경우 얼마나 후퇴해야 하나요? (시민전화)

답 통과도로일 경우 건축선에서 1m를 띄우셔야 합니다.

문 기존건물을 목욕탕으로 용도변경 하려 합니다. (기존 건물은 6m 도로에 접한 점포 2층) 기존 목욕탕과의 거리제한과 용도변경 가능 여부? (시민전화)

답 기존업소와의 거리제한은 없으며 기존건축물이 적법건축물인 경우 용도변경 가능함.

문 동측의 3층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피해가 있을경우 이의 대책은? (서대문구 창천동 시민방문)

답 주거지역 내 동서측은 일조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문 APT 설계시 단지내 고저차로 인한 일조권 계산은? (회원전화)

답 고저차의 평균높이를 건물에 가산하여 건물높이의 1.25배를 이격하면 됩니다.

문 시행령 제167조 일조권 등의 제한에서 주거지역의 범위는? (주거전용, 주거, 준주거 등 3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원전화)

답 주거지역만이 해당됩니다.

문 일단의 대지내에 단독주택 2개 동을 건축할 경우 2개 동의 인동거리는 얼마입니까? (회원전화)

답 동일 대지안의 2개 이상의 건축물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3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문 지하층 규정적용에 있어 차고 등의 일면이 완전 노출되었을 경우 삼면이 모두 흠속에 묻혔다면 지하층이라고 해도 되는지요? (회원전화)

답 삼면이 모두 흠속에 묻혔을 경우에도 1면이 완전 노출되었다면 지하층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 용도의 제한은 없이 모든 용도가 복합으로 설치될 수 있나요? (시민전화)

답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도 있으며 시행령 제9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방화상 유해한 복합용도의 제한도 있습니다.

문 직통계단구조가 동일평면 내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되는지요? (시민방문)

답 직통계단은 오르내림이 동일 평면내에 있어서 수직되게 피난층까지 설치되어야 직통계단으로 인정됩니다. 즉 동일층에서 계단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인정치 않습니다.

문 지하 옥내에서 주차면적이 400㎡를 초과합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까? (시민전화)

답 용도상 불가피한 경우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문 지하실의 비상계단은 방화구획되는 부분마다 설치하여야 하나요? (시민전화)

답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 지하층 설치 규정에서 8 층이면 바닥면적의 2배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시민방문)

답 16층 미만일 경우 지하층 연면적의 1/10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문 6층 280㎡ 건축물에 계단이 1개 있을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대전지방)

답 6층인 건물에서는 거실의 합계가 300㎡ 이내에서 직통계단이 있으면 승강기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문 지하층 설치 없이 가능한 여윌공지가 얼마입니까? (회원방문)

답 5층이하의 건축물로 건폐율에 의한 공지 이외 당해건물 연면적의 1/8 이상 공지가 있을 경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연립주택의 공원과 경계에서 띄워야 할 거리는 얼마입니까? (회원전화)

답 공동주택은 대지경계선에서 외벽지까지 3m, 처마 끝까지 2m 이상(2층 이하에서는 2m, 1.5m이상) 띄어야 합니다.

문 주택(주거 지역) 건축시 정북방향에 띄워야 할 거리는요? (일반방문)

답 건물의 각 부분에서 1/2이상 띄워야 하고 건물의 최고 높이가 8m일 경우 1/4이상 띄워야 합니다.

문 한층당은 건축법용도 분류시 어디에 포함되나요? (시민전화)

답 공중이 사용토록 계획된 것이라면 근린생활시설에, 공동탕 이외의 것이라면 위락시설에 포함됩니다.

문 4층 건물 각층 바닥면적을 240㎡로 건축하고자 하는데 2개 이상의 계단이 필요한지요? (사무실 용도임) (시민전화)

답 사무실 3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200㎡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 주요 구조부를 내화고도로 할 경우는 400㎡ 이상이므로 필요 없습니다.)

문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제품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시민방문)

답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는 재료는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22조 별표 10에 규정된 포틀랜드시멘트, 콘센트 및 플러그, 복층유리 등이 있습니다.

문 연면적 1200㎡인 점포 음식점일 경우 건축선후되는 얼마를 하여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바닥면적 1000㎡를 넘는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4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합니다.

문 업무지구에서 종합병원을 신축하려 합니다. 저축사항은? (시민전화)

답 종합병원의 성격이 격리 병원(전염병원, 정신병원 등)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문 12.0m 도로면 3층 건물을 신축시 북쪽에 일조권 저축에 완화를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시민전화)

답 시행령 제167조에 의거 폭 20m 도로면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바닥면적 500㎡인 건물 4층에 층고 1.8m로 창고를 증축할 경우 면적에 산입됩니까? (시민방문)

답 저실용도가 아닌 경우라도 1.8m이면 층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바닥 면적에도 산입됩니다.

문 1층 바닥면적이 150㎡인 5층 건물의 방화구획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전화)

답 연면적 1000㎡ 이하이라도 3층 이상인 경우 3층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층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문 학교에서 조경면적 산출은? (시민전화)

답 조경면적 산출은 용도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대지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학교대지가 2,000㎡ 이상이므로 대지면적의 15%가 해당됩니다.

문 옥상의 승강기탑, 장식탑, 옥탑 등이 바닥면적의 1/8 이상이 넘어 층수에는 산입이 되는데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안된다는게 사실인지요? (시민전화)

답 바닥면적의 1/8 이상이 되어 층수에 산입되더라도 승강기탑, 장식탑, 옥탑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문 주택의 지하실의 높이가 1.5m입니다. 바닥면적에 산입합니까? (시민전화)

답 지하실을 창고의 용도에 사용될 경우 바닥면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 옥의 비상계단을 쉼터레버 구조로 설치코자 합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은? (시민전화)

답 바닥면적 산정시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명 면적으로 하며 건축면적은 전체 수평 투영면적으로 합니다.

문 피난상 보행거리 30.0m로 되어 있으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되어 있는데 거실 이외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회원전화)

답 거실 이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건축조례

문 숙박시설이 주거지역 안에서는 노폭에 따라 제한되나요? (시민방문)

답 주거지역 안에서 12m 미만 도로에서는 숙박시설이 설치될 수 없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문 서울 시내에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용적율은 얼마이며 지하실 면적이 용적율에 산입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시의 용적율은 180%이며 지하실의 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나 용적율 산정시는 제외됩니다.

문 마포인테 중전 규정에는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적용되는지요? (시민전화)

답 서울 도심(4대문) 고도기준 조정후 해당지역이 아니므로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15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문 12m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데 건축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서울시조례)를 지킴에 있어 담장도 해당되는지요?

(회원전화)

답 담장도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 후퇴하여야 합니다.
문 주거지역이고 제 4 종 미관지구로서 30m 도로확장으로 360㎡의 땅이 148㎡가 되었을 경우 건폐율, 용적율 및 도로에서 3m 후퇴여부?

(회원전화)

답 도시계획 시설설치로 인한 자투리 땅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당해지역지구 건폐율+10%, 용적율은 당해 용적율의 2배 이하이며 전면도로에서 퇴어야 할 거리는 인접건축물의 건축선으로부터 후퇴거리 이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거리로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 제 2 종 미관지구내 400㎡ 대지에 300㎡의 건물이 있을 경우 별동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요?

(회원전화)

답 현행 건축법규에 맞추어 증축할 수 있으나 별동 건물은 전면에 증축할 경우 건축조례의 규정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예의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대지내 조경에 있어 100㎡에 교목 30본과 관목 50본을 동시에 식재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답 100㎡를 조경할 경우 관목으로 50본 이상 또는 교목으로 30본 이상 심으면 되며 동시에 심는것은 아니며, 되도록이면 교목을 식재 면적의 50% 이상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 제 2 종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으로 대지가 200㎡로 되었을 경우 현 60㎡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요?

(시민전화)

답 증축 가능합니다.

문 자투리 땅으로 적용받는 대지인데(제 2 종미관지구) 4층을 지을 수 있나요?

(시민전화)

답 3 층까지 지으셔야 합니다.

문 제 4 종미관지구로 주위에 기존건물이 있는 100㎡도 건축 가능합니다?

(시민전화)

답 제 4 종 미관지구에는 인접주위에 기존 건물이 있어도 100㎡에는 건축허가(건축)가 불가합니다.

문 미관지구내 건축할 경우 3m 이상 후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시민전화)

답 원칙적으로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주차시설은 불가합니다.

문 2 종 미관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입니다. 5 층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회원전화)

답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기준미달 대지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3 층 건축이 가능합니다.

□ 주차장법

문 옥외 2 단주차 가능하나요?

(회원전화)

답 옥외주차장 일정비율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옥외 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2 단주차장은 구조물이므로 옥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 지하실 165㎡, 지상층 330㎡를 지을 때 주차대수는?

(회원전화)

답 4 대가 필요합니다.

문 연립주택을 4m 도로변에 지을 수 없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방문)

답 서울시내 일원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 주차장을 연면적 200㎡마다 1 대씩 설치하여야 하나 6m미만 도로에는 주차장 입구를 설치 못하므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회원전화)

답 시행공포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특정건축물일 경우 진입로가 6m 미만도 가능합니다.

문 주차장 램프의 폭은 얼마이어야 합니까?

(시민방문)

답 출입구가 1개일 경우 5.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 1,0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4m도로에 주차장 입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민전화)

답 1,000㎡ 이하의 건축물의 주차장 출입구는 4m도로에 설치 가능합니다.

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13조의 진입로의 1 차선인 경우와 2 차선인 경우는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전화)

답 주차장의 입구와 출구가 있어 일방통행 될 수 있는 경우로 3.5m이면 가능하며, 출입구가 1 개소로 출입하는 경우 5.5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문 대지 145㎡에 66㎡의 1 층점포와 그 위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시민전화)

답 필요 없습니다. 주택과 점포는 별도로 주차면적을 산출하므로 해당 없습니다.

문 주차장 면적이 좀 큰편인데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요?

(시민전화)

답 주차장 면적이 6000㎡ 이상일 경우는 주차장으로서의 출구 및 입구를 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건축행정

문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것에 대한 준공은 어디서 받나요?

(시민전화)

답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준공접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제 2 종 미관지구내 건축물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저촉되나 과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신축한 건물로 외장이 퇴색되어 외장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민방문)

답 미관지구내 외장변경은 대수선 사항이므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미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하면 외장변경이 가능합니다.

문 500평의 대지에 3 인의 공동 소유자가 단독주택 3 동을 지으려 하는데 가능여부?

(시민전화)

답 각 단독주택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대지는 3 동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 본인 대지는 10㎡, 타인대지는 53㎡인데 집이 낡아서 고치려고 할 때 대지주인의 승낙없이 고칠 수 있나요?

(시민방문)

답 대지주의 사용승낙 등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해서

아 합니다.

☞ 옥욕탕 건축시 거리제한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나요?
(시민방문)

☞ 거리제한은 없으며 제반 법규정에 적합하면 됩니다.

☞ 인근의 건물에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시정요청은 어디에 합니까?
(시민전화)

☞ 관할구청 건축과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의 준공검사에 도면의 마이크로 필림화는 꼭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회원전화)

☞ 법적으로 준공 검사시에 허가도면의 마이크로 필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시에서는 비상시의 활용을 위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의 준공시에 허가도면의 마이크로 필림을 첨부하도록 행정 유도하고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전기안전진단 필증은 첨부할 해야 하나요? (시민전화)

☞ 전기안전 진단필증은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준공을 받지 못한 공사중인 건축물로 용도상 출입문 및 계단을 변경 설치하려는데 준공을 필한 후 시공해야 하는지요?
(시민방문)

☞ 경미한 변경사항(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은 임의의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피해, 구조적 불합리, 미관지구 등으로 외관변경 등이 되는 경우는 준공전 건축허가(설계변경) 후 시공가능한.

☞ 5년전 5층 건축설계와 허가를 득한 후 3층까지만 짓고 준공을 필하였음. 금년에 4.5층을 증축코자 할 때 구청에서 구조상 불안하다고 허가를 불가로 처리하였으므로 그 해결방안은?
(시민전화)

☞ 구청에서의 민원서류 보관년수는 3년이므로 옛서류가 없으므로 구조기술사의 기존건물 구조 검토 확인 및 안전진단 결과 후 가능하면 허가할 수 있음.

☞ 주거지역내 여관건축 허가시 거리제한은? (시민전화)

☞ 여관 상호간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 미관지구인데 앞면을 보기 좋게 바꾸려고 합니다. 수축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시민전화)

☞ 건축심의를 받으신 후 대수선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옥탑으로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가옥 대장 등에 등재하지요?
(시민전화)

☞ 건축법상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 지정 건폐율 이하로서 여유공지가 충분히 있을시 공동주택을 설계하려면 지하층 면세 규정의 혜택을 받는지요?
(시민전화)

☞ 공동주택은 여유공지가 충분히 있더라도 밀집 주거 환경이므로 민방위법에서 제정한 1인당 대피 면적을 계산하여 최소치의 대피소는 있도록 행정 유도합니다.

☞ 입지심도와 계획 미관심의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것을 먼저합니까?
(시민전화)

☞ 입지심도는 신청건물로 인한 주위환경의 변화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계획(미관)심의는 신청건물의 기능 및 외관을 심의하고 공동주택은 입지심의 후 계획심의가

이루어지며, 일반건물은 계획심의 후 입지심의가 이루어 집니다.

☞ 지역이나 직장 예비군관계 무기고를 지을 때 건축에 관한 세부사항이 있는지요?
(시민전화)

☞ 건축관계 법 규정에는 특별한 시설 제한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 한대지에 3동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시민전화)

☞ 한동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3이상의 대지인 경우 지을 수 있습니다.

☞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타인 대지를 사용 승낙 받아도 가능합니까?
(시민방문)

☞ 연립주택에 한하여 대지 사용승낙은 불가합니다.그 이유는 연립주택 분양시 대지소유권 이전 분쟁이 자주 야기 되어 취해진 조치입니다.

☞ 건물안전도를 검사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민방문)

☞ 인근건축사 설계 사무소나 대한건축사협회에 건물안전진단외뢰를 신청하면 됩니다.

☞ 주거지역내 주택의 조경면적은?
(시민전화)

☞ 법상 5% 이상이면 가능하나 10% 이상으로 행정 유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지하층 규정에서 여유공지를 인정합니까?
(시민방문)

☞ 인정합니다.

□ 기타규정

☞ 건축사법 시행령 제25조의 업무범위에서 연면적을 1동의 연면적으로 봅니다?
(회원전화)

☞ 연면적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법상 연면적이라고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 주거지역, 중치지구내에서 지목이전일 경우, 형질 변경없이 사업승인이 가능한 범위는?
(회원전화)

☞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할 경우 토지의 3/10 범위내에서 도로, 주차장 등을 포함, 형질 변경없이 가능합니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닐 경우는 도로로 볼 수 없는지요?
(시민전화)

☞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도로법, 사도법 등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도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에 포함됩니다.

☞ 지하층은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합니까?

(시민전화)

☞ 서울시 건축공사 안전규칙에 의하면 1m 이상 띄워야 합니다.

☞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자격에 있어서 일반 무주택자로서도 가능합니까?
(시민방문)

☞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지역조합이나 직장 조합에 한해서 주택조합이 가능합니다.

개정법령

- 아파트지구 기본 개발계획
- 주택건설촉진법
- 수도권내 공공청사등 건축규제
- 주택건설기준
- 건축물 개구부등의 기밀성능 시험방법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개정 (개정 5.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린주구"라 함은 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2. "주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기타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3. "지구중심"이라 함은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4. "분구중심"이라 함은 근린주구내에서 주구중심 이

외에 일용품의 소매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5. "저층아파트"라 함은 5 층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6. "고층아파트"라 함은 6 층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제3조 (지구개발계획수립의 원칙) 지구개발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의 고도화
2.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3. 도시경관의 제고
4.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5.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6. 일조·통풍·사생활권보호·공해방지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7. 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

제4조 (지구개발 계획의 도서) 지구개발계획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도	서	명	축	척	표	시	내	용	비	고
1.	지구의	현황도	1/1,200 ~1/6,000		○위치, 구역, 면적 ○지 형 ○용도지역지구등 도시계획사항 ○도시계획시설등 중요한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					
2.	종합개념도	임 의			○토지이용 ○시설의 배치 ○동선의 처리 ○녹지공간체계 ○기타 중요한 계획내용				계획구상도의 작성으로 지구개발계획의 목표 및 종합적이고 개략적인 상황과 그 상호관계를 표시	
3.	토지이용계획도		1/1,200 ~1/6,000		○지구내의 토지이용의 세분화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율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시설 ○세대밀도					
4.	가로망계획도		1/1,200 ~1/6,000		○계획도로의 종류 및 배치 ○주차장 ○기존도로의 현황 및 변경사항					

5. 건축규제계획	임의	○용도제한의 범위 ○건축선의 지정 ○전폐율 ○용적율 ○밀도규제 ○건축물의 높이 ○인동거리 ○대지안의 공지등	
6. 주구 및 지구중심계획도	1/600 ~1/1,200	○중심시설의 건축범위 ○중심시설의 규모 ○중심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7. 공급처리 시설 계획도	1/1,200 ~1/6,000	○상하수도 전기·가스·통신시설 등의 간선 ○난방시설의 방법 및 간선(지역난방에 한함) ○오물처리시설 ○공동구	간선시설을 표시하고 기존 시설 및 계획시설을 구분하여 표시
8. 기존건축물의 처리 계획	임의	○기존건축물조서 ○기존건축물의 분포상황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공공투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지구별 시행계획	

제5조 (토지이용 계획의 기준) ①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는 1,5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근린주구내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2 이상 100분의10 미만이어야 한다.

③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의 중심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3 이상 100분의10 미만이어야 한다.

④ 주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주구내의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주구 중심면적의 10분의3 미만이어야 한다.

제6조 (지구내의 도로설치) ① 지구내의 도로는 목적에 따라 간선도로·국지도로·근린주구내도로·보행자 전용도로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간선도로는 근린주구내를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 (지구내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 ①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의 범위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법 위

지구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일반숙박시설
○판매시설
○위탁시설
○관람접회시설(관람장제외)
○전시시설
주구중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
분구중심 ○일용품(식품·일용잡화)의 소매점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공시설
○운동시설
○유치원·탁아소·경로당
학교용지 ○학교시설
공원용지 ○근린공원시설

② 지구내에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도살장·공동묘지(묘지공원을 포함한다)·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가스공급설비(배관은 제외한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자동차점차시설은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건축물의 규모) ① 지구내의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구분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헥타르

연립주택 30%이하 3층이하 40내지80
저층아파트 25%이하 4층내지 5층 80내지150

고층아파트 20%이하 6층이상 150내지250

기 타 50%이하 5층이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9조 (공원의 설치기준) 근린공원은 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주구면적의 10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2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원 또는 공원에 준하는 녹지가 근린주구의 각 부분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주구면적의 20분의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량”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경미한 변경) 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음표에서 정하는 사항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동일항목에 대하여 2회 이상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내 용	범 위
근린주구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5 / 100이내
분구중심	면적 또는 위치변경	제한없음
주구중심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10 / 100이내
지구중심	면적의 증감 또는 위치변경	10 / 100이내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감 10 / 100이내

기 타 공동주택의 종류변경 10 / 100이내

② 도지사는 지구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개발계획의 고시) ①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도서(또는 사본)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2.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구성비 및 계획세대수)

나. 건축물규제사항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라.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구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개정 5. 20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50호”를 “20호”로, “5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1년내”를 “6월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1만평방미터”를 “3만3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제6항중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를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2년으로”를 “6월로”로 한다. 제4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 2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기관등의 지정)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 다음에 “와 한국공업규격은 제정되었으나 당해품목이 한국공업규격에 미달되어 동 규격표시를 할 수 없는 자재”를 추가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제15조의 2”를 “동법 제15조의 2”로, 동항제2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을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으로, 동항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2조제3항중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 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인 직장조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중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받게 하는 권한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별표1], [별표3]의 [부표]중 제8호 본문 가목 및 라목, 동 [부표]중 제19호 다목, [별표4]중 제2호 다목 및 라목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3]의 제3호 나목(2)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하고, 동호 다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나, 중소기업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별표3]의 [부표]중 제24호 가목중 “2,500cc”를 “2,500씨씨”로 하고, 동호 나목중 “2,000이상의”를 “2,000씨씨이상의”로 하며, 동호 다목중 “cc”를 “씨씨”로 한다.

[별표3]의 [부표] 제8호의 나목중 “다만, 읍면이하의 지역과”를 삭제한다.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 “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한다.

[별표3]의 [부표] 제23호의 다목의 매입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의 10 / 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별표4]의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지에는 매 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이 설치기준 이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7]의 제목 “주택자재의 등록 및 검사품목”을 “주택자재의 등록품목”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

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改正理由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樹立期間과 國民住宅 轉賣制限期間을 각각 短縮함으로써 住宅의 建設·供給을 促進하고, 貨貨를 目的으로 하는 住宅의 事業計劃承認權限을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는등 運營上 나타난 現行의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종래에는 單獨住宅의 경우 年間 50戶이상, 共同住宅의 경우 年間 50世帯이상의 住宅을 建設하는 者는 住宅建設事業者로 登錄하도록 하던 것을 住宅建設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어야 하는 対象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單獨住宅인 경우 年間 20戶이상, 共同住宅인 경우 年間 20世帯이상의 住宅을 建設하는 者는 住宅建設事業者로 登錄하도록 함. (令 第9條第1項)

나. 都市計劃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되는 아파트地區에 대한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樹立期間을 短縮하여 住宅建設을 促進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당해 아파트地區의 指定·告示가 있은 날로부터 1年 이내에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6月 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令 第23條第1項)

다. 國民住宅의 轉賣制限期間을 그 事業主体가 당해 住宅을 入住者에게 최초로 供給한 날로부터 2年으로 하던 것을 國民住宅의 分讓을 促進하기 위하여 入住者에게 최초로 供給한 날로부터 6月로 하도록 함. (令 第37條第1項)

라. 住宅組合중 職場組合의 構成員의 범위에 独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에 근무하는 者를 포함시켜 系列會社職員간의 組合住宅의 建設을 促進하도록 함. (令 第42條 第3項)

마. 垡地造成事業者의 登錄 및 登錄抹消에 관한 權限, 貨貨를 目的으로 하는 住宅의 事業計劃의 承認에 관한 權限과 住宅資材生産業者가 生産한 住宅資材에 대한 檢査命令에 관한 權限을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함. (令 第45條第1號, 第5號 및 第8號)

(법제처 제공)

수도권내 공공청사등 건축규제에 관한 지시 (5. 13일)

1. 수도권인구재배치기본계획의 추진에 관한 국무총리지시 제3호('77. 3. 16) 및 국무총리지시 제11호('77. 10. 21)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수도권의 과밀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규제 계획을 확정 시달하니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본 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본 계획에 의거 규제되는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의 사옥

으로 1982. 5. 13. 현재 공사중인 건축물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받은 후 추진토록 조치할 것.

3. 건설부장관은 동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통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내에서 행정기관 건축물의 신·증축을 계획 입안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사전 협의할 것.

첨부: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1부. 끝.

수신처: 가, 나 1.4.5

수도권내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계획

1. 규제대상구역

가. 정부청사 및 공공청사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전역

나. 교육시설 및 민간건축물

○수도권 8개시 9개군 각 일부로 하되 이전축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으로 세분하여 차등규제

○이전축진지역(2개시, 3개군 각일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양주군: 백석면, 주내면, 장흥면

고양군: 신도읍, 원당읍, 벽계읍, 일산읍, 지도면

남양주군: 구리읍, 미금읍, 와부읍, 별내면, 진전면

○제한정비지역(6개시, 6개군 각일부)

인천직할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군: 고촌면, 계양면

양평군: 서종면, 양서면, 강하면

광주군: 광주읍, 동부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서부면

시흥군: 소래읍, 외왕읍, 군포읍, 과천면, 수암면, 군자면

용인군: 수지면

화성군: 반월면

2. 규제내용

가. 정부청사

1) 원칙(금지)

가) 행정부기관 청사의 신·증축

나) 입법부기관 청사의 신·증축

다) 사법부기관 청사의 신·증축

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청사의 신·증축

2) 예 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정부청사의 지역단위 기관등

① 중앙기관의 차하급 지역단위기관과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기관청사의 신·증축으로서 수도권 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받은 때 허용

② 중앙기관의 차하급 지역단위기관에 소속하

는 지역단위기관청사의 신·증축 허용

나) 지방자치단체기관청사로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때와 읍면동 및 지파출소 청사는 허용

다) 군청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나. 공공청사

1) 원칙(금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본사 사옥의 신·증축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본사 사옥의 신·증축

다) 국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본사 사옥의 신·증축

라) 법률에 의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법인청사의 신·증축

2) 예 외: 금융, 보험, 증권, 무역, 관광, 체육, 언론, 통신, 보건위생기관으로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때는 허용

다. 교육시설

1) 이전축진지역내

가) 원칙(금지)

○대학의 신·증축

○전문대학의 신·증축

○서울도심 8km 이내 교교의 신·증축

○서울강북지역 사설강습소 신·증축

나) 예 외

기존 정원수용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수도권 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때 허용

2) 제한정비지역내

가) 이전축진지역내에서 금지된 교육시설로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때 허용

나) 이전축진지역 내에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교육시설은 허용

라. 이전축진지역내 민간건축물

1) 원칙(금지)

○21층이상인 사무소용 건축물의 신·증축

○11층이상인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신·증축

2) 예 외

도시재개발계획, 도시설계 및 특정지구정비계획에 의한 건축물로서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때 허용

3. 규제방안

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통제

4. 경과조치

가. 정부청사·공공기관건물로서 공사중인 건축물은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후 추진

나. 교육시설 및 대규모건축물로서 본조정계획 확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계속시행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개정5. 25)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규모별 및 대지의 규모별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설·공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적용제외)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특정가구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3조·제20조·제22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29조·제30조제2항·제32조·제34조 및 제35조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대지의 최소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최소폭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30미터,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지구안에 있는 매지로서 그 사업주체가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동주택건설용 대지로 사용하여도 수변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매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은 철도·고속도로·도로·공장 기타 소음발생원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소음발생원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방음벽 또는 수림대등의 차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시설등의 설치) ① 영 별표4 제1호 나목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특정가구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그 건축물을 포함하

다)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대피시설·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2.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특정가구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동부표 제11항의 업무시설 및 동부표 제13항의 판매시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장·동물 병원 및 장의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피난 계단을 포함한다) 및 승강기등은 그 주택이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화재등 비상시의 긴급대피에 용이하도록 하고,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 있어서는 다음의 시설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유치원 또는 탁아소로부터 7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소
2.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장·동물병원 및 장의사
3.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2항의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5항의 관람집회시설(이하 “관람집회시설”이라 한다)중 공연장 및 음식점
5.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9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위험물시설”이라 한다)중 주유소 및 위험물취급소

제5조의 제목 “(단위평면계획)”을 “(단위평면 및 각부위의 기준최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단위평면 및 각부위의 치수는 별표1의 기준최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공법에 의한 구조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복도 및 계단의 기준) ① 영 별표4 제1호의 계단·복도 및 계단참의 폭은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최도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단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동주택의 세대간 제벽은 50데시벨 이상의 차음 성능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제목 “(난간의 구조)”를 “(난간의 기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별표4 제1호 마목의 난간의 높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진개수거시설)”을“(먼지등 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2세대당”을 “3세대당”으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특수공법에 의한 구조로서 건설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립식주택부재로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마감재료) 주택의 각부위별 마감재료는 별표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건축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주택
3.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조립식 주택부재로 건축하는 주택

제12조 단서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단지”를 “대지”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중앙집중식난방방식”을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를 각세대의 현관밖의 벽체(계단실 또는 복도의 벽체를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단지”를 “대지”로, 동항의 표준도로의 폭(미터)란의 “10”을 “8”로 하고, 동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중 “단지”를 “대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1.2미터이상”을 “당해 현관의 폭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는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⑦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배수설비) 주택의 부엌·욕실·변소 및 세탁장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의 바닥에는 배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전화설치장소”를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주침실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의 행정구역안인 경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안의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교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은 하나의 단지에”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하나의 대지안에”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공동주택의 주된 출입구

등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세대별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중 “단지”를 “대지”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초과하는 때 세대당 0.05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산한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00제곱미터 까지로 할 수 있다.

제22조중 “단지”를 “공동주택대지”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 놀이터는 영 별표4 제2호 다목의 기준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폭을 6미터 이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1층 외벽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의 규모가 5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공중 변소 및 음수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시설기준의 완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중 상업지역·특정가구정비 지구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규모가 200세대이하인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200세대를 초과하는 때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초과하는 때 세대당 1.1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본문중 “단지”를 “대지안”으로,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를 “의료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중 “300세대”를 “500세대”로, 제2호중 “500세대”를 “1천세대”로,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이내”를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로 한다.

제26조중 “단지”를 “대지안”으로, “공중목욕탕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를 “공중목욕탕의 설치 희망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지로부터 1킬로미터이내”를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이내”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체육시설) ①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165제곱미터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300세대 이내마다 100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학교 및 공공운동장(유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정구장·배구장 또는 수영장중 1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운동장의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정구장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비상저수시설)”을“(공동저수시설)”로 하고, 동조 본문중 “단지에는 세대당 1톤(비상지하수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톤)”을 “대지안에는 세대당 3톤(지하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조경시설등)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안에는 건축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녹지안에 다음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규모가 1천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개소, 1천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천세대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가산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휴게소에는 5인용 긴의자 5개 이상을 설치하고, 휴게소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단디 및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3. 대지안의 도로 또는 통로의 양측 및 휴게소에는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비율로 휴지

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판매시설) ① 영 별표4 제2호 나목의 판매시설은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주택준공시까지 건설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영 별표4 제2호 나목에 적합한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판매시설은 식료품·외류품·문구류·다과류 및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과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판매시설이 있는 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이용원·미용원·약국·병원·의원과 관리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는 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별표1]·[별표3] 및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 및 [별표6]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1항의 개정규정은 대한주택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미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단위평면 및 각부위의 치수

구	분	기	준	척	도
총 고				2.6미터, 2.7미터 또는 2.8미터로 한다.	
천정의 높이				2.3미터로 한다. 다만, 반자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9제곱미터이하인 욕실(화장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엌·다용도실의 경우에는 2.1미터 또는 2.2미터로 할 수 있다.	
거실 및 침실의 단위평면				거실 1변의 길이는 3미터, 침실 1변의 길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되,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하여 이를 가산한다.	
욕실(화장실 겸용인 경우를 포함한다)·부엌(식				1변의 길이는 3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한다.	
당점용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식당의 단위평면					

[별표 3]

다스트슈트의 규격 및 마감등의 기준

구	분	내	부	단	면	적	마	감	상	태	등
슈	트	5 층이하의	주택	0.3제곱미터이상			내부면은 전개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6 층이상의	주택	0.4제곱미터이상							
저	장	5 층이하의	주택	2.8제곱미터이상			1. 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소	6 층이상의	주택	4.2제곱미터이상			2.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 및 청소용 급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쓰레기통	투입구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하거나 기타의 공법으로 악취가 주거내부로 들어올수 없도록 기밀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별표 5]

높이시설의 종류·시설기준 및 설치기준

높이시설의 종 류	높 이 시 설 의 시 설 기 준	높 이 시 설 의 설 치 기 준
그 네 미 끄 럼 대	높이 2미터이상인 2인용 그네 높이 2미터이상, 상제판의 넓이 2제곱미터이상, 활주면의 너비 0.5미터이상, 착지판의 길이 0.6 미터이상, 활주면 2개이상	○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2층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4층)의 높이시설 각1조 이 상을 설치한다.
철 봉 씨 이 소 오	대·중 및 소형의 철봉 씨이소오판의 높이 0.5미터이하, 씨이소오 판의 길이 3미터이상, 씨이소오판 3개이상	○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세대를 초과하는 200세대이내마다 4층의 높이 시설을 각1조의 비율로 가산한 수 이상을 설치한다.
정 글 점	높이 2.5미터이상, 폭 4미터이상(원형인 경우 에는 폭 2.5미터이상)	
래 디 회 전 무 대	높이 1.5미터이상, 폭 1미터이상 무대의 높이 0.3미터이하, 무대판의 직경 2 미터 이상	○높이시설의 주변에는 모래 두께 0.3미터 이상인 모래 판을 각각 설치한다.
모 래 판 공 중 변 소	넓이 6제곱미터이상, 모래두께 0.3미터이상 수세식으로서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및 세면 기 1개이상	○1 개의 높이터마다 1 개소이상 ○1 개의 높이터마다 1개소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어 린이높이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이용이 가능한 공 중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의 높이터마다 1개이상을 설치한다. ○1 개의 높이터마다 대지안의 주택의 규모가 50세대 이 상인 경우에는 6 개, 5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3개 이 상을 설치한다.
음 수 기 간 의 자	1 인용 5 인용	

건축물의 개구부 등의 기밀성능시험방법 (5·19일)

1. 적용범위

- 1.1 이 시험방법은 건축물의 외기에 면하는 창· 출입문 및 커튼월(조립식 부재의 벽체를 포함한다)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 1.2 이 기밀성능 시험은 2에 규정하는 시험체를 3에 규정하는 기밀시험장치로서 4에 규정하는 풍압차를 주어서 5에 규정된 기밀성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체

- 2.1 시험체는 그 구조를 실제의 것과 동일하게 제작한 것이거나 시판품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기밀성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밀성능상 약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함시킨다.
- 2.2 시험체의 크기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 표준상세도에 적합하게 제작한 것으로 하되, 가로 세로가 각각 2,38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틀재의 바깥치수가 2,380mm로 되도록 틀재를 조정하여 시료를 제작한다.
- 2.3 시험체의 표준형상
 - 2.3.1 시험체는 틀을 포함하여 완전한 조를 이루도록 제작하되 제작방법은 실제로 시공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한다.
 - 2.3.2 모든 창호철물의 부착위치 및 창틀과 창호의 고정은 실제현장에서 시공하는 것과 동일하도록 한다.
 - 2.3.3 시험체는 실제 시공상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기밀시험장치

- 3.1 기밀시험장치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압력상자· 기밀상자· 송풍기· 압력조정기· 벤츄리관· 직류전동기· 기록제· 풍속계로 구성된 것으로 하며 2에서 규정하는 시험체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고, 시험체 고정용 틀은 기밀성과 내풍압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3.1.1 압력상자는 송풍기에 의해 4에 규정한 각각의 풍압을 시험체의 전체면에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로서 송풍기에서 발생한 바람이 시험체에 직접 가해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 3.1.2 기밀상자는 시험체를 통해 누출된 풍량을 벤츄리관으로 배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1.3 송풍기는 일정한 압력으로 풍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1.4 압력조정기는 송풍기에서 발생시킨 풍압을 4에 표시하는 각각의 풍압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1.5 직류전동기는 송풍기의 운전동력원으로 사용되며 회전수의 제어에 의해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1.6 기록제는 X-Y 레코더로서 압력상자와 기밀상자와의 차압과 벤츄리 관내의 풍속을 동시에 기록해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1.7 풍속계는 벤추리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1.8 차압계는 압력상자와 기밀상자와의 압력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3.2.9 시험중 시료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용 창은 압력상자와 기밀상자에 각각 2개이상 설치하되 사용하는 유리는 내풍압성이 있고 틈으로 공기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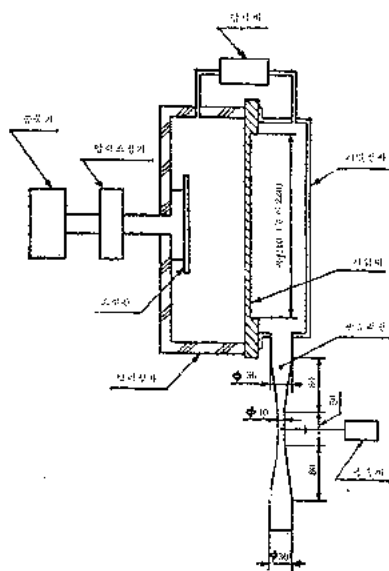
4. 풍압차

- 4.1 풍압차는 압력상자와 기밀상자와의 풍압의 차이로서 표 1과 같이 4 등급으로 구분한다.

(단위 : mmH₂O)

풍 압 차	10	15	30	40
-------	----	----	----	----

표 1. 풍 압 차



(단위 : cm)

(그림 1) 기밀시험장치

표 2. 기 밀 시 험 결 과

상 품 명						
시 험 체 명						
제 작 자						
시 험 체 제 작		년	월	일		
시 험 일 시		년	월	일		
시 험 체 외 시 방						
결 과	가 압	압 력 차	10mmH ₂ O	15mmH ₂ O	30mmH ₂ O	40mmH ₂ O
	벤츄리관풍속	풍 속				
		풍 속 차				
	벤츄리관 통기량(Q)		m ³ /h	m ³ /h	m ³ /h	m ³ /h
	시험체의 틈길이(ℓ)		m	m	m	m
	통 기 량(Q/L)		m ³ /hm	m ³ /hm	m ³ /hm	m ³ /hm
	시험체의 잔류변형					
	중 합 판 정					

1. 시험체의 상세도를 첨부
2. 시험체의 잔류변형 도면을 첨부

5. 시험방법

- 5.1 시험체의 부착은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방법과 가급적 동일하게 하되, 시료는 외기에 면하는 부분을 압력상자 방향으로 설치한다.
- 5.2 시험체의 설치가 완성되면 시험전에 창 또는 문을 각각 5번씩 여닫기를 한후 깨끗이 크레센트등 부착된 잠그는 철물로 삼는다.
- 5.3 시험체의 전면에 10mmH₂O의 압력차를 5분간 가한 후, 4에서 규정한 풍압차를 가하여 각각 1분간 시험을 실시하며 동일시료에 대하여 2회 시험을 실시하여 풍기량의 허용오차가 ±1% 이내이어야 한다.
- 5.4 시험체의 실내측면 및 실외측면의 봉인부분의 훼손여부를 시험을 실시하면서 계속하여 관찰한다.

6. 시험결과와 처리

- 6.1 시험결과는 각각의 압력차에 대하여 2회 시험을 실시하여 그중 불리한 것을 채택한다.
- 6.2 X-Y 레코더에 위해서, 각각의 차압에 따라 시료를 통과한 공기가 벤추리관으로 밀어내는 공기의 순간 풍속을 측정하고 측정된 풍속에 벤추리관의 단면적을 곱하여 1시간 동안에 누출되는 풍기량을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text{창틀의 길이당의 풍기량} = Q/L \text{ (m}^3/\text{hm)}$$

여기에서 L : 창틀과 창 및 창과 창이 맞닿는 길이의 합으로 한다.

6.3 시험결과와 보고

시험결과는 표 2의 양식에 따라 기록한다.

斷熱
吸音材

자재의 종류와 시공법

□ 斷熱·吸音材

(1) 리스골재

인공경량골재의 일종으로서 경량, 단열, 보온, 방음 및 방습, 방수의 우수한 효과를 지닌 球型의 발포 프라스틱 표면에 접착제를 塗布한 후 시멘트 몰탈을 被膜하여 養生시키는 리스골재와 시멘트 몰탈대신 연화점이 낮은 무기질 세립을 피막하여 소성(600℃~1,000℃) 하므로써 内部에 일정한 기공을 형성시키는 리스소성골재가 있다.

[성질]

골재는 완전한 球型을 이루고 있으며 골재의 組織과 内部의 氣孔이 균일하게 독립되어 있다. 골재의 크기는 발포 프라스틱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骨材의 비중(0.5~1.5 t/m³)과 강도는 피막층의 두께에 따라 조절된다.

[특징]

하중의 경감, 균일한 구조강도와 하중분포, 우수한 耐火度, 탄성에 의한 구조물 및 제품의 수명연장, 우수한 吸音, 차음성, 우수한 방수, 방습 효과를 기할수 있다.

[용량]

경량, 단열, 방음, 방습을 요하는 모든 건축 및 토목용 시멘트와 콘크리트 제품, 고층빌딩, 아파트, 주택, 공장 조립식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및 블록, 시멘트기와, 경목대체용 콘크리트로 고가도로에 쓰인다.

(2) 암면

암면은 규산 칼슘계의 광석을 적당 배합하여 1500℃~1700℃의 고열로 용융 액화시켜 압축공기 또는 고압증기로 분사하여 만든 순수한 무기질 섬유이다.

[특징]

단열성, 섬유가 가늘고(4~8 μ) 불량 입자가 미소하므로 이상적인 기공을 형성하여 열 전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보온, 보냉에 최적하다.

인화성; 재료가 무기질이므로 불연성이며 내열도 높아서 건축물의 내화재로 사용됨.

흡음성; 수많은 기공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흡음율이 높아 吸音 또는 방음재에 최적.

경량성; 材質自体가 輕量이므로 하중이 적고 유연하며

탄력이 좋아 복원율이 높음.

耐久·耐候性; 암면은 알칼리 산화물이 전혀 없으므로 風化作用에 의한 열화현상이 없어 부패 또는 변질하지 않고 거의 영구적임.

[종류 및 용도]

(가) 산면(Loose Wool): 전조로 금고, 방화문, 용광로 기타 공간충진재, 철골 내화피복, 석회 등의 수련혼합 미장재료, 기타 절연재로 사용.

(나) 부랑웜(Blanket): 일반적으로 주택, 빌딩, 공장 등 건축물의 천정, 벽, 닥트, 파이프에 사용되고, 공장용으로는 차량, 선박, 전조기, 탱크, 보일러 등에 사용되며 보온, 보냉, 단열, 방음, 흡음, 결노 방지 등의 효과가 우수.

(다) 펄트(Felt): 100이하의 연질판은 단열, 방음, 결노 방지 등에 사용되고 100이상의 변질판은 고노, 전조노, 보일러등 고열을 차단, 보온에 사용된다.

(라) 리지드 보드(Rigid Board): 슬라브천정, 바닥, 벽의 보온, 단열, 방음, 결노방지등에 사용.

(마) 보온관(Pipe Cover): 냉온수 및 유류, 스팀, 파이프등의 보온 보냉용으로 사용되며 용도에 따라 은박지, 아스팔트지 등으로 방수 처리하여 사용한다.

(3) 유리섬유

유리섬유로 良質의 珪石을 主原料로 하여 長石等を 適量 配合하여 高温(1500℃~1600℃)으로 熔融 섬유화한후 다시 특수 Burner 에 의하여 火焰噴射된 미세 무기질 섬유이다.

[특성]

(가) 불연: 무기질의 유리섬유로 되어 전혀 불에 타지 않는다.

(나) 단열: 열전도율이 극히 낮으므로 단열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다) 흡음: 극히 작은 섬유로 조직된 무수한 작은 공공기질로 되어 있어 음파를 잘 흡수하므로 격음, 잡음이 주는 불쾌감을 제거해 준다.

(라) 복원·위생: 彈力이 우수하므로 강한 충격이나 진동에도 복원력이 뛰어나며 산성, 알칼리성에 강한 충격이므로 곰팡이나 부식에 강함.

(마) 시공: 경량으로 시공이나 운반이 간편하며 특히 절단은 칼, 가위등 일반도구로도 가능.

[용도]

(가) 주택용: 벽, 천정, 지하실, 마루바닥등

(나) 공기조화: 냉난방 설비용, 보온 보냉 창고등

(다) 수송기관용: 선박, 항공기, 냉동 컨테이너등

(라) 기타용: 음향설비, 보일러, 송 배풍기등

(4) 실리콘(Silica)

실리카는 백색의 광물성 규산질 분말과 석면등을 화학 반응하여 수열 합성한 보온 단열재로서 보온판(보—드) 보온통(카바) 블록(Block) 등의 제품이 있다.

[특성]

(가) 내열성: 다른 보온재에 비해 고온에서 사용가능

(650℃)하다.

(나) 시공성: 가볍고 강도가 높아 시공이 간편하다.

(다) 경제성: 열전도율이 극히 낮아 연료 소모율을 저하시키며 재사용도 가능하다.

(라) 내수성: 내수성이 강하며 수분을 흡수해도 와해되지 않는다.

[용도]

모든 종류의 熱設備, 발전소의 配管 및 가공업 공정 등에 있어서 650℃ (1200°F)까지의 온도에 保温斷熱材로 사용됨.

(5) 밤라이트·나무라이트

밤라이트는 석면과 시멘트를 주원료로 무기 혼화제를 특수배합하여 10,000M/T 프레스로 강압 제조한 형판으로 합판과 평슬레이트가 갖는 현대 건축자재로서의 장점을 이상적으로 보완한 불연 내장재임. 나무라이트는 밤라이트 바탕위에 나무무늬의 다양한 색상으로 처리되어 친근감과 안정감을 주는 반영구적 미장재로 신축변형 및 처짐이 없어 시공후 평활한 면을 유지해줌.

[특성]

(가) 방화성: 시멘트와 무기질 섬유를 주원료로 만든 자재로써 섭씨 750℃에서도 타지않기 때문에 불연성이 높은 미장 내장재로서 건물 골조의 조기 방화 연소 지연에 큰 역할을 함.

(나) 강도: 10,000M/T 프레스로 압축되어 폭강도가 높고 가소성이 풍부하며 내충격성이 좋음.

(다) 시공성: 시공이 용이하며 절단할 때는 보통톱으로도 충분함.

(라) 차음성: 시멘트와 석면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다른 자재에 비해 우수한 차음성능을 가지므로 도시소음을 차단해 줌.

[용도]

벽체, 칸막이 천정용 등

(6) 아미텍스

아미텍스는 석면, 석회 및 기타 무기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하며, 석면으로 강화된 견고한 결정체로서 안정된 천정용 불연재임.

[특성]

(가) 방화성: 화재를 예방하고 화염속에서도 연기나 유독개스가 발생하지 않음.

(나) 가공성: 톱질, 못질, 대패질이 가능.

(다) 안정성: 100% 무기질이므로 조직적으로 안정되어 열, 수분에 의한 변형변질이 없고 耐久력이 강함.

(라) 보온, 단열, 흡음성이 우수

[용도]

사무실, 학교, 강당, 공장, 지하도, 일반주택 등의 천정재로 사용하며 완벽한 흡음을 요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최적.

(7) 나무라이트 吸音板

밤라이트판에 흡음효과가 좋은 구멍을 뚫고 특수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고급 미장재로서 규칙적으로 구멍을 배

열한 AB-1 형과 구멍의 크기를 달리하여 불규칙적으로 조화시켜 외장의 효과를 살린 AB-2 형이 있음.

[특성]

(가) 주원료가 무기질로 이루어진 1급 불연재임.

(나) 구멍의 배열과 크기를 잘 조화시켰으므로 吸音效果가 우수할뿐 아니라 미려한 외장효과를 기대.

(다) 耐久性이 강하여 그 수명은 반영구적임.

(라) 정확, 균일한 규격품으로 시공이 간편함.

[용도]

사무실, 학교, 강당, 공장, 지하도, 다방, 일반주택, 방송국, 스튜디오 등의 흡음용으로 사용.

(8) 판넬

化粧鋼板 뒷면에 人造 岩綿板을 부착시키고 Fanel을 Frame에 끼워넣는 방식을 벽, 천정 전면에 걸쳐 채용한 것임. 이 鋼製 Frame의 용접조립은 공장에서 작업함으로 鋼製 Frame의 組立과 Pannel 끼워넣기 작업만이 현장시공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현장 天井骨體, 壁材의 작업을 생략할 수 있고 天井 Frame은 1m×1m의 간격으로 가능함으로 天井 Frame 取付後에도 配管, 取付 작업이 용이하며 配管의 併行작업도 가능하다.

[특징]

(가) 완전한 不燃構造 (나) 遮音效果 크다 (다) 진동에 강함 (라) 보수 용이 (마) 모델화된 設計 (바) 内外裝工數의 삭감 (사) 착신한 色相

[용도]

지하철점차고, 사무실, 칸막이등.

(9) 石膏플라스터

[특징]

(가) 斷熱材: 열전도율이 낮음으로 동절에는 외풍이 적어 따뜻하고 연료비가 절감되어 경제적임.

(나) 附着性: 콘크리트벽 또는 블록 벽돌면에 대하여 부착력이 강하므로 落土量이 적음.

(다) 균열이 적음: 팽창계수가 적어 평면이 곱고 균열이 생기지 않으며 접촉면에 틈이 생기지 않음.

(라) 不燃性: 불연내장재임.

(마) 防音性: 防音性이 좋아 차음효과가 좋음.

(바) 경량성: 다른 내장재와 달리 경량하여 건축비가 절감됨.

(10) 화이버 그라스

화이버 그라스 50m/m의 단열효과는 약 40배 무게의 2m짜리 콘크리트 벽과 같은 효과로서 保温材中에서 최고의 단열성을 지니며 열전도율 0.03kcal/mh°C는 냉·난방비의 약 40%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임.

[특성]

(가) 흡음성: 극히 미세한 섬유로 形成된 수많은 氣室은 소리를 충분히 흡수하는 높은 吸音係數를 가지고 있다.

(나) 不燃性: 유리線保温機의 원료는 無機質의 유리로써 타지 않을뿐 아니라 연기나 유독개스를 발생하지 않으며 우수보온재 (열 8 - 1003) 임.

(다) 化學性: 내후성이 강한 熱硬化性 樹脂樹脂로 처리

되어 있어 화학적으로 저항력이 강하여 부패되지 않으며
防虫효과가 큼.

(라) 施工性: 비중이 텍스類의 1/10인 0.01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운반, 보관이 쉽고 절단이 간편하며 탄력성이 우수하여 시공중이거나 시공후에 강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아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

(11) 그라스·울

[특징]

(가) 斷熱性: 高温, 低温을 차단하는 단열 효과가 우수함. 열전도율이 $0.0271 + 0.00016\theta$ (kcal/mh $^{\circ}$ C)로 他 斷熱材보다 열전도율이 대단히 낮음.

(나) 吸音性: 두께 25mm 세품의 경우 1000Hz에서의 흡음율은 84%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250~4000Hz의 광범위한 소음을 흡수함.

(다) 復元性: 가는 섬유를 熱 硬化性수지로 결합해서 無數한 氣泡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復元性이 우수할뿐 아니라 충격이나 진동을 받아도 沈下되지 않고 항구적임.

(라) 위생성: 쥐나 害虫에 강하며 부식되지 않음.

(마) 시공성: 가볍고 유연하기 때문에 운반이 편리할뿐 아니라 재단이 간편하고 SJ그라스 울은 섬유화되지 않은 유리粒이 없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하지 않음.

(12) 스팅드렐

근대 양식에 맞는 직선적인 미와 1.3mm단축을 기할수 있는 冷間成型 가공방식의 규격품이며 재료로는 메라민燒付鋼板, 비닐코팅鋼板, 비닐프린트鋼板, 알루미늄板을 사용한 것임.

(13) 텍스

보통두께는 4mm이며 시멘트 물탈 후벌 바르기(木고데), 스테이프, 배니아板 위에 기재로 스프레이한다.

[특징]

準不燃材料이며 防音, 단열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견고하며 우아미려한 임의의 벽을 시공할 수 있다.

(14) 蛭石骨材

蛭石이란 운모계의 광물을 燒成한 극히 가볍고 탄력성을 지닌 無機物로써 斷熱不燃, 保溫, 防音, 결로 방지의 특성을 지닌 건축 자재이다.

(15) 스티로폴(Styropol Polystyrene Foam)

[특징]

(가) 斷熱 保溫性 (나) 耐충격성 (다) 施工法 간단
(라) 耐候耐久性 (마) 防音, 吸音性

[용도]

각종 건축공업材 및 冷凍食品工業, 造船工業 등에 있어서의 斷熱材, 防音材, 防震材, 防水材임.

[板型類]

(가) 3자×6자 平板 (나) 4자×8자 平板 (다) 2자×3자 成型片板

(16) 石膏보드

2매의 강인한 석고보드 원지 사이에 石膏가 안정된 상

태로 硬化되어 있는 제품임.

[특성]

(가) 방화성: 석고자체가 완전한 불연성 물질일뿐 아니라 석고자체가 약 21%의 결정수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가열하면 결정수가 열분해를 일으켜 결정수의 방출이 끝날 때까지 온도상승을 막으므로 연소지연 역할을 한다.

(나) 단열성: 석고자체의 열전도율이 극히 낮으므로 여름, 겨울 등 외기온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실내 온도 조정이 극히 용이하여 석고보드의 열전도율은 두께에 따라 다르나 약 0.11kcal/mohc이다.

(다) 차음성: 석고보드는 재료구성이 복합재이므로 우수한 차음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석고보드로 시공한 벽과 천정은 도시공해인 소음을 완전 차단함.

(라) 부식축성: 석고자체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이므로 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라 신축 변형이 극히 적으므로 시공이 용이하고 시공후 신축이 뒤틀림, 처짐 등이 없다.

(17) 인슈로 화인

[특성]

(가) 단열성(보온, 보냉효과, 기타 기재보다 연료 40% 절감)

(나) 불연성(무기질로 된 법정불연재)

(다) 흡음성(최고의 흡성, 방음성능)

(라) 비흡습성(수분을 거의 흡수치 않는다. 온도 50 $^{\circ}$ C, 상대 습도 95%의 밀폐용기에 100시간 방치하였을 때 흡수율은 1.5% 이하임).

(마) 청결, 위생성(방서, 방충에 우수하여 청결, 위생적임).

[용도]

일반건축, 빌딩, 주택의 천정내장재, 흡음천장용.

(18) 하이톤 파넬

하이톤 파넬의 兩面은 10,000ton 프레스로 加壓下에 生産되는 特殊石綿 시멘트板으로 加工처리하고, 芯材는 難燃性 스티로폴, 氣泡콘크리트, 鐵製하니캄 및 無機質 材質로써 完全 不燃性 輕량재로서 壁體用 파넬이다.

[특성]

(가) 경량: 芯材의 體比重 0.02gr/cm 3 (스티로폴), 0.5gr/cm 3 (氣泡콘크리트), 0.024gr/cm 3 (鐵하니캄)로써 가장 경량임.

(나) 斷熱: 芯材의 열전도율 0.02~0.09kcal/mhr $^{\circ}$ C로써 보통 콘크리트(1.3kcal/mhr $^{\circ}$ C)에 비해 약 15~100배 이상의 단열효과가 있다.

(다) 遮音: 두께가 30mm일 때 平均 35db이상의 투과손실을 表示.

(라) 耐久: 하이톤파넬 全體가 무기질 또는 耐化學性으로써 老化腐蝕 虫害防止에 절대적이다.

[규격]

3'×6'×30~50m/m, 3'×8'×30~50m/m, 4'×8'×30~50m/m

建築의 基本設計形態와 工事費 比較參照

건축 설계면과 공사비 견적면에서 볼 때 건축물의 기본설계의 형태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음 표에서는 각 기본형태가 동일 면적일 때 각각의 형의 기본면적에 대한 둘레의 길이나 벽면의 면적 혹은 변화수치를 비교 분석한 예이며 이는 중국적으로

공사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 공사비 분석이나 도급의 설계 일괄입찰 업무 및 경제적인 설계 등의 제관점에서 재고해 볼 만한 분석 자료이다.

표 1. 平面形狀과 周長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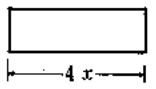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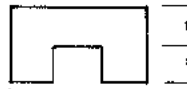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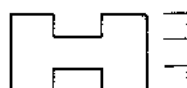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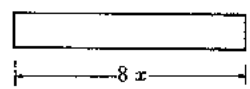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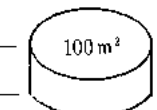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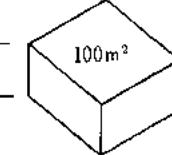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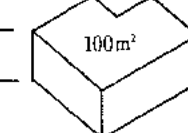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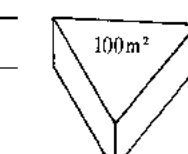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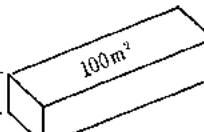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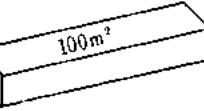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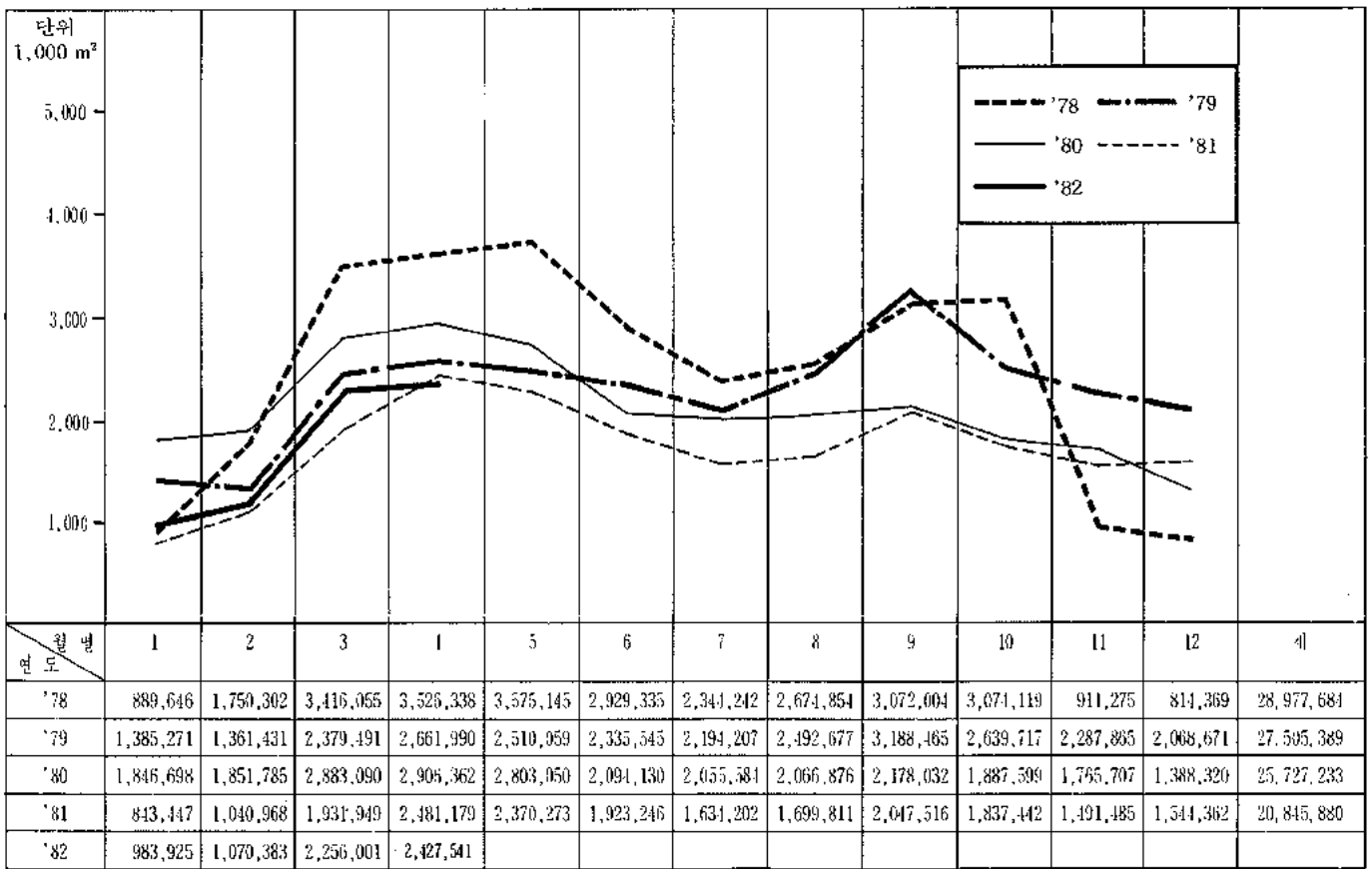
	平面形狀	短邊長 x	周 長 ℓ	正方形을 1로 했을 때의 長/面積比
1		1.124	3.55	0.89
2		1.000	4.00	1.00
3		0.577	4.64	1.16
4		0.500	5.00	1.25
5		0.500	5.00	1.25
6		0.472	5.37	1.34
7		0.381	6.05	1.51
8		0.354	6.36	1.59

표 2. 一定體積의 各 形態에 따른 壁面積의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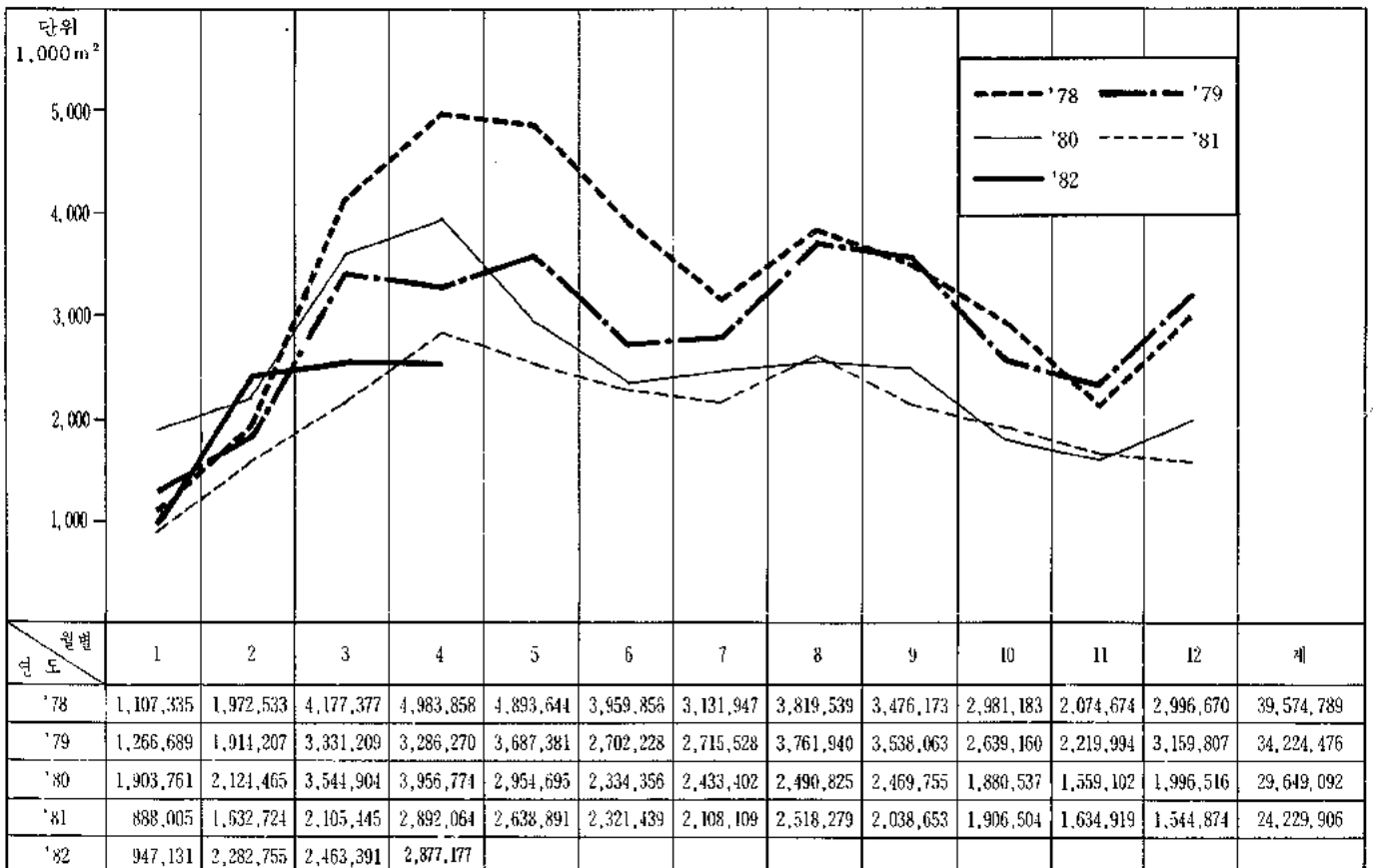
	형 태 및 체 적	벽 면 적	비 율(%)
1	 350m³	124.04m²	96.74
2	 350m³	140m²	100
3	 350m³	156.52m²	111.80
4	 350m³	159.95m²	114.25
5	 350m³	175m²	125
6	 350m³	297.5m²	212.50

건축허가(도서신고)면적 변동추세

(건설부집계 건축허가현황)



(건축사협회집계 도서신고현황)



新 入 会 員

□ 李明微 / 경기 / 16. 10. 29일생 /
경기공업학교건축과 / 대원강업(주)
/ 외정부시 의정부동186-8 / 3 -
0318



□ 金昌煥 / 서울 / 28. 12. 30일생 /
서울법대중퇴 / 박건축기술연구소/
서울 중구 예관동 56-10 / 269 -
7255

□ 李賢三 / 서울 / 37. 11. 1 일생 /
한양대건축 공학과 / 태우건축연구
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317-4 /
477 - 4198



□ 朴 昇 / 서울 / 44. 7. 27일생 /
홍익대건축공학과 / 주·삼우종합
설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
154 / 783 - 6926

□ 朴昌浩 / 경북 / 49. 6. 23일생 / 동
국대건축공학과 / 엄&이건축연구
소 / 서울 종로구 관훈동151-1 /
723 - 0715



□ 趙敬行 / 중남 / 51. 7. 12일생 /
인덕공진건축과 / 남아건축연구소/
서울 종로구 원남동 66-66 / 762
- 8200

会員動靜

- 7 / 87-1049 / 3 월15일△김우승회
원 / 청구건축설계사 / 중구충무동 2 가
33 / 23-0667 / 3 월27일△한기중회원
/ 청구건축설계사 / 중구충무동 2 가33
/ 23-1447 / 3 월27일△송규태회원 /
부영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거제동61
7-18 / 83-6809 / 3 월26일△류광택
회원 / 오주건축설계사 / 서구부민동 1
가7-1 / 22-5969 / 3 월27일△손병찬
· 박형태회원 / 예일건축설계사무소 /
동래구수안동 593 / 52-1526 / 3 월26
일△강기영회원 / 신중합설계사 / 중구
충무동 2 가33 / 22-4150 / 4 월14 일

□ 대구지부 = △김충삼회원 / 삼협건
축설계연구소 / 대구시중구봉산동303/
45-4744 / 4 월20일△최강호회원 / 전
영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남구대명동
1140-4 / 66-5403 / 4 월23일△방한
수회원 / 삼호종합건축사무소 / 대구시
중구삼덕동 2 가 149-15 / 45-4109

□ 경기도지부 = △김동명회원 / 한양·
현대합동건축설계사무소 / 성남시대평
동384 / 2-8100△김후곤회원 / 영화전
축사합동사무소 / 부천시원미동90-7
/ 62-3553△한충실회원 / 영화건축사
합동사무소 / 부천시원미동92-7 / 62
- 3934△서낙규회원 / 삼성·신용합동

건축설계사무소 / 부천시원미동90-6
62-1131△강지원회원 / 삼성·신용합
동건축설계사무소 / 부천시원미동90-
6 / 63-4551△한태희회원 / 대성종합
건축설계 / 부천시삼곡동542-5 / 62-
3553

□ 전남지부 = △주효승회원 / 상아전
축연구소 / 단종제 7 호 / 2-5538△김
성봉회원 / 동인천축연구소 / 단복제17
호 / 2-6865 / 4 월29일

□ 경북지부 = △이명환회원 / 연합전
축설계감리공단 / 포항시죽도동43-16
/ 5723번 / 4 월 9 일△최종배회원 / 제
일종합건축설계사무소 / 포항시죽도 2
동48-2 / 2-2421 / 5 월14일△최준
한회원 / 세진건축설계사무소 / 포항시
죽도 2 동48-7 / 3-2559 / 5 월14일
△양임수 / 세진건축설계사무소 / 포항
시죽도 2 동48-7 / 3-2559

□ 서울지부 = △박인원회원 /
우창건축연구소 / 종로구서린
동127/인천으로 / 4 월23일△안영준회
원 / 협신건축 / 도봉구수유동174-29/
경기동두천으로 / 5 월14일

□ 대구지부 = △구경광회원 / 삼협건
축설계연구소 / 대구시중구봉산동303/
45-4744 / 4 월20일△최강호회원 / 전
영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남구대명동
1140-4 / 66-5403 / 4 월23일△방한
수회원 / 삼호종합건축사무소 / 대구시
중구삼덕동 2 가 149-15 / 45-4109

서울로 / 4 월26일

□ 강원지부=△한능순회원/동해건축설계사무소 / 동해시말한동32-7 / 서울로 / 5 월12일

□ 서울지부=△김학근회원/김건축연구소 / 강남구방배동 811-1 / 4 월24일△민대식회원 / 민건축설계 / 관악구봉천동1540-47 / 5 월3 일

□ 경기지부=△조기영회원 / (주)삼우건축설계 / 남양주군구리읍교문리 200-2 / 4 월27일

□ 서울지부=△김태완 회원 / 정건축연구소 / 강남 서초동67-3 / 4 월15일△강효석회원 / 한국종합건축 / 용산구이촌동300-263 / 5 월26일

□ 경기지부=△황용영회원/미성건축설계연구소 / 가평군가평읍읍내리495-38 / 4 월26일

□ 서울지부=김정환회원 / 도아건축설계사무소 / 4 월26일△노재일회원 / 삼우합동설계사무소 / 5 월13일△홍광철회원 / 동우합동 / 5 월20일

□ 경기지부=△오재영회원/삼우건축설계 / 4 월27일

□ 경기지부=△이병일회원/영식 / 귀빈예식장 / 4월24일△김영복회원 / 영애 / 전주예식장 / 5 월7 일△한태희회원 / 장남 / 신촌장로교회 / 5 월13일△김진두회원 / 영식 / 수원중앙예식장 / 5 월18일△신현수회원 / 영식 / 수표교회 / 5 월22일

□ 충남지부=△조정환회원 / 결혼 / 대전로얄예식장 / 5 월9 일오후 2 시

□ 서울지부=△강윤석회원 / 장녀결혼 / 대아예식장 / 5 월11일 △김화옥회원 / 신라예식장 / 5 월16일 △윤정중회원 / 4 남전혼 / 5 월28일

□ 부산지부= △현태근회원 / 대웅

도형건축 / 결혼 / 새부산예식장 1 층 / 5 월14일△권경형회원 / 신흥설계사 / 영애결혼 / 서라벌호텔 3층 / 4 월25일

□ 경기지부=△이병일회원/자택에서 / 4 월12일

□ 충남지부=△유경석회원 / 모친회갑 / 온양읍온천리 / 5 월9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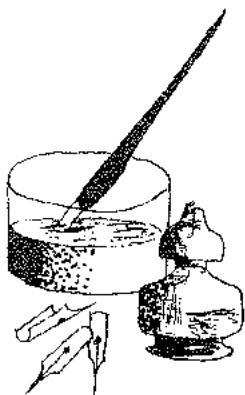
□ 서울지부=△허찬화회원 / 부친수연 / 수명관 / 5 월11일△ 문창수회원 / 모친수연 / 풍년작 / 5 월13일

□ 경기지부=△강응원회원/한성의원에서 / 4월11일△신명호회원 / 부인 / 자택 / 5 월22일△황재성회원 / 부친 / 자택 / 5 월22일△강신희회원 / 모친 / 자택 / 5 월23일

□ 서울지부=△박희선회원 / 모친별세 / 자택 / 5 월21일

□ 부산지부=△김충부회원 / 신세제합동설계사무소 / 부인사망 / 5 월12일

◆ 編輯 後 記 ◆



□ 본회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하는 순회 전시회가 열린다. 자그마치 30일 이상 전국 5개 도시를 다니며 열리는 전시회로서 그에 따른 준비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처음에서 끝까지가 늘갈을 수는 없지만 크게 다르다면 그것도 문제다. 장마철을 앞둔 농부의 걱정처럼 농사나 망치지 않았으면...

〈用〉

□ 분주했던 달이다. 회지를 제작하다, 순회작품 전시회 준비를 하라, 이럴 땐 손발이 하나 둘 쭈뼛 있었으면 싶다. 그러나 일상생활 안에서 언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 불안하고 비록 만사가 순조로울 경우에도 완전히 순조롭지 않음을 안다. 다만 이러한 경황 속에서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랄 뿐이다. 창 밖의 가로수나 못있는 진록색 푸르름이 무성하다. 이제야 여름이 내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낀다. 계절의 감각에 둔한 것도 아닌데! 〈基〉

□ 강렬한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어떤 목적이 있는 시작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시작이든 간에 그 시작은 매우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큰 것 같다.

6월 중에 열릴 전시회 행사가 그런 기대 속에 한창 준비 중이다.

초여름의 날씨 속에서 빈틈없는 행사가 되도록 모두의 손길은 마냥 바쁘기만 하다. 〈宙〉

□ 우리 시대의 暴力, 그것은 美麗하면서도 豊富한 言語이다.

쓰잘 데 없이 많은 것은 貧困을 의미한다. 아무 데나 있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없다. 思考와 거기에 따른 말끼리의 約束은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 이행되지 않는 약속은 차라리 暴力이다.

暴力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暴力에 시달리는 苦痛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역시 아무도 없다.

왜일까?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자 때문이 아닐까?

約束, 그 단어란 지켜지지 않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사전에서 지워져 적어야 할 필요없는 贅餘이다. 모든 것이 그러한 사실을 앞으로써 社會는, 會다와질 것이다. 〈京〉

案内

'82 會員建築設計作品 巡廻展示會

지 역	일	시	장 소
서 울	'82. 6. 14 ~	6. 19	회 관 전 시 장
부 산	6. 21 ~	6. 26	부산대파트 4 층
대 구	6. 28 ~	7. 3	시 민 회 관
광 주	7. 5 ~	7. 10	자 부 회 관
대 전	7. 12 ~	7. 16	시 민 회 관



主催：大 韓 建 築 士 協 會

後援：建 設 部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建築相談案内 ●

本회에서는 市民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설계 및 시공·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 월~금요일 /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 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1층 / 722-7653 · 7685

플로트 공법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플로트 유리시대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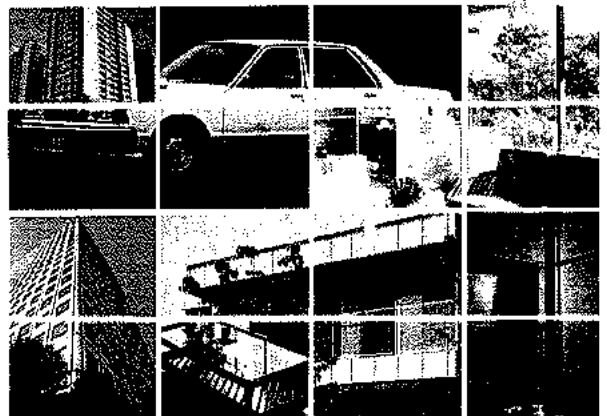
플로트 유리(Float Glass)란 인류가 발명해 낸 유리 중 가장 고급스런 품질의 유리로, 플로트 공법으로 만든 유리를 말합니다.

종래 멋진 환경을 꾸미시는 분, 품위있는 건물을 짓는 많은 분들이 찾았던 英國製 유리, 그것이 바로 플로트 유리로 韓國유리가 새로이 생산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영국의 필킹톤社(Pilkington Brothers Co.)가 개발하여 세계적 특허를 갖고 기술을 보급한 이 플로트 工法은, 금속욕조(Tin Bath)에 朱錫(Tin)을 녹여 그 위로 유리물을 水平으로 흘러보내 만드는 製造方法을 말합니다.

따라서 플로트 유리는 表面이 아주 고르며, 大型化가 가능하고 또 모든 工程을 컴퓨터로 조정하므로 결점없는 최고의 品質이 보장됩니다.

이 플로트 유리는 세계에서 10여개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을뿐인 세계적 제품입니다.



플로트 유리의 장점

1. 視覺 장애가 전혀 없습니다.
2. 모든 工程을 컴퓨터化 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상대적으로 價格이 저렴합니다.
3. 모든 加工유리(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製鏡유리, 기타)에 이상적입니다.
4. 厚板유리는 그 자체로서 防音, 防熱의 효과를 냅니다.
5. 두께와 規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품특성

두께 (%)	투과특성					열전도율 Kcal m ² hr ⁻¹ °C
	가시광선 (%)	투과율 (%)	반사율 (%)	흡수율 (%)	직접투과율 (%)	
3	90.1	8.0	7.4	84.9	7.7	5.88
5	89.1	7.9	11.5	81.1	7.4	5.78
6	88.6	7.9	13.5	79.3	7.2	5.75
8	87.6	7.8	17.2	75.8	7.0	5.59
10	86.7	7.7	20.6	72.6	6.8	5.56
12	86.7	7.6	23.8	68.6	6.6	5.46

두께별 최대규격

두께 (mm)	길이×폭 (mm)	길이×폭 (inch)
3	2438×1220	96×48
5	3048×2134	120×84
6	3048×2438	120×96
8, 10	8380×3300	330×130
12, 15, 19	8380×3300	330×130

※ 15mm이상의 유리제품은 주문생산합니다.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HANKUK GLASS INDUSTRY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4

783-0311·0911·3711·3911

※ 자세한 문의는 당사 영업부나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